2025년도 연구용역보고서

비용추계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조례안 비용추계 관련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을 중심으로

- 2026. 2.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허형조

비용추계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조례안 비용추계 관련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을 중심으로

2026. 2.

한국행정학회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 내용 ····4
나. 연구 방법 ····5

Ⅱ.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국회 운영 사례 ····7
1.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의의와 기능 ····7
가. 조례안 비용추계의 개념 및 법적 성격 ····4
나. 조례안 비용추계 제도의 의의 ····7
다. 주요 기능 ····9
2. 비용추계의 주요 원칙 ····10
가. 객관성 및 과학성 ····10
나. 정치적 중립성 ····10
다. 일관성 및 표준화 ····11
라. 기술적 일반 원칙 ····11
3. 국회 법안비용추계 제도 운영 현황 ····12
가. 법적 근거 및 추진 체계 ····12
나. 비용추계 업무 절차 및 품질 관리 ····12
다. 데이터 기반(Data-driven) 추계 및 표준화 현황 ····13
라. 지방의회에 대한 시사점 ····13

Ⅲ. 조례안 정보의 체계화 방법론 및 분석 사례 ····15
1. 전국 광역지방의회 전수조사 ····15
가. 의회별 의안정보시스템 구조 분석에 기반한 스키마 구성 ····15
나. 조례안 메타데이터 최종 스키마 ····33
2. 전국 광역지방의회 기초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35

가. 폴더 저장구조 방식 ·····35
나. 비용추계 업무 절차 및 품질 관리 ·····36
다. 조례안 정보 현황 분석 개요 ·····39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조례안 처리결과 ·····40
가. 서울특별시 ·····40
나. 부산광역시 ·····46
다. 대구광역시 ·····50
라. 인천광역시 ·····55
마. 광주광역시 ·····62
바. 대전광역시 ·····67
사. 울산광역시 ·····73
아. 세종특별자치시 ·····78
4. 도·특별자치도의 조례안 처리결과 ·····82
가. 경기도 ·····82
나. 강원특별자치도 ·····87
다. 충청북도 ·····93
라. 충청남도 ·····100
마. 전북특별자치도 ·····107
바. 전라남도 ·····112
사. 경상북도 ·····118
아. 경상남도 ·····122
자. 제주특별자치도 ·····129

Ⅳ. 조례안 비용추계의 운영체계 및 사례 검토 ·····134
1. 조례안 비용추계의 배경 및 근거 법률 ·····134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조례안 비용추계 ·····136
가. 서울특별시 ·····136
나. 부산광역시 ·····137
다. 대구광역시 ·····139
라. 인천광역시 ·····141
마. 광주광역시 ·····143
바. 대전광역시 ·····145
사. 울산광역시 ·····146

아. 세종특별자치시 ·····147
3. 도·특별자치도의 조례안 비용추계 ·····150
가. 경기도 ·····150
나. 강원특별자치도 ·····151
다. 충청북도 ·····153
라. 충청남도 ·····156
마. 전북특별자치도 ·····158
바. 전라남도 ·····159
사. 경상북도 ·····161
아. 경상남도 ·····163
자. 제주특별자치도 ·····165
4. 광역지방의회 조례안 비용추계 운영체계 비교 ·····168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조례안 비용추계의 특징 ·····169
나. 도·특별자치도의 조례안 비용추계의 특징 ·····173
다. 종합 검토 ·····176
라. 정책적 시사점 ·····177
5.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 검토 ·····179
가. 우수 사례 ·····180
1) 비용항목의 세분화 및 추계근거의 명확성 ·····180
2) 세수추계 모형의 체계적 적용 ·····180
3) 대상 인구 추계와 연동한 비용 산출 ·····181
4) 추계 구조의 명확성 및 재현 가능성 확보 ·····182
5) 세외수입 추계에 있어 이용자 행동의 고려 ·····183
6) 복지 분야 지출 추계에서의 대상 범위 설정의 체계성 ·····183
7) 교육 분야 지출 추계에서의 대상자별 단가 차등 적용 ·····184
나.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례 ·····184
1) 기준선 불명확 ·····184
2) 물가·인건비 상승 미반영에 따른 과소추계 가능성 ·····186
3) 첨부 사유의 부적정 ·····187
4) 추계 구조의 명확성 및 재현 가능성 확보 ·····189
5) 세외수입 추계에 있어 이용자 행동의 고려 ·····189
다. 종합 검토 ·····190

Ⅴ. 조례안 비용추계 발전 방안 검토 ····· 192
1. 지방자치 환경 변화와 제도 개선의 당위성 ····· 192
2. 제도적 책무성 강화 및 추계 품질 제고 방안 ····· 194
3. 데이터 기반의 비용추계 표준화 및 정보 체계 고도화 ····· 195
4. 전문 조직 역량 강화 및 국회-지방의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 ····· 197
5.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의 스마트 비용추계 시스템 구축 ····· 199
6. 단계별 발전 로드맵 ····· 203

Ⅵ. 결론 ····· 204

참고문헌 ····· 207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 환경 변화와 입법 기능의 확장

- ㅇ 지방자치의 성숙과 정책 영역 확대로 인해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은 단순한 조례 제·개정 수준을 넘어,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 ㅇ 특히 복지, 돌봄, 안전, 환경,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례가 지역사회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행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

- ㅇ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비용추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ㅇ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음
  - 비용추계서 첨부율이 낮고 미첨부 사유서 제출 비중이 높음 (예: 서울시의 경우 51~82%, 경기도 38~78%)
  - 지자체별 추계 기준·작성 범위·포맷이 상이하여 비교·분석 및 정책활용이 곤란함
  - 전국 단위의 전수 통계나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DB)가 부재하여 조례안의 재정적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움
  - 국회예산정책처와 지방의회 간 협력 체계가 부재하여 자료·방법론 공유 및 전문성 지원이 제한됨

❑ 해외 동향 및 시사점: 플랫폼화된 비용추계와 의회 AI 활용의 확산

- ㅇ 해외 주요국은 입법의 재정영향을 문서(추계서)로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청–작성–검토–승인–배포–상태관리까지 포함하는 업무 플랫폼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됨
  - 예: 미국 워싱턴주 OFM은 Fiscal Note System(FNS)을 통해 입법부·기

관·OFM이 fiscal note를 요청·작성·전송·승인·배포·상태 모니터링한다고 명시함

- 또한 의회 업무에서 생성형 AI/AI 도구의 활용을 전제로 한 유즈케이스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 축적되는 추세임
- 국제의회연맹(IPU)은 “의회가 AI 시스템을 계획·개발·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AI 활용사례(use cases)”를 공개하고 있으며, 별도의 “AI in parliaments 가이드라인”도 제공함
- 영국 정부 i.AI의 Parlex는 의회 논의 데이터(예: Hansard)를 분석해 의회 반응을 탐색·이해하도록 돕는 도구로 소개됨(의정지원형 AI 도구의 한 사례)
- 상기 동향은 비용추계의 품질이 개인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표준 데이터(사례·근거·단가·가정) 축적 + 플랫폼 기반 재사용/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제도 실효성 제고의 핵심임을 시사함

❑ DB 구축을 통한 구조적 해결의 필요성

○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법·재정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함

○ DB 구축은 단순한 자료 축적을 넘어 다음과 같은 기능적 의미를 가짐

- 조례안의 발의 현황, 재정부담 여부, 수입·지출 구분, 재정수반요인, 추계 방법·금액 등의 정형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분석의 기초자료 확보
- 유형별 재정수반 구조를 파악하고 정책 분야별 재정영향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 가능
- 국회-지방의회 간 자료 공유, 협력 기반 마련 및 표준화된 추계 방법론 확립
- 향후 AI 기반 자동추계, 입법영향평가, 정책 시뮬레이션 등으로의 확장 기반 확보

❑ 연구의 구체적 목표

○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모델을 마련하여 자료 공유, 방법론 확립, 교육·컨설팅

체계를 제안

-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표준화·자동화·지능화 토대를 마련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조례안 비용추계의 이론적 배경 및 국회 운영 사례 분석

- ㅇ 조례안 비용추계의 개념, 법적 성격(사전적 통제 및 입법 요건주의), 제도적 의의를 고찰하고 객관성·정치적 중립성·일관성 등 추계의 주요 원칙 정립
- ㅇ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전문 조직 구성, 표준 업무 절차, 다단계 품질 관리 및 데이터 기반 추계 시스템(COSTEM)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전국 17개 광역지방의회 조례안 정보의 체계화 방법론 수립

- ㅇ 전국 17개 광역지방의회의 의안정보시스템 노출 구조를 전수 분석하여 발의정보, 심사경과, 첨부파일 메타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표준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
- ㅇ 수집된 원문 문서(.hwp)의 디지털 전환 및 파싱(Parsing)을 위한 물리적 폴더 구조와 데이터 계보(Lineage) 관리 체계 정립

❑ 광역지방의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및 운영 현황 실증 분석

- ㅇ 전국 17개 시·도별 제안자 및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가결, 부결, 폐기, 철회 등)를 정량적으로 집계하여 입법 환경의 변화 분석
- ㅇ 특히 의원 발의 비중의 급격한 증가(예: 서울 79.7%, 경기 83.5%)에 따른 비용추계 업무 부하 및 미처리 안건 현황 등 실태 파악

❑ 조례안 비용추계 규정의 법적 근거 및 운영체계 비교 검토

- ㅇ 17개 광역지자체의 '의안 비용추계 조례' 및 의회 '훈령·예규' 등 법적 근거를 분석하여 대상 범위와 면제 기준(연평균 1억 원 미만 등)의 차이점 비교
- ㅇ 작성 지원 조직(의회 독립형 vs 집행부 의존형) 및 재원조달방안 작성 의무의 지자체별 비대칭성 등 구조적 문제점 진단

❑ 비용추계서 작성 품질 평가 및 정책 분야별 사례 검토

- ○ 정책 분야별(경제, 복지, 교육 등)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비용항목 세분화, 세수 추계 모형 적용 등 작성 품질 평가
- ○ 기준선(Baseline) 설정 불명확, 물가·인건비 상승 미반영 등 개선이 필요한 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추계 품질 제고 방안 모색

❑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의 스마트 비용추계 시스템 및 로드맵 제안

- ○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재정 수반 요인 자동 식별, 유사 사례 매칭 및 비용추계서 초안 자동 생성 등 업무 자동화 체계 설계
- ○ 인프라 표준화 → 시스템 확산 및 연계 → 지능형 고도화로 이어지는 3단계 발전 로드맵 및 국회-지방의회 협력 거버넌스 모델 제시

나. 연구 방법

❑ 문헌 및 제도 분석

- ○ 국내외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개념, 법적 근거, 발전 과정, 운영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함
- ○ 국회 및 지방의회의 비용추계 절차를 비교하여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고, 주요국 입법 과정에서의 비용추계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함
- ○ 관련 선행연구, 정책 보고서, 법령, 학술논문 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고, 분석 항목 및 지표를 도출함

❑ 전국 광역지방의회 전수조사 및 기초 데이터 수집

- ○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2025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함
- ○ 의안정보시스템, 회의록, 검토보고서, 첨부 자료(비용추계서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함
- ○ 수집된 조례안을 발의 주체, 상임위원회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기초 데이터셋을 구성함

❑ 국회-지방의회 협력 사례 조사 및 발전 모델 설계

- ㅇ 주요국 중앙-지방 의회의 협력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벤치마킹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함
- ㅇ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추계제도의 발전을 위한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구조, 자료 공유 체계,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DB 공동 활용 모델 등을 설계함

Ⅱ.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국회 운영 사례

1.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의의와 기능

가. 조례안 비용추계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제도의 정의

-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그 시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소요를 과학적 기법으로 산출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는 제도적 절차
- ㅇ 단순한 비용 계산을 넘어, 입법이 초래할 미래의 재정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계량화하여 보여주는 '예측적 입법 지원 활동'임

❑ 법적 성격

- ㅇ 사전적 통제 장치: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76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결권 행사 이전에 재정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법적 의무 사항임
- ㅇ 입법 요건주의: 조례안 발의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으로서, 재정 수반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또는 미첨부 사유서) 첨부를 강제하여 입법 절차의 완결성을 부여함

나. 조례안 비용추계 제도의 의의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 ㅇ 재정 위험의 사전 차단: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 수요 증가의 이중고에서, 재원 조달 대책이 부재한 무분별한 조례 남발을 억제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
  - – 특히, 통합재정 기준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17년 대비 2025년 연평균 22.1%로 증가하여 통합재정지출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인 13.9%를 크게 상회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지출 및 보건 지출도 각각 17.7%, 16.4%의 증가율을 보임

○ 포퓰리즘 입법 억제: 윤주철(2024)은 비용추계제도가 선심성 공약이나 정치적 목적의 입법이 초래할 장기적 재정 부담을 가시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는 핵심 기제라고 분석함

[표 1] 분야별 통합재정지출 변화

(단위: 억원, %)

구분		2017	(구성비)	2025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일반공공행정		104,478	7.9	156,670	4.9	10.7
공공질서및안전		32,167	2.4	55,722	1.7	14.7
교육		116,723	8.9	169,675	5.3	9.8
문화및관광		97,112	7.4	154,426	4.8	12.3
환경		187,294	14.2	301,708	9.4	12.7
사회복지		491,160	37.2	1,091,739	34.1	22.1
보건		32,029	2.4	58,879	1.8	16.4
농림해양수산		124,595	9.4	215,106	6.7	14.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9,401	3.7	94,924	3.0	17.7
교통및물류		158,101	12.0	231,179	7.2	10.0
국토및지역개발		126,400	9.6	155,970	4.9	5.4
과학기술		4,773	0.4	4,349	0.1	-2.3
예비비		48,443	3.7	31,367	1.0	-10.3
기타	인력운영비	258,505	19.6	397,000	12.4	11.3
	기본경비등	70,672	5.4	80,032	2.5	3.2
계		1,901,853	100.0	3,198,746	100.0	1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8).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과 ‘국회예산정책처. (2025).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을 바탕으로 재작성

❑ 입법의 책임성 강화

○ 정책의 가격표 제시: 조례안 발의자로 하여금 자신이 제안한 정책의 구체적인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게 함으로써, 입법권 행사에 따르는 재정적 책임을 부과함

○ 신중한 입법권 행사 유도: 비용 정보를 입법 과정의 필수 요소로 편입시켜,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발의를 지양하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입법 문화를 정착시킴

❑ 재정 민주주의 실현 및 정보 비대칭 해소

- 주민의 알 권리 충족: 지역 주민(납세자)에게 조례 제정으로 인해 투입될 세금의 규모와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함
- 집행부-의회 간 정보 격차 완화: 예산 정보를 독점하기 쉬운 집행부(지방정부)에 맞서, 지방의회가 객관적 수치(Data)를 바탕으로 정책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정보적 토대를 제공함

다. 주요 기능

❑ 재정 문지기 및 필터링 기능

- 입법 과정의 입구 단계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안건을 식별하여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수행함
- 미첨부 사유서 제출 비중이 높은 현실은 역설적으로 이 문지기 기능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통한 검증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의사결정의 합리화 및 과학화

- 증거 기반(evidence-based) 의사결정 지원: 막연한 정성적 필요성이 아닌, '사업량×단가' 등 구체적 산출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을 가능하게 함
- 정책 우선순위 조정: 한정된 재원 내에서 여러 조례안의 비용 대비 효과(cost-effectiveness)를 비교·분석하게 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입법과 예산의 연계 강화

- 입법권과 예산권의 가교: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입법(조례)'과 이를 실행할 돈을 배정하는 '예산' 사이의 시차와 괴리를 최소화함
-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 활용: 비용추계서를 통해 산출된 재정 소요액은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나 차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어 정책 집행력을 담보함

❑ 미래 재정 수요 예측 및 시뮬레이션 확장성

- 축적된 비용추계 데이터는 향후 유사 정책의 재정 영향을 예측하는 학습 데이터로 기능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DB 구축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나 물가 상승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재정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AI 기반 정책 지원 도구로 발전 가능함

2. 비용추계의 주요 원칙

가. 객관성 및 과학성

❑ 증거 기반 접근

○ 추계에 사용하는 기초 자료는 통계청 승인 통계, 정부 결산 자료, 공인된 학술 연구 결과 등 공신력 있는 출처에 기반해야 함

○ 단순한 추측치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의 사용을 배제하고, 데이터의 출처와 적용 시점을 명확히 기술하여 추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검증 가능성

○ 동일한 자료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다른 전문가가 수행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추계에 적용된 가정, 산식, 변수 설정 근거를 비용추계서 내에 상세히 명시해야 함

나. 정치적 중립성

❑ 가치 판단의 배제

○ 추계자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나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재정 소요 그 자체만을 분석해야 함

○ 정책의 편익을 과장하거나 비용을 축소하려는 유인을 철저히 차단해야 함

❑ 보수적 추계 원칙

○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은 넉넉하

게, 수입은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관점을 견지함

- ㅇ 재정 소요를 과소 추계하여 향후 예산 집행 단계에서 재원 부족(funding gap) 사태가 발생하는 위험(risk)을 예방하기 위함

다. 일관성 및 표준화

❑ 표준화된 기준 적용

- ㅇ 유사한 성격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추계 방식과 단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 ㅇ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DB 구축'은 이러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의 추계 논리와 계수를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 비교 가능성 확보

- ㅇ 개별 조례안의 추계 결과가 누적되어 시계열 분석이나 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서식과 항목 분류 체계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라. 기술적 일반 원칙

❑ 추계 기간의 설정

- ㅇ 원칙적으로 조례 시행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재정연도 기준)의 비용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추계함
- ㅇ 단, 한시적 조례이거나 5년 미만의 사업인 경우 해당 기간만 추계하며, 비용 발생 기간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최소 5년치를 제시하여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도모함

❑ 가격 기준의 명시

- ㅇ 미래 비용 산출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가격(current price)을 사용할지, 물가 변동을 제외한 불변가격(constant price)을 사용할지 명확히 해야 함
- ㅇ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은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물가상승률 전망치(한국은행, KDI 등 발표)를 반영하여 경상가격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임

❑ 재원 조달의 구체성

○ 단순한 총비용 산출에 그치지 않고, 국비(보조금), 시·도비, 구·군비, 기금, 지방채 등 재원별 분담 비율과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3. 국회 법안비용추계 제도운영 현황

가. 법적 근거 및 추진 체계

❑ 의회의 조례안 비용추계 운영 실태 분석

○ 근거 법령: 「국회법」 제79조의2 및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의원이나 위원회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함

○ 청구권 보장: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며, 이는 입법권 행사의 실질적 기반이 됨

❑ 독립적 전문 전담 조직: 국회예산정책처(NABO)

○ 조직 구성: 2026년 현재 기준, 예산정책처 내 추계세제분석실이 비용추계 업무를 전담하며,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세제분석 1과, 세제분석 2과 및 추계세제총괄과 등으로 세분화되어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함

○ 인적 역량: 박사급 전문 인력(추계세제분석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부나 외부 기관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모형 설계와 분석이 가능함. 이는 순환보직 공무원이나 일반 지원 인력에 의존하는 지방의회와 대비되는 핵심 강점임

나. 비용추계 업무 절차 및 품질 관리

❑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 접수 및 배정: 의뢰된 의안의 소관 상임위와 내용을 분석하여 최적의 담당 부서를 지정함

○ 신속 처리 원칙: 입법의 시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계 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단계 교차 검증 시스템

○ 협업 추계: 복합적인 재정 요인이 얽힌 법안의 경우, 관련 부서 간 합동 T/F를 구성하여 추계의 정밀도를 높임

○ 품질 통제: 개별 추계관이 작성한 초안을 팀장-과장-실장으로 이어지는 결재 라인과 동료 평가(Peer Review)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고 조직 차원의 일관성을 유지함

다. 데이터 기반(Data-driven) 추계 및 표준화 현황

❑ 비용추계 기준정보(standard cost data)의 관리

○ 기준정보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를 발간하여 추계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초 데이터를 최신화함

○ 주요 항목: 인건비 단가, 공공건축물 공사비 단가, 민간위탁 표준 비용 등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단가(Unit Cost)를 제공하여, 추계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결과의 일관성을 담보함

❑ 비용추계 사례 DB 및 지식 자산화

○ 전산 시스템 운용: 내부 업무망인 '비용추계 정보시스템(COSTEM)'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누적된 수만 건의 추계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관리함

○ 활용 체계: 신규 의안 접수 시 과거 유사 법안의 추계 논리, 적용 변수, 산식을 즉시 검색·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추계 오차를 줄임

라. 지방의회에 대한 시사점

❑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 확인

○ 국회의 사례는 비용추계의 품질이 단순히 개인의 역량이 아닌 '축적된 데이터'와 '표준화된 시스템'에서 비롯됨을 입증함

❑ 협력 모델의 필요성

○ 자체적인 DB 구축이 어려운 지방의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회예산정책처의 표준 단가 정보와 추계 방법론을 공유받을 수 있는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함

Ⅲ. 조례안 정보의 체계화 방법론 및 분석 사례

1. 전국 광역지방의회 전수조사

❑ 2025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 ○ 의안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회의록, 검토보고서, 첨부자료(비용추계서 등)까지 다원 자료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조례안 목록 수준을 넘어 **비용추계 근거 자료까지 연계된 원자료 전체를** 확보함
- ○ 수집 조례안을 정책 분야, 발의 주체,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등 다차원 기준으로 분류하여 기초 데이터셋 구성하였고, 상기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재정부담 여부, 비용추계서 작성 여부, 재정수반요인 유형, 추계방식, 추계기간 및 추계금액 등 핵심 특성 변수를 **체계적으로 추출·정형화할 수 있는 표준 분석 기반** 마련함
- ○ 프로젝트 최상위 경로를 council_crawling/로 정의 및 그 하위에 전국 17개 광역지방의회별 디렉터리를 1:1로 매핑하여 구성함으로써 전수조사의 기본 단위를 '의회 단위'로 고정함
- ○ 이에 따라 (1) 의회별 수집 범위·누락 여부의 체계적 점검, (2) 의안정보시스템 구조 변경에 대한 국소적 유지보수, (3) 산출물 상호 비교·검증이 용이하도록 설계함
- ○ 추가로 수집 원문–전처리 결과–코딩 산출물 간 데이터 계보(lineage) 관리 및 재현성(reproducibility) 확보에 유리한 파일 관리 체계 마련함

가. 의회별 의안정보시스템 구조 분석에 기반한 스키마 구성

❑ 서울특별시의회

- ○ 서울특별시의회를 기준으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설정함(전국 의회 데이터 정규화의 기준점 역할)
- ○ 서울특별시의회는 조례안 **제안자 유형에 따라 메타데이터 노출 구조가 상이**하여, 제안자별 레이아웃 차이를 먼저 구조적으로 분해·매핑하는 방식으로 스키마를 설계함

- 제안자가 위원장인 경우, 심사경과 테이블이 본회의 심사경과 표 단일 구조로 구성
- 교육감 및 시장이 제안자일 경우, 심사경과 테이블에 본회의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두 개의 표로 구성
- 제안자가 의원일 경우, 공동발의와 1인발의 분류로 나뉘며 공통으로 소관위원회에 정보가 별도로 구성
- 공동발의 조례안에 경우, 공동발의 의원들에 정보를 구성하며 1인발의인 경우 1인발의 의원에 대한 정보와 찬성의원들의 정보로 구성

○ 상기 제안자별 구성 차이를 반영하여, 발의정보 영역에 ‘대표발의자’, ‘발의의원’, ‘찬성의원’ 필드를 포함하도록 메타데이터 스키마 확장 설계함(발의 주체/구성의 표준화 및 후속 분석 가능성 제고 목적)

위원장 **교육감 / 시장**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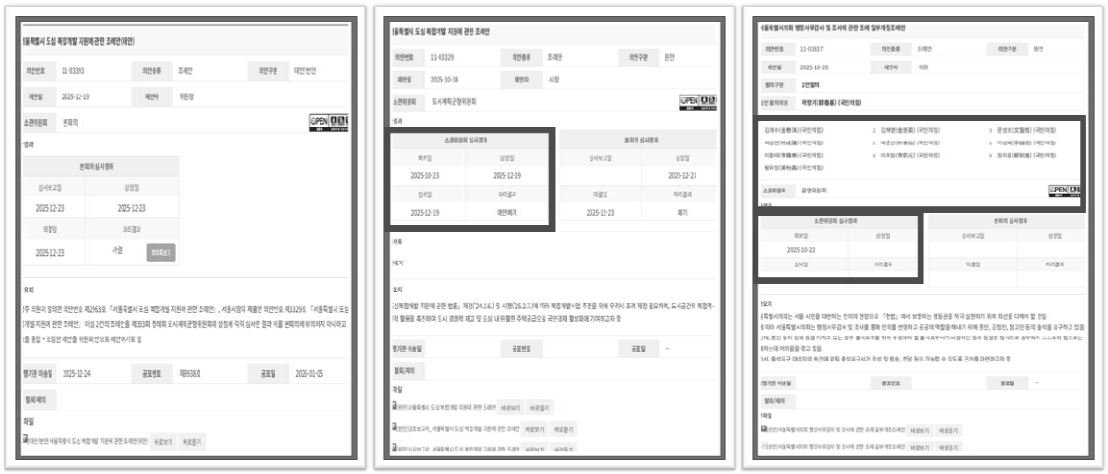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의회

- 의안 목록(list) 단계에서 **위원회 처리결과/본회의 처리결과가 분리된 열 구조**로 제공되어, 처리결과 정보를 단일 필드로 뭉개지 않고 단계별 상태값으로 분리 수집·저장 가능하도록 설계함
- 상세(detail) 페이지는 메타데이터가 테이블 기반으로 항목화되어 있어, 항목명-값 구조를 기준으로 표준 스키마 키에 매핑하는 방식으로 정규화함
- 첨부파일 영역에서 첨부파일명과 함께 파일크기(예: 85 KB)가 화면에 명시되어 있어, 파일크기 숫자와 단위를 분리 추출하여 첨부파일_크기(숫자) 및 첨부파일_단위(KB/MB 등) 필드를 구성함
- 첨부파일 목록 행에 크기와 단위가 별도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첨부파일 메타데이터(파일명 외에 크기 정보)가 UI에 노출되는 구조임을 보여줌. 해당 표기값을 파싱하여 첨부파일 크기 메타를 구조화하는 근거로 활용 가능함

❑ 대구광역시의회:

- ㅇ 대구광역시의회 의안정보는 ‘대표의원’과 ‘제안의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으며, 각 의원 정보가 프로필 버튼(클릭형 UI) 형태로 노출되는 구조 확인됨
- ㅇ 상기 버튼은 의원 프로필 진입을 위한 UI 요소라 원문 텍스트가 깔끔하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버튼 영역에서 표준화에 필요한 최소 식별값(의원명/의안명 등 노출 텍스트)만 추출하여 대표발의자, 발의의원 값으로 매핑 처리함
- ㅇ 또한, 제안의원 하위에 찬성의원/반대의원/기권의원이 구획화되어 제공되는 구조 확인되어, 발의정보 스키마에 찬성의원, 반대의원, 기권의원 필드를 분리 추가하여 표준 스키마에서 수용 가능하도록 확장함
- ㅇ 다음 이미지에서, 좌측 메타데이터 화면에서 ‘대표의원’과 ‘제안의원’이 분리된 상태로 버튼 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찬성의원/반대의원/기권의원’이 별도 영역으로 구분되어 표시됨. 우측 확대 화면은 해당 버튼/영역이 단순 텍스트가 아니라 UI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구조화 필드로 변환(파싱/매핑)한 근거로 활용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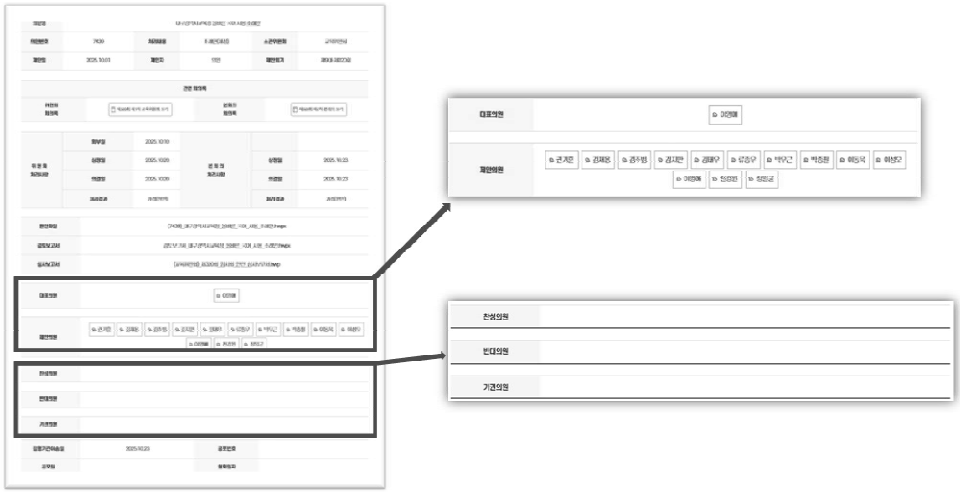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의회:

- ㅇ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에서 제안회기와 처리회기가 동시에 제공되는 구조 확인됨. 이에 따라 제안회기, 처리회기 필드를 분리하여 저장하고, 회기 간 이동(제안→심사/의결) 경로를 추적·분석 가능하도록 설계함
- ㅇ 본회의 심사경과 영역에 보고일이 별도 항목으로 존재하여, 본회의 이벤트를 단순 “상정/의결”로만 보지 않고 보고일을 기준 시점(anchor) 으로 삼아 보고일-상정일-의결일-처리결과를 한 묶음으로 저장하도록 구성함(본회의 진행 단계의 시계열 정합성 확보 목적)
- ㅇ 다음 이미지에 더욱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데, 상단 메타데이터 영역에서 ‘제안회기’와 ‘처리회기’가 동일 화면에 병렬로 표기되어 있으며, 본회의 심사경과 표 내부에 ‘보고일’ 항목이 독립 행으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 해당 구조를 반영하여 회기 필드 분리 및 본회의 영역의 보고일 키 설정 근거로 활용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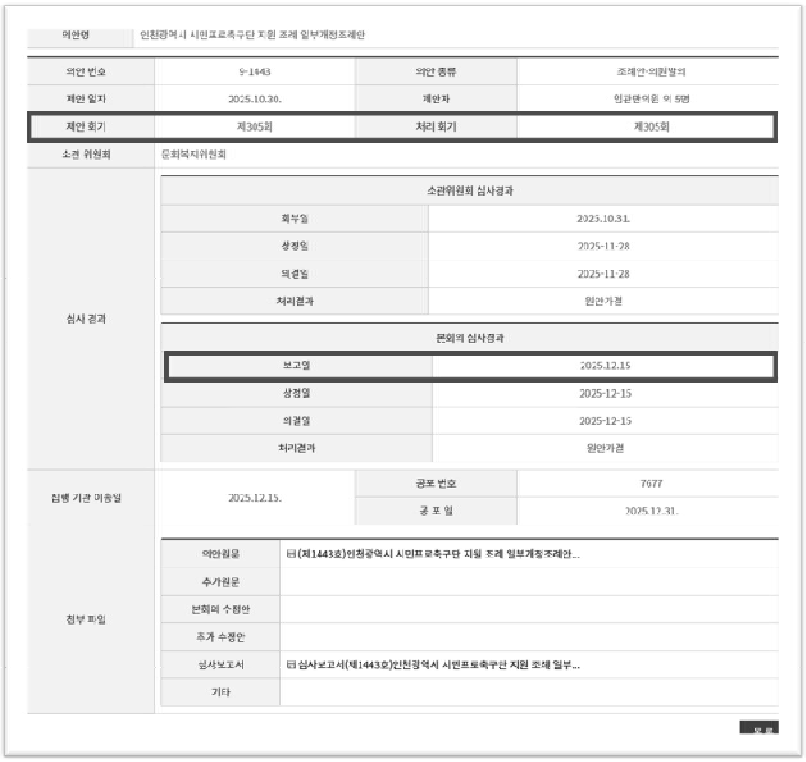

❑ 광주광역시의회:

-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에서 ‘공동 제안 의원’ 항목이 별도 행(row)으로 제공되는 구조 확인됨. 해당 항목 값이 의원명1, 의원명2, … 형태의 단일 문자열로 제공되어, 공동발의자 정보를 공동발의자 배열(list)로 변환하기 위해 쉼표(,) 기준으로 분리(parsing)하여 저장하도록 설계함(다른 의회 발의정보 필드와의 정합성 확보 목적)
- 또한, 일부 조례안에서 공동 제안 의원 문자열 내 의원명이 중복 표기되는 사례 확인되어, 토큰화 이후 중복 제거(deduplication) 절차를 적용한 뒤 스키마에 저장하도록 구성함(발의자 수/구성의 왜곡 방지 목적)
- 다음 그림에서 공동 제안 의원 영역에서 동일 의원명이 반복 노출되는 사례가 확인되며, 우측 예시와 같이 중복 제거 전(의원명1 반복) 대비 중복 제거 후(유일 의원명 리스트) 형태로 정규화됨. 해당 화면을 근거로 ‘문자열→배열 변환’ 및 ‘중복 제거’ 규칙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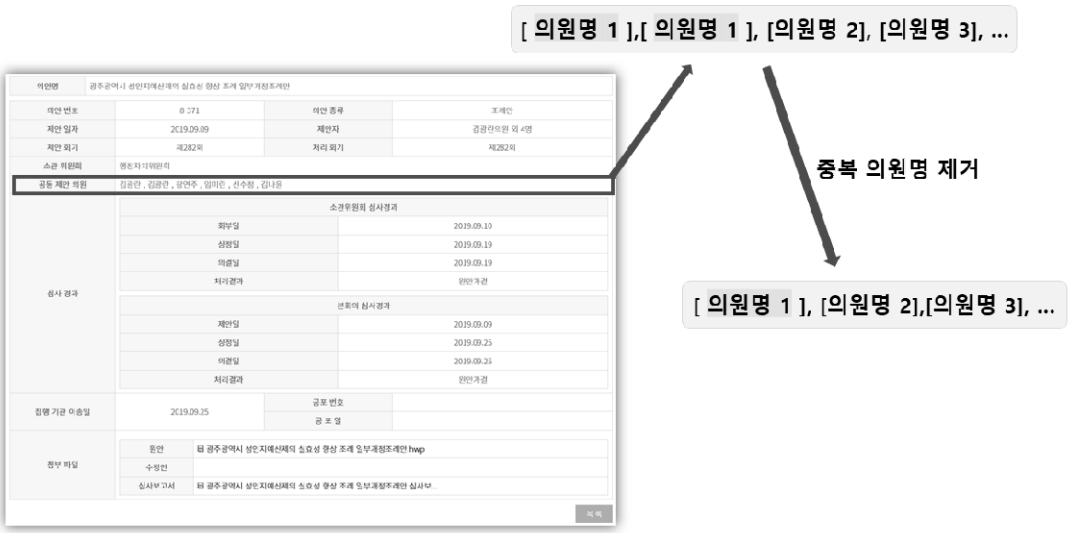

❑ 대전광역시의회:

- ㅇ 대전광역시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에서 ‘발의의원’ 표기 구조가 서울특별시의회와 유사하여, 발의정보 필드에 의원명 + 한문 + 정당 정보를 포함하도록 설계함(발의자 식별 및 표준 발의정보 정합성 확보 목적)
- ㅇ 재의사항 블록이 별도 영역으로 구조화되어 존재하여, 단순 심사경과 외에 ‘재의’라는 추가 이벤트를 포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스키마에 재의정보(reconsideration) 항목을 추가함
- ㅇ 재의정보는 사건(이벤트) 단위로 관리 필요하여, 재의정보 영역을 독립 객체(object) 로 두고 재의일, 의결일, 처리결과를 분리 저장하도록 구성함(본회의 심사경과와 혼재 방지 및 이벤트 추적성 확보 목적)
- ㅇ 첨부파일 제공 방식이 파일명 노출이 아니라 “다운로드 동작(링크/버튼)” 형태로 제공되어, 원문 저장 시 동일 명칭/무명 파일로 인한 충돌 가능성 존재함. 이에 따라 파일 저장 시 중복 방지를 위해 파일명을 의안명_파일종류 규칙으로 강제 변환하여 저장하도록 설계함(파일 식별성 및 재현성 확보 목적)
- ㅇ 다음의 이미지 좌측 화면에 ‘재의사항’이 별도 블록으로 존재하고, 우측 확대 예시처럼 재의일/의결일/처리결과 등 하위 항목이 구조화되어 있음. 또한, 첨부파일 영역은 ‘원문/검토보고서/심사보고서’ 등 다운로드 링크형 UI로 제공되어 파일명 직접 노출이 제한됨. 해당 구조를 근거로 재의정보 객체화 및 파일명 규칙(의안명_파일종류)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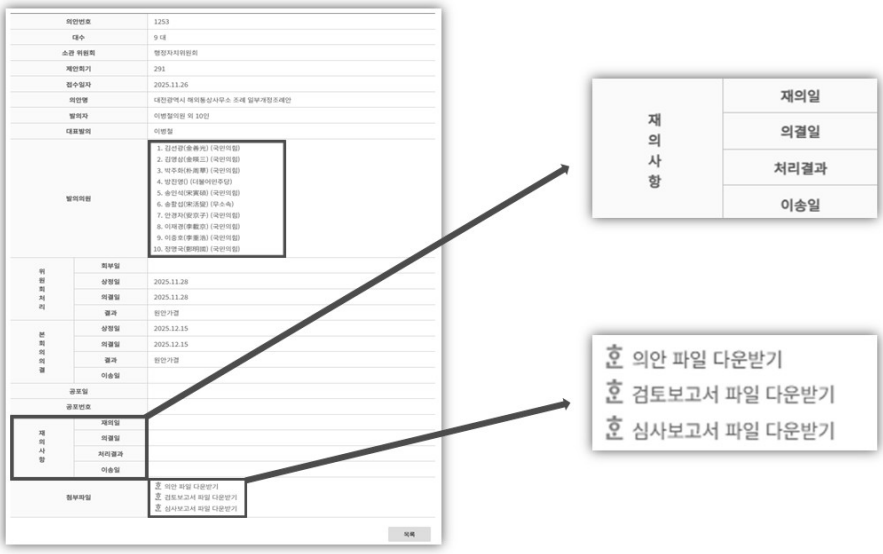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의회:

- 울산광역시의회는 ‘의안명’ 대신 ‘안건’ 표기를 사용하고 있어, 데이터 표준화 과정에서 안건 항목 값을 표준 필드인 의안명으로 명칭 매핑(mapping) 처리하여 데이터 일관성 확보함
- 웹페이지에서 대수와 회기가 결합 표기(예: “대/회기” 형태)로 제공되어, 스키마 구성 시 의안명은 기본정보의 의안명 필드에 저장하고, 대수, 회기는 복합필드 분해(split) 를 통해 분리 저장하도록 설계함
- 첨부파일 크기 정보가 소수점 포함 값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예: 37.97KB), 저장 시 비교·집계 편의성을 위해 파일크기 값은 반올림(rounding) 하여 정규화된 크기 값으로 저장하도록 구성함
- 다음 그림의 화면 상단에 ‘안건’ 항목이 의안명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회기’가 결합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확인됨. 또한 첨부파일 크기 표기가 37.97KB처럼 소수점 포함으로 제공되어 38KB로 반올림 저장하는 정규화 규칙 적용 근거로 활용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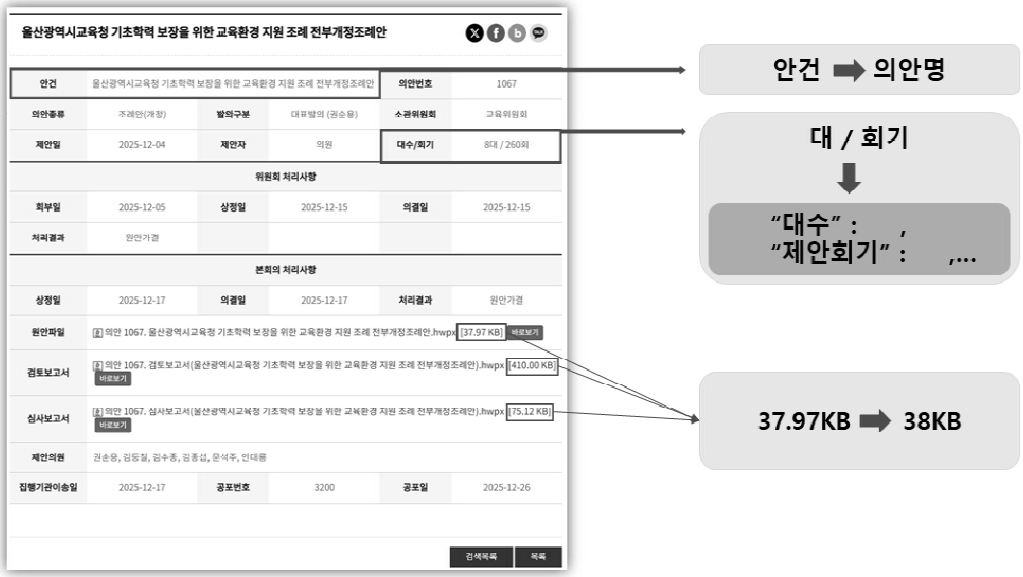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에서 ‘의안요지’가 별도 항목으로 분리 제공되는 구조 확인됨. 이에 따라 표준 스키마 내 의안요지 영역을 별도로 두고, 원문 텍스트를 제안요지 필드에 저장하도록 구성함
- 또한 ‘철회요지’와 ‘재의요지’가 각각 독립 항목으로 제공되는 구조 확인되어, 철회 발생 시 ‘철회요지’ 데이터를 철회의요지 필드에 매핑하여 저장하도록 설계함
- 다음 그림을 보면, 좌측 ‘원안가결’ 화면과 우측 ‘철회’ 화면에서 공통적으로 ‘의안요지’가 별도 행으로 존재하며, ‘철회’ 케이스에서는 요지/사유성 텍스트가 추가로 노출되는 구조가 확인됨. 해당 화면을 근거로 의안요지 영역 분리 및 철회요지→철회의요지 필드 매핑 규칙 적용함

원안가결

철회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에서 ‘발의구분’ 필드에 공동발의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동발의자 목록이 쉼표가 아닌 공백(space) 구분 문자열 형태로 제공되는 구조 확인됨. 이에 따라 공동발의자 정보를 공동발의자 배열(list)로 정규화하기 위해 공백 기준으로 토큰화하여 의원명을 추출하고, 표준 스키마의 공동발의자 필드에 저장하도록 설계함
- 원안파일 영역에 ‘바로보기’ 및 ‘바로듣기’ 기능이 제공되나, 이는 파일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UI 편의 기능(동작 링크)에 해당하여 메타데이터 관점에서 불필요한 노이즈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항목은 별도 저장하지 않고 제외하도록 구성함
- 발의구분 영역에서 공동발의자명이 의원명1 의원명2 의원명3 …처럼 공백으로 연속 표기되는 것이 확인되며, 이를 배열 형태로 변환하는 규칙 적용 근거로 활용 가능함. 또한 원안파일 영역에 ‘바로보기/바로듣기’ 버튼이 별도로 존재하나, 메타데이터 저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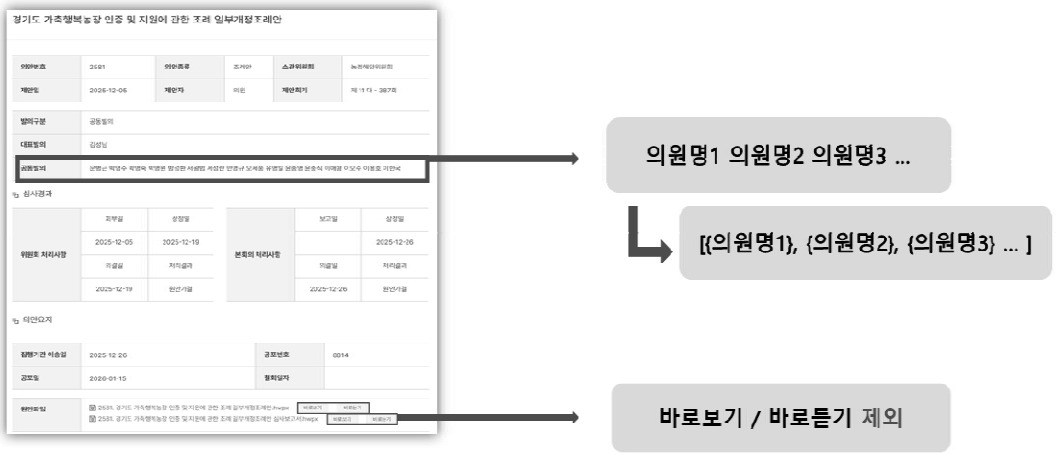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ㅇ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에서 ‘비고(특이사항)’가 별도 항목으로 존재하여, 표준 스키마에 비고 필드를 두고 특이사항 원문 텍스트를 그대로 저장하도록 구성함
- ㅇ 발의정보 구조에서 제안자에는 의원명이 존재하나 공동발의자 항목이 비어있는 케이스가 관측됨. 이 경우 제안자 정보가 실질적으로 대표발의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자와 대표발의자 값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규칙화함. 또한 공동발의자 값이 없더라도 찬성의원 배열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케이스가 확인되어, 공동발의자 필드의 결측 여부와 무관하게 찬성의원 배열이 단독으로라도 저장되도록 설계함(부분 관측 데이터 보존 및 발의/동의 구조 분석 가능성 유지 목적)
- ㅇ 좌측/우측 화면 비교에서 제안자 정보가 존재하나 공동발의자 정보가 누락된 케이스, 그리고 공동발의자 없이 찬성의원 목록만 제공되는 케이스가 확인됨. 이러한 UI/메타데이터 비대칭을 표준 스키마에서 수용하기 위해 ‘대표발의자=제안자’ 규칙 및 ‘찬성의원 단독 저장 허용’ 규칙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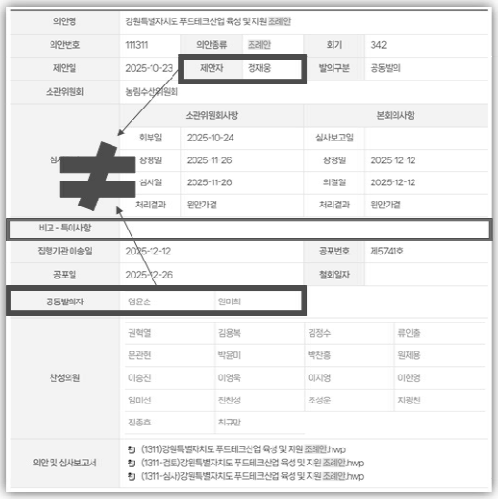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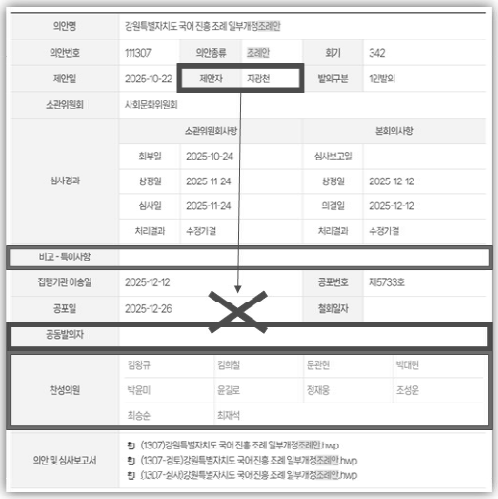

❑ 충청북도의회:

- 충청북도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에서 관련 회의록이 단순 텍스트가 아니라 버튼(링크) 형태의 UI 요소로 제공되는 구조 확인됨
- 해당 버튼은 화면 표시용 식별자(title)와 문서 접근 경로(href)로 구성되어 있어, 관련회의록 정보를 '참조 객체(reference)'로 분해하여 저장하도록 설계함
- 위원회/본회의 관련회의록 버튼에서 title 값을 회의명 필드에 저장하고, href 값을 관련회의록URL 필드에 저장하도록 구성함(회의록 원문으로의 역추적성 및 증빙 링크 보존 목적)
- 관련회의록이 "회의록" 버튼으로 제공되며, 버튼 요소에 title="…회의록" 및 href="/viewer/…" 형태로 표시명과 링크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 해당 구조를 근거로 title→회의명, href→관련회의록URL 매핑 규칙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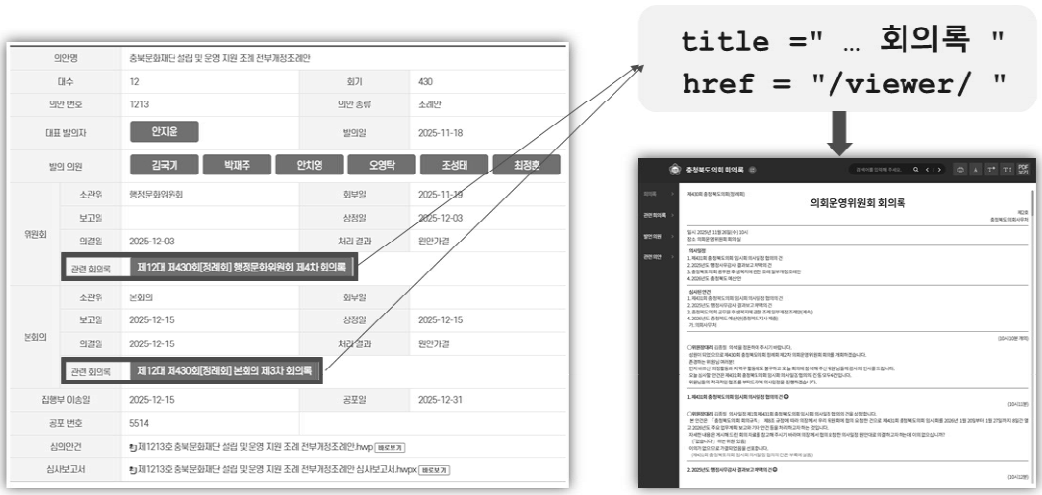

❑ 충청남도의회:

- 충청남도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에서 ‘의안유형’ 항목이 실질적으로 ‘의안종류’로 제공되는 구조 확인됨. 이에 따라 스키마에서는 의안종류에 “조례안”과 같은 상위 분류 값을 저장하고, 의안종류상세에 “개정” 등 보조 분류(세부 유형)를 분리 저장하도록 설계함(분류 체계의 계층화 및 타 의회와의 정합성 확보 목적)
- 위원회/본회의 처리사항이 각각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처리결과를 단일 텍스트로 저장하지 않고 본회의 처리사항을 ‘진행상태’와 ‘최종처리결과’로 분해하여 저장하도록 구성함(처리 상태값의 표준화 및 단계별 분석 가능성 확보 목적)
- 본회의 처리결과가 제공되지 않는 케이스가 존재하여, 해당 경우에는 위원회 처리사항을 본회의 처리결과의 대체값으로 저장하도록 규칙화함
- 위원회와 본회의 정보는 이벤트 성격이 상이하여 위원회/본회의를 분리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본회의 영역에는 ‘부의일’ 필드를 포함하여 본회의 심사 단계의 기준 시점을 함께 저장하도록 구성함
- 아래 그림에서, 좌측 사례에서는 위원회 처리결과와 본회의 처리결과가 모두 제공되는 반면, 우측 사례에서는 위원회 처리결과만 존재하고 본회의 처리결과가 비어있는 구조가 확인됨. 해당 관측을 근거로 ‘본회의 결측 시 위원회 처리사항 대체 저장’ 규칙 및 위원회/본회의 분리 저장 방식을 적용함

< 위원회 & 본회의 처리결과 존재 >

< 위원회 처리결과 존재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 화면/항목 구성이 광주광역시의회와 유사한 테이블 구조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여, 광주 매핑 로직(항목명-값 기반 정규화)을 준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의회 간 구조 유사성 활용 및 매핑 규칙 재사용 목적)
- 다만 광주광역시의회는 '공동 제안 의원' 항목이 별도 행으로 제공되는 반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공동발의 의안에서도 대표발의자 이름만 명시되는 구조로 확인됨. 이에 따라 공동발의자 배열을 별도 구성하기 어렵고, 발의자 식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자와 대표발의자 필드에 동일 값을 저장하도록 예외 규칙을 적용함
- 아래의 그림에서 좌측 광주 사례에는 공동 제안 의원 관련 항목이 노출되는 반면, 우측 전북 사례에서는 해당 항목이 없고 대표발의자 정보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이 확인됨. 해당 차이를 근거로 광주 매핑 로직은 재사용하되, 발의자 필드 구성은 제안자=대표발의자로 처리하도록 설계함

광주광역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전라남도의회:

- 전라남도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 구조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동일한 테이블/항목 구성으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여, 전북 매핑 규칙을 그대로 준용 가능하도록 설계함
- 광주광역시의회와 비교 시, '공동 제안 의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메타데이터 구성은 동일 코어 스키마로 확인됨. 이에 따라 광주에서 사용한 스키마 중 '공동 제안 의원' 관련 모듈은 전남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외하여 저장하도록 구성함
- 광주-전남-전북 화면을 병렬 비교하면 광주에는 공동 제안 의원 관련 행이 추가로 존재하나, 전남/전북에는 해당 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나머지 항목 배치는 동일한 것이 확인됨. 해당 비교를 근거로 전남은 전북과 동일 매핑을 적용하고, 광주 전용 '공동제안 의원' 스키마는 제외함

광주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의안정보가 ‘의안처리현황’ 형태로 제공되며, 접수 → 위원회심사 → 본회의심사 → 처리완료 등 처리 단계(state) 시퀀스가 명시적으로 노출되는 구조 확인됨
- 상기 단계 정보를 누락 없이 통합 DB에서 수용하기 위해 진행상태 필드를 별도로 두고, 단계명(라벨)을 원문 그대로 저장하도록 설계함
- ‘접수’ 구간에서 접수일자와 제안회기가 분리 제공되어, 시계열 정보와 회기 정보를 혼합하지 않도록 접수일, 제안회기 필드를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구성함
- 다음 그림의 화면 상단에 의안처리현황 단계(접수/위원회심사/본회의심사/처리완료)가 단계형 UI로 제공되며, 접수 영역에 접수일자와 제안회기가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표시됨. 해당 구조를 근거로 진행상태 라벨 저장 및 접수일·제안회기 분리 저장 규칙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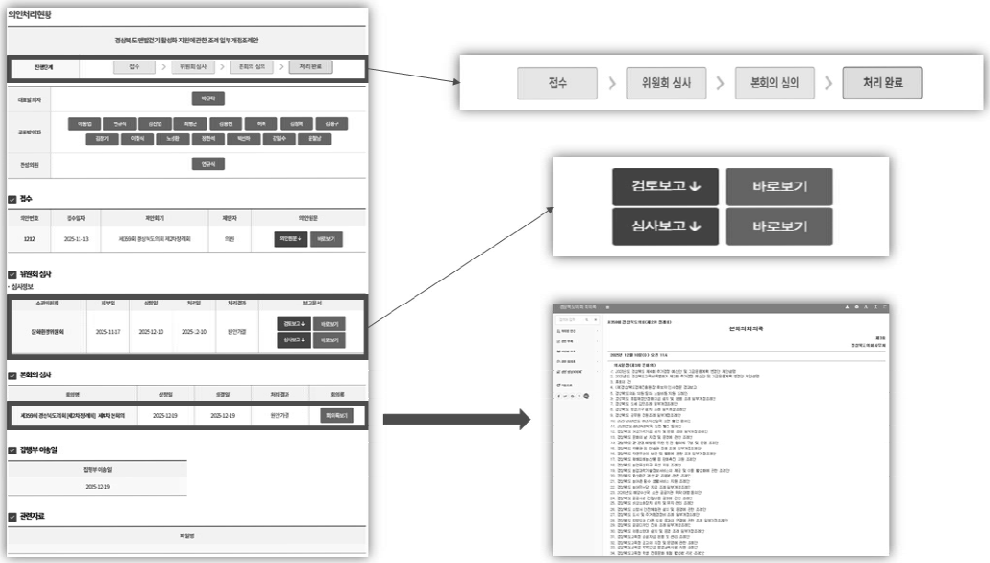

❑ 경상남도의회:

- 경상남도의회 의안정보가 요약 카드(card) 구조로 제공되며, 기본정보 카드와 처리정보(소관위원회/본회의 등) 카드가 분리된 블록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카드 구조를 기준으로, 기본정보 영역과 처리정보 영역을 표준 스키마의 해당 섹션에 블록 단위로 매핑하여 저장하도록 설계함
- 발의정보는 의원 프로필이 버튼 형태(UI 컴포넌트) 로 다수 노출되는 구조라, 각 버튼에서 표시되는 문자값(의원명 텍스트)을 추출하여 발의정보의 이름 필드에 저장 가능하도록 구성함
- 첨부파일과 함께 제공되는 '바로보기'는 문서 메타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UI 편의 기능(동작 링크)에 해당하여 분석/검증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노이즈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 저장하지 않고 제외한 상태로 경상남도의회 메타데이터 수집을 진행함
- 다음 조례안 그림에서 기본정보/소관위원회 심사/본회의 처리 등 정보가 카드 단위로 분리되어 제공되며, 발의자 정보는 다수의 의원명이 버튼 형태로 배열되어 있음. 또한 첨부파일 영역에 '바로보기'가 함께 노출되나 수집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표시되어 있어, 카드 기반 매핑 + 버튼 텍스트 추출 + 바로보기 제외 규칙 적용 근거로 활용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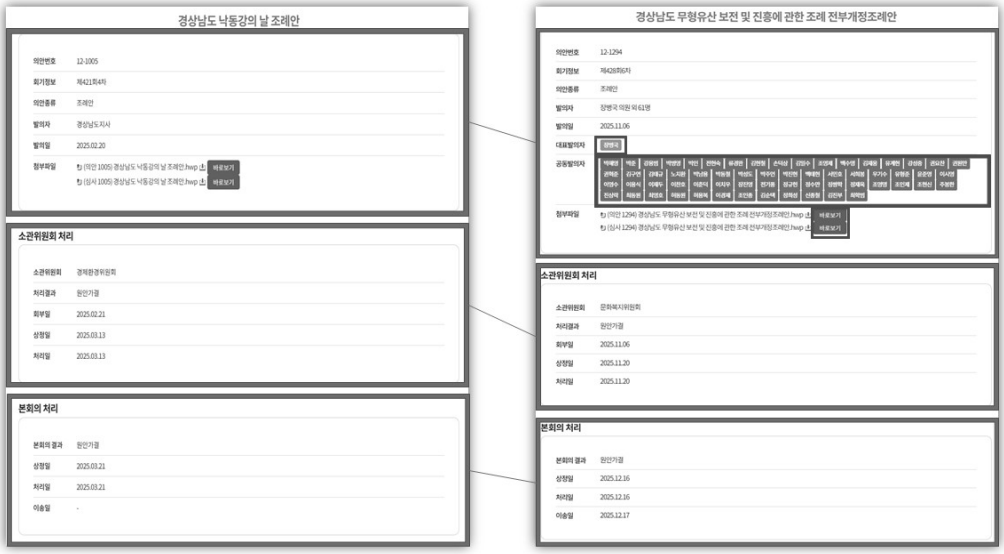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안 페이지에서 ‘안건심의자료’ 표가 별도 테이블로 존재하며, 의안번호를 기준으로 자료명, 파일유형, 다운로드(동작/링크) 정보가 구조화되어 제공됨
- ○ 상기 구조를 표준 첨부파일 체계로 흡수하기 위해, 첨부파일 유형(type) 분류에 ‘안건심의자료’를 포함하도록 확장하고, 각 행(row)에서 제공되는 파일유형 값을 별도 필드로 저장하도록 설계함
- ○ 다운로드 정보는 단순 텍스트가 아니라 파일 접근을 위한 동작/URL 성격을 가지므로, 자료명과 함께 다운로드 URL(또는 다운로드 식별자)를 보존하여 원문 파일로 역추적 가능하도록 구성함
- ○ 안건심의자료 표에 ‘자료명/파일유형/다운로드’ 컬럼이 분리되어 있으며, 파일유형으로 hwp, pdf 등이 표기되고 다운로드는 버튼/링크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확인됨. 해당 구조를 근거로 첨부파일 유형에 ‘안건심의자료’를 추가하고 파일유형 및 다운로드 링크를 함께 저장하도록 매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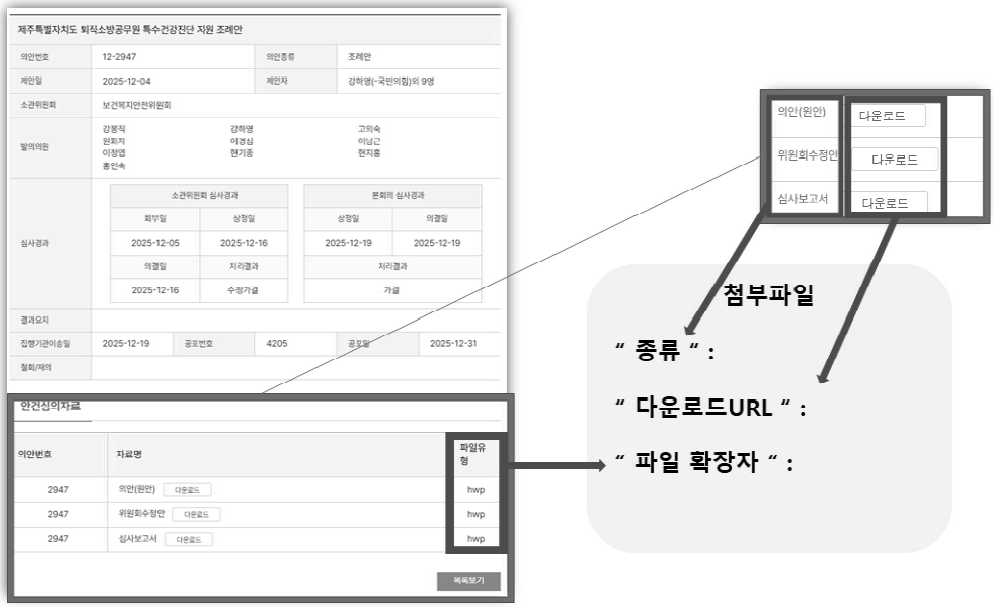

나. 조례안 메타데이터 최종 스키마

❑ 추출 및 저장

- ㅇ 조례안 검색 목록을 페이지 단위로 순회하며, 의회별 조례안에 포함되는 메타데이터를 표준 스키마로 정규화하여 구조화함(필드 매핑 및 결측 처리 규칙까지 반영하여 정제)
- ㅇ 정규화된 결과는 조례안 단위 레코드(record)로 구성된 JSONL 형태로 저장하여, 대규모 전수조사 데이터의 누적·증분 처리 및 재현 가능한 파이프라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 ㅇ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전국 광역지방의회의 공통 속성(core) 과 의회별로만 존재하는 추가 속성(extension) 을 모두 포괄하도록 설계함(단일 스키마 내에서 상호운용성 확보 목적)
- ㅇ 일부 의회에 존재하지 않는 속성은 '누락'이 아니라 정의된 결측 상태로 관리하기 위해 값을 null로 명시하여 저장하였고, 이는 의회 간 비교 시 결측/비제공 구분 가능하도록 함
- ㅇ 상기 스키마는 의회별 상이한 표기·구조를 단일 모델로 흡수한 전국 단위 메타데이터 표준(interop schema) 으로, 이후 비용추계 특성 변수 추출/비교분석/검증 자동화의 입력 기반으로 기능함
- ㅇ 스키마 필드 타입은 최소 타입 시스템으로 정리하여 저장 일관성 확보함
  - int : 숫자(정수) 형태로 저장
  - string : 문자열 형태로 저장

필드			타입
idx			int
의회명			string
지자체명			
상세페이지URL			
진행상태			
기본정보	의안번호		
	의안명		
	의안종류		
	의안종류상세		
	대수		int
	제안회기		
	처리회기		string
	소관위원회		
	제안일		
	접수일		
	제안자		
	제안자 설명		
발의정보	발의구분		
	대표발의자	이름	
		한문명	
		정당	
	발의의원 찬성의원 반대의원 기권의원	순번	int
		이름	string
		한문명	
		정당	
심사경과	위원회	위원회명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부의일	
	본회의	제안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의명	
		관련회의록 URL	
공포정보	집행기관이송일		
	공포일		
	공포번호		
	공포자		
	철회일자		
	철회의요지		
재의정보	재의일		
	의결일		
	처리결과		
	이송일		
제안요지	전체		
	문단		
첨부파일	종류		
	파일명		
	다운로드URL		
	파일확장자		
	파일크기		
비고특이사항			
최종처리결과			

조례안 메타데이터 스키마

2. 전국 광역지방의회 기초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가. 폴더 저장구조 방식

❑ 구조화

○ 광역지방의회 의안의 메타데이터(council_meta)와 조례안(council_download) 파일들을 그림과 같은 구조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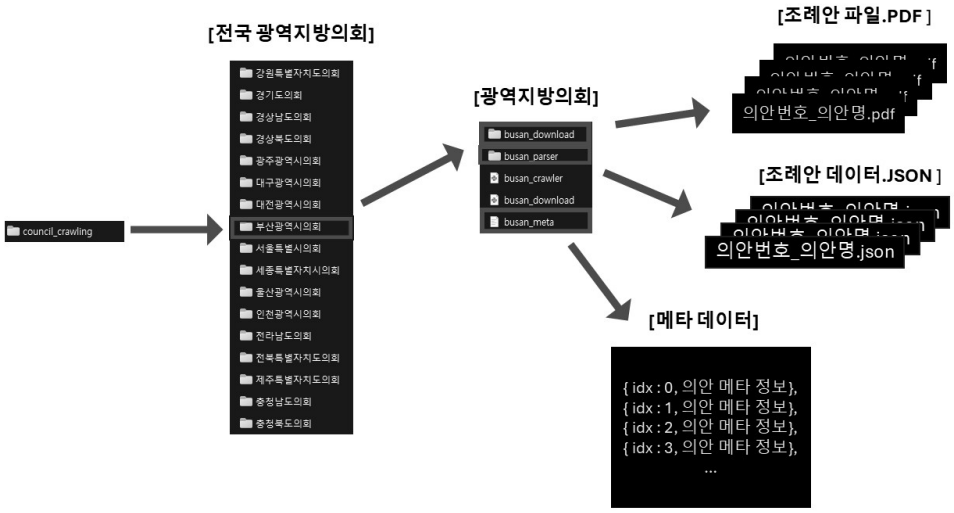

○ 각 의회 폴더는 동일한 내부 구조를 갖도록 표준화

○ 위 그림의 부산 사례 기준 구성은 다음과 같음

폴더명(구조 예시)		설명
부산광역시의회/		
	busan_download/	조례안 원문 파일 저장소 폴더
	busan_parser/	조례안 비용추계 데이터 저장소 폴더
	busan_crawler	목록/상세 수집 로직 실행 파일
	busan_download	첨부(원문) 다운로드 실행 파일
	busan_meta	메타데이터 저장 파일

❑ *_download/ : 조례안(의안) 원문 파일 저장

○ 각 광역의회 사이트에서 수집된 조례안/의안 원문(주로 HWP)을 물리 파일로 축적하는 저장소

○ 파일 명시 규칙 : 의안번호_파일명.hwp

○ 이를 통해,

- 파일명만으로 의안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
- 메타데이터 파일과 결합 시 원문-메타 연결이 단순해짐
- 추후 원문 재검증(비용추계 표기 여부 등) 시 탐색 비용 감소

❑ *_parser/ : 조례안(의안) 비용추계 데이터 저장

○ *_download 파일에서 수집된 조례안에 문서구조를 JSON 파일로 축적하는 저장소

○ 파일 네이밍 규칙 : 의안번호_파일명.json

○ 이를 통해,

- 파일명만으로 의안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
- 문서 내용을 JSON 형식으로 디지털화하여 탐색이 가능해짐
- 각 의회 문서별 비용추계 표기 여부 확인을 가능하도록 함

❑ (예시 경로)busan_meta : 메타데이터(구조화 데이터) 저장

○ 수집된 의안의 구조화된 메타데이터 속성 정보를 별도 파일로 관리함

○ jsonl 형태로 저장하여 의회에 조례안 별로 메타데이터 확인 가능함

○ 이를 통해,

- 원문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분리하여 데이터처리는 메타 기반으로 수행
- 증빙/검증은 원문 파일로 수행

❑ (예시 경로)busan_crawler, busan_download : 수집 실행 파일

○ busan_crawler: 의안 목록/상세 페이지를 순회하며 메타데이터(및 다운로드 대상 링크)를 수집

○ busan_download: 수집된 링크를 기반으로 조례안 원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busan_download/에 저장

나. 조례안 파일 변환 및 파싱

❑ Document Parser의 활용

○ 확보한 아래아 한글(.hwp) 포맷의 조례안 및 첨부자료 내 텍스트·표 데이터를

정형화하여 추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Document Parser 활용이 필요함

○ 그러나 .hwp 확장자 파일은 파서 적용을 위한 선행 변환 단계로서 .pdf 변환이 요구되어 다음의 작업을 먼저 수행함

- hwp→pdf 변환을 자동화하는 추가 작업 수행
- 모든 의회의 첨부파일 중 원안, 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등 읽기 전용 파일로 제공되어 변환이 불필요한 사례(충청남도의회)를 제외하고, 변환 가능한 hwp 파일을 대상으로 일괄 변환함

○ 비용추계서 존재 여부 및 주요 항목(재정부담 여부, 금액, 기간, 추계방법 등)을 확인·분석할 수 있도록 Document Parser를 활용하여 문서를 JSON 구조로 분해해야 하며, 생성된 의회별 조례안 JSON 파일은 각 의회_parser 폴더에 저장하여 관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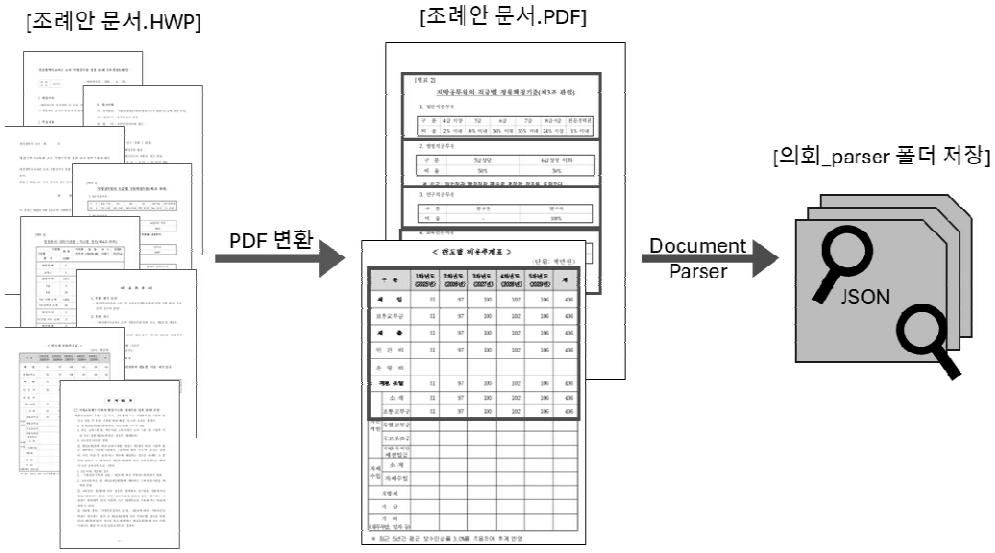

○ (연구 성과 및 향후 활용 방안) 지방의회 맞춤형 비용추계 플랫폼 도입을 위한 표준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아키텍처 설계

-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JSON) 및 처리 파이프라인 제시: 본 연구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17개 광역의회의 다년간 누적된 방대한 의안 및 첨부파일을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데이터 변환 구조와 파이프라인을 선제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임
- 지자체 맞춤형 플랫폼 구축의 청사진 제공: 최신 Document Parser를 활용한 전수 파싱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됨.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한 전수

DB 구축에 머물지 않고, 각 지방의회가 자체적인 예산과 실무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파싱 범위와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함

- 실무 적용성 및 비용 효율성 극대화: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데이터 구조와 파싱 최적화 전략(우선순위 조정, 변환 자동화, 캐싱을 통한 재사용 등)은 향후 각 지자체가 실제 비용추계 업무 플랫폼을 개발할 때 즉시 활용이 가능한 핵심 자산임. 이는 지자체의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는 매우 중요한 실적으로 평가됨

다. 조례안 정보 현황 분석 개요

❑ 분석 방법

- ㅇ 광역지방의회의 조례안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중요 정보의 누락 사항이 다수 있었음
- ㅇ 정보의 표준화 및 완비 정도, 누락 정도는 광역지방의회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조례안 관리 수준과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이는 간접적으로는 조례안 비용추계 대한 관심도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ㅇ 한편, 모든 광역지방의회가 의안정보에서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ㅇ 본 연구에서의 조례안 정보 현황은 각 광역지방의회의 개별 조례안 정보로부터 수집 및 집계,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개별 지방의회의 집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처리결과에서 “미처리 등”에는 처리결과 정보가 누락된 경우까지 포함

❑ 수집 완료 최종 시점

- ㅇ 서울, 경기, 강원 : 2025.12.19.
- ㅇ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남 : 2026.01.21.
- ㅇ 대전 : 2025.12.17.
- ㅇ 전남, 제주 : 2025.12.22.
- ㅇ 경북 : 2025.12.21.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조례안 처리결과

가. 서울특별시

❑ 조례안 정보 현황

- ㅇ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데이터는 제6대부터 제11대까지의 의회에 걸쳐 집계되어 있음
- ㅇ 조례안 처리결과 분류에는 가결(원안/수정), 부결, 폐기, 임기만료폐기, 철회, 미처리 등이 포함
- ㅇ 전체 8,215건의 조례안 중 미처리 등으로 분류된 건은 485건(약 5.9%)에 불과하며, 이는 주로 현재 진행 중인 제11대 조례안(476건)에서 발생한 미처리 상태 건들로 인한 것
  - 과거 회기들의 미처리 비율은 1% 내외에 그쳐, 대체로 처리결과 기록이 충실한 편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ㅇ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제안 건수는 매 대수 꾸준히 증가하여, 제6대 433건에서 제11대 2,343건으로 증가하였음
- ㅇ 발의 주체별로 보면 초기에는 집행부(시장) 제안이 압도적이었으나 점차 의원발의 비중이 상승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이 집행부 견제를 넘어 정책 주도로 전환되었음을 보임
  - 제6대에는 의원 발의가 30건으로 전체의 6.9%에 불과하고 시장 제출이 312건으로 72.1%를 차지하여 사실상 집행부가 입법을 주도하고 의회는 이를 승인하는 형태에 머물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11대에는 의원 발의가 1,867건으로 전체의 79.7%를 점유하였는데, 이는 제6대 대비 의원 발의 건수가 약 62배 증가한 수치이며, 비중으로는 10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 시장 제출은 11.0%로 감소하여 의원주도 입법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감 제출 조례안도 제6대~제7대 약 10% 수준이던 것이 제11대에는 2%대로 감소하였고, 위원회 및 의장 제안은 드물게 나타났음

○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으로는 지방의원의 정책 역량 강화를 의미하지만, 비용추계 관점에서는 심각한 부하로 연결될 수 있음

- 이는 집행부와 달리 전문적인 예산 추계 인력과 조직이 부족한 개별 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이 관행화되거나 부실한 추계가 이루어질 개연성도 높아졌기 때문임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서울특별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배분하며, 보건복지, 기획재정, 교육, 도시환경위원회 등에서 많은 조례안을 심사하였음

- 예를 들어 제8대에 교육위원회 소관이 160건(19.6%)으로 최다였고, 기획재정 112건, 도시환경 82건 등이 뒤를 이었음
- 상임위 개편도 일부 있었는데, 제7대의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가 8대에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분리되는 등 조직 변경이 있었음
- 특별위원회의 경우 인권특별위원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등에서 각 1~2건씩 조례안을 다룬 기록이 있으며, 전체 조례안 중 특별위원회 소관 비중은 미미함
- 전반적으로 위원회 구조는 대수마다 일부 변경되었으나, 비용추계 대상 조례안은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었고 위원회 소관 정보 누락은 거의 없었음

○ 특히 제11대 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높은 제안 비중은 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비용추계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 가능

-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1대 의회에서 337건(14.38%)을 제안하며 최다 건수를 기록하였는데, 복지 분야는 현금성 지원이나 바우처 사업 등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조례가 많다는 점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활동 증가는 곧 지방재정의 의무지출 증가로 직결될 수 있어, 특히, 이 분야에서 비용추계 시스템의 고도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 가능
- 환경수자원위원회도 225건(9.60%)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기

후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관련 조례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환경 조례는 장기적인 시설 투자비용이나 규제 비용을 수반하므로 비용에 대한 정밀한 추계 모델이 요구됨

[표 2] 서울특별시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6대~제11대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료폐기	철회	미처리 등
6	의원	30	6.93	15	0	1	9	0	0	5
	위원회	46	10.62	46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시장	312	72.06	295	0	2	14	0	1	0
	교육감	45	10.39	45	0	0	0	0	0	0
	소계	433	100.00	401	0	3	23	0	1	5
7	의원	277	38.26	167	0	0	106	0	2	2
	위원회	47	6.49	44	0	1	1	0	1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시장	352	48.62	331	0	0	17	0	4	0
	교육감	48	6.63	46	0	0	2	0	0	0
	소계	724	100.00	588	0	1	126	0	7	2
8	의원	606	59.12	366	0	4	90	137	8	1
	위원회	51	4.98	50	0	0	0	1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시장	301	29.37	251	0	2	21	16	11	0
	교육감	67	6.54	60	0	1	1	3	2	0
	소계	1025	100.00	727	0	7	112	157	21	1
9	의원	1162	73.59	779	0	0	374	0	8	1
	위원회	90	5.70	88	0	0	2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시장	273	17.29	238	0	0	32	0	3	0
	교육감	54	3.42	53	0	0	1	0	0	0
	소계	1579	100.00	1158	0	0	409	0	11	1
10	의원	1604	75.98	1113	0	0	476	0	15	0
	위원회	157	7.44	157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시장	286	13.55	219	0	0	59	0	8	0
	교육감	64	3.03	61	0	0	3	0	0	0
	소계	2111	100.00	1550	0	0	538	0	23	0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료폐기	철회	미처리 등
11	의원	1867	79.68	1151	1	2	275	0	0	438
	위원회	164	7.00	162	0	0	0	0	0	2
	의장	4	0.17	2	0	1	0	0	0	1
	시장	258	11.01	202	0	0	27	0	0	29
	교육감	50	2.13	42	0	0	2	0	0	6
	소계	2343	100.00	1559	1	3	304	0	0	476
총계	의원	5546	67.51	3591	1	7	1330	137	33	447
	위원회	555	6.76	547	0	1	3	1	1	2
	의장	4	0.05	2	0	1	0	0	0	1
	시장	1782	21.69	1536	0	4	170	16	27	29
	교육감	328	3.99	307	0	1	9	3	2	6
	소계	8215	100.00	5983	1	14	1512	157	63	485

[표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6대~제11대

(단위: 건수,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료폐기	철회	미처리 등
6	건설위원회	37	8.55	33	0	1	2	0	0	1
	교육문화위원회	80	18.48	76	0	0	3	0	0	1
	교통위원회	34	7.85	31	0	0	3	0	0	0
	도시관리위원회	45	10.39	41	0	1	3	0	0	0
	보건사회위원회	35	8.08	33	0	0	2	0	0	0
	본회의	14	3.23	6	0	1	4	0	0	3
	운영위원회	18	4.16	18	0	0	0	0	0	0
	재정경제위원회	74	17.09	72	0	0	1	0	1	0
	행정자치위원회	66	15.24	64	0	0	2	0	0	0
	환경수자원위원회	30	6.93	27	0	0	3	0	0	0
	소계	433	100.00	401	0	3	23	0	1	5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료폐기	철회	미처리 등
7	건설위원회	35	4.83	35	0	0	0	0	0	0
	교육문화위원회	81	11.19	74	0	0	7	0	0	0
	교통위원회	95	13.12	70	0	0	25	0	0	0
	도시관리위원회	92	12.71	71	0	0	20	0	1	0
	보건복지위원회	54	7.46	38	0	0	16	0	0	0
	보건사회위원회	5	0.69	5	0	0	0	0	0	0
	본회의	14	1.93	5	0	0	7	0	0	2
	상임위원회소관업무조정 특별위원회	1	0.14	1	0	0	0	0	0	0
	운영위원회	42	5.80	31	0	1	10	0	0	0
	재정경제위원회	136	18.78	118	0	0	16	0	2	0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	1	0.14	1	0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93	12.85	78	0	0	13	0	2	0
	환경수자원위원회	75	10.36	61	0	0	12	0	2	0
	소계	724	100.00	588	0	1	126	0	7	2
8	건설위원회	58	5.66	44	0	0	8	5	1	0
	교육위원회	100	9.76	73	0	0	11	13	3	0
	교통위원회	74	7.22	53	0	0	7	10	4	0
	도시관리위원회	38	3.71	15	0	2	20	1	0	0
	도시안전위원회	20	1.95	14	0	0	2	4	0	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4	8.20	58	0	0	3	21	2	0
	보건복지위원회	143	13.95	105	0	0	13	23	2	0
	본회의	75	7.32	60	0	3	5	4	2	1
	운영위원회	30	2.93	18	0	0	6	6	0	0
	인권 특별위원회	2	0.20	2	0	0	0	0	0	0
	재정경제위원회	177	17.27	132	0	2	10	28	5	0
	주택균형개발위원회	44	4.29	23	0	0	12	9	0	0
	행정자치위원회	117	11.41	85	0	0	11	19	2	0
	환경수자원위원회	63	6.15	45	0	0	4	14	0	0
	소계	1025	100.00	727	0	7	112	157	21	1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료폐기	철회	계류 등
9	교육위원회	146	9.25	117	0	0	29	0	0	0
	교통위원회	105	6.65	74	0	0	31	0	0	0
	기획경제위원회	215	13.62	164	0	0	51	0	0	0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12	7.09	89	0	0	19	0	4	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3	6.52	79	0	0	23	0	1	0
	보건복지위원회	193	12.22	152	0	0	41	0	0	0
	본회의	95	6.02	93	0	0	1	0	0	1
	운영위원회	76	4.81	52	0	0	24	0	0	0
	주택균형개발위원회	214	13.55	110	0	0	102	0	2	0
	행정자치위원회	221	14.00	158	0	0	59	0	4	0
	환경수자원위원회	99	6.27	70	0	0	29	0	0	0
	소계	1579	100.00	1158	0	0	409	0	11	1
10	교육위원회	232	10.99	204	0	0	27	0	1	0
	교통위원회	199	9.43	120	0	0	76	0	3	0
	기획경제위원회	230	10.90	187	0	0	37	0	6	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16	10.23	103	0	0	113	0	0	0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07	5.07	82	0	0	24	0	1	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4	6.82	110	0	0	33	0	1	0
	보건복지위원회	329	15.59	227	0	0	96	0	6	0
	본회의	167	7.91	159	0	0	8	0	0	0
	운영위원회	43	2.04	30	0	0	13	0	0	0
	행정자치위원회	259	12.27	206	0	0	48	0	5	0
	환경수자원위원회	185	8.76	122	0	0	63	0	0	0
	소계	2111	100.00	1550	0	0	538	0	23	0
11	교육위원회	276	11.78	222	0	0	8	0	0	46
	교통위원회	136	5.80	87	0	0	19	0	0	30
	기획경제위원회	260	11.10	189	0	0	15	0	0	56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37	5.85	66	0	0	44	0	0	2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53	6.53	120	0	0	14	0	0	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3	8.24	124	0	0	44	0	0	25
	보건복지위원회	337	14.38	178	0	1	22	0	0	136
	본회의	166	7.08	162	1	0	0	0	0	3
	운영위원회	84	3.59	47	0	0	11	0	0	26
	주택공간위원회	197	8.41	101	0	0	71	0	0	25
	행정자치위원회	179	7.64	115	0	0	17	0	0	47
	환경수자원위원회	225	9.60	148	0	2	39	0	0	36
	소계	2343	100.00	1559	1	3	304	0	0	476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료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건설위원회	130	1.58	112	0	1	10	5	1	1
	교육문화위원회	161	1.96	150	0	0	10	0	0	1
	교육위원회	754	9.18	616	0	0	75	13	4	46
	교통위원회	643	7.83	435	0	0	161	10	7	30
	기획경제위원회	705	8.58	540	0	0	103	0	6	5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16	2.63	103	0	0	113	0	0	0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37	1.67	66	0	0	44	0	0	27
	도시관리위원회	175	2.13	127	0	3	43	1	1	0
	도시안전위원회	20	0.24	14	0	0	2	4	0	0
	도시안전건설위원회	372	4.53	291	0	0	57	0	5	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24	6.38	371	0	0	103	21	4	25
	보건복지위원회	1056	12.85	700	0	1	188	23	8	136
	보건사회위원회	40	0.49	38	0	0	2	0	0	0
	본회의	531	6.46	485	1	4	25	4	2	10
	상임위원회소관업무조정 특별위원회	1	0.01	1	0	0	0	0	0	0
	운영위원회	293	3.57	196	0	1	64	6	0	26
	인권 특별위원회	2	0.02	2	0	0	0	0	0	0
	재정경제위원회	387	4.71	322	0	2	27	28	8	0
	주택공간위원회	197	2.40	101	0	0	71	0	0	25
	주택균형개발위원회	258	3.14	133	0	0	114	9	2	0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	1	0.01	1	0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935	11.38	706	0	0	150	19	13	47
	환경수자원위원회	677	8.24	473	0	2	150	14	2	36
	소계	8215	100.00	5983	1	14	1512	157	63	485

나. 부산광역시

❑ 조례안 정보 현황

○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안 정보는 제1대부터 제9대까지 집계되어 있음

○ 처리결과 범주는 서울과 유사하나 “임기만료폐기” 항목 없이 기록되었으며, 회기별 미처리 등 건수는 제6대 4건, 제7대 7건, 제8대 3건, 제9대 54건으로, 전체 4,507건 중 74건(약 1.6%)에 불과

– 제9대의 미처리 건이 다소 있지만 이는 자료 수집 시점에 계류 중이던

조례안으로 볼 수 있음

- 제6대에 제안자 정보가 누락된 조례안 2건이 있었으나 이후 대수에서는 제안자 정보 누락이 없음

○ 다만, “의안정보”로부터는 소관위원회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임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부산시의회 조례안 제안 건수는 제6대 374건에서 제9대 1,152건으로 증가하였고,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임

○ 특히 의원 발의 비중이 크게 상승했는데, 제6대에는 의원 발의 38.5%, 시장(시장) 제출 47.6%로 아직 집행부 우위였으나, 제7대에 처음으로 의원 발의(50.9%)가 시장 제출(41.7%)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제8대에는 의원 60.4%, 제9대에는 72.1%로 의원 발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제출 제안은 같은 기간 47.6% → 21.9%로 감소하였음

○ 서울시와 유사하게 의원 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정가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보임

- 제9대 의회 전체 제안 1,152건 중 수정가결이 110건으로, 원안가결(972건) 대비 약 11.3%의 수정률을 보였는데, 특히 의원 발의안의 경우 수정가결이 85건(제7대), 69건(제8대), 110건(제9대) 등으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

○ 교육감 제출은 연평균 5~15% 수준을 유지했고, 의장 제안은 없었음

○ 정보 누락은 제안자별로 거의 없으며, 제6대의 누락 2건 이외에는 모든 조례안의 제안자가 명확히 기록되었음

[표 4] 부산광역시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1대~제9대

(단위: 건수, %)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대안반영폐기	철회	미처리 등
1	의원	0	0.00	0	0	0	0	0	0	0
	위원회	23	8.01	21	1	0	0	0	0	1
	의장	0	0.00	0	0	0	0	0	0	0
	시장	236	82.23	209	26	0	0	0	0	1
	교육감	28	9.76	25	2	0	0	0	0	1
	정보누락	0	0.00	0	0	0	0	0	0	0
	소계	287	100.00	255	29	0	0	0	0	3
2	의원	0	0.00	0	0	0	0	0	0	0
	위원회	7	3.91	5	2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시장	150	83.80	129	21	0	0	0	0	0
	교육감	22	12.29	21	1	0	0	0	0	0
	정보누락	0	0.00	0	0	0	0	0	0	0
	소계	179	100.00	155	24	0	0	0	0	0
3	의원	0	0.00	0	0	0	0	0	0	0
	위원회	13	5.20	10	1	0	0	0	0	2
	의장	0	0.00	0	0	0	0	0	0	0
	시장	195	78.00	174	20	0	0	0	0	1
	교육감	42	16.80	39	3	0	0	0	0	0
	정보누락	0	0.00	0	0	0	0	0	0	0
	소계	250	100.00	223	24	0	0	0	0	3
4	의원	1	0.39	1	0	0	0	0	0	0
	위원회	18	7.03	17	1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시장	201	78.52	180	21	0	0	0	0	0
	교육감	36	14.06	29	7	0	0	0	0	0
	정보누락	0	0.00	0	0	0	0	0	0	0
	소계	256	100.00	227	29	0	0	0	0	0
5	의원	32	10.16	26	6	0	0	0	0	0
	위원회	22	6.98	21	1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시장	221	70.16	202	19	0	0	0	0	0
	교육감	40	12.70	36	4	0	0	0	0	0
	정보누락	0	0.00	0	0	0	0	0	0	0
	소계	315	100.00	285	30	0	0	0	0	0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대안반영폐기	철회	미처리 등
6	의원	144	38.50	121	21	0	0	0	0	2
	위원회	5	1.34	5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시장	178	47.59	156	22	0	0	0	0	0
	교육감	45	12.03	41	4	0	0	0	0	0
	정보누락	2	0.53	0	0	0	0	0	0	2
	소계	374	100.00	323	47	0	0	0	0	4
7	의원	378	50.87	333	33	1	0	1	6	4
	위원회	13	1.75	12	1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시장	310	41.72	276	30	0	1	1	0	2
	교육감	42	5.65	34	6	1	0	0	0	1
	정보누락	0	0.00	0	0	0	0	0	0	0
	소계	743	100.00	655	70	2	1	2	6	7
8	의원	574	60.36	449	85	6	21	3	8	2
	위원회	40	4.21	39	0	0	1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시장	295	31.02	243	41	0	10	0	0	1
	교육감	42	4.42	37	4	1	0	0	0	0
	정보누락	0	0.00	0	0	0	0	0	0	0
	소계	951	100.00	768	130	7	32	3	8	3
9	의원	830	72.05	711	69	1	0	0	9	40
	위원회	26	2.26	25	1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시장	252	21.88	206	33	1	1	0	1	10
	교육감	44	3.82	30	7	1	0	0	2	4
	정보누락	0	0.00	0	0	0	0	0	0	0
	소계	1152	100.00	972	110	3	1	0	12	54
총계	의원	1959	43.47	1641	214	8	21	4	23	48
	위원회	167	3.71	155	8	0	1	0	0	3
	의장	0	0.00	0	0	0	0	0	0	0
	시장	2038	45.22	1775	233	1	12	1	1	15
	교육감	341	7.57	292	38	3	0	0	2	6
	정보누락	2	0.04	0	0	0	0	0	0	2
	소계	4507	100.00	3863	493	12	34	5	26	74

다. 대구광역시

❑ 조례안 정보 현황

- ㅇ 대구광역시의회 자료는 제1대부터 제9대까지 포함됨
- ㅇ 대구의 경우 조례안 처리결과 분류에서 “임기만료폐기”가 별도 항목으로 기록되지 않고, “미처리 등”으로 미처리와 정보 누락을 포괄
- ㅇ 전체 3,764건의 조례안 중 미처리 등으로 분류된 건은 30건(약 0.8%)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거나 기록이 명확함
- ㅇ 다만, 제안자가 ‘주민청구’인 조례안은 통계에서 시장 제출에 포함하여 집계하였음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ㅇ 대구에서도 최근으로 갈수록 의원 제안 비중이 증가하였음
  - − 1대 조례안 중 의원 발의는 1.5%에 그쳤으나, 6대에 46.0%까지 높아진 후 8대와 9대에는 약 57% 수준으로 의원 발의가 우위를 점하였음
  - − 반면 시장 제출은 1대 66.4%에서 9대 32.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두 배 가까이 많음
  - − 교육감 제출은 전체의 약 5~16% 사이에서 등락을 보였고, 위원회 제안은 9대에 5.6%로 약간 증가하여 (위원회 제안 38건) 일부 특별위원회 혹은 상임위 공동발의 활동이 있었음을 시사함
- ㅇ 대구광역시의회는 조례안 부결 건수가 비교적 많았는데, 전체 조례안의 약 7.5%인 283건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었음
  - − 이는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수치로, 조례안 심사에서 엄격한 경향을 보여줌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ㅇ 대구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 구조 변화가 적은 편이지만, 대수에 따라 위원회 명칭이 일부 조정되었음
- ㅇ 조례안은 주로 행정자치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서 심사되었음

[표 5] 대구광역시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1대~제9대

(단위: 건수, %)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1	의원	6	1.54	5	0	0	0	0	1
	위원회	62	15.90	60	1	1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59	66.41	223	26	2	6	0	2
	교육감	63	16.15	60	3	0	0	0	0
	소계	390	100.00	348	30	3	6	0	3
2	의원	3	7.14	2	0	0	0	0	1
	위원회	1	2.38	1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32	76.19	20	12	0	0	0	0
	교육감	6	14.29	4	2	0	0	0	0
	소계	42	100.00	27	14	0	0	0	1
3	의원	19	6.17	15	2	0	0	1	1
	위원회	1	0.32	1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43	78.90	165	55	5	10	3	5
	교육감	45	14.61	35	5	0	0	5	0
	소계	308	100.00	216	62	5	10	9	6
4	의원	34	12.78	21	11	0	1	1	0
	위원회	0	0.00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190	71.43	131	47	0	3	9	0
	교육감	42	15.79	41	1	0	0	0	0
	소계	266	100.00	193	59	0	4	10	0
5	의원	144	37.11	115	24	0	1	4	0
	위원회	0	0.00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04	52.58	129	67	0	4	4	0
	교육감	40	10.31	36	3	0	0	1	0
	소계	388	100.00	280	94	0	5	9	0
6	의원	208	46.02	148	43	0	5	12	0
	위원회	1	0.22	1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184	40.71	134	48	0	1	1	0
	교육감	59	13.05	51	7	0	1	0	0
	소계	452	100.00	334	98	0	7	13	0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7	의원	221	40.40	196	16	1	1	7	0
	위원회	6	1.10	5	0	0	0	1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61	47.71	222	31	0	1	7	0
	교육감	59	10.79	56	2	0	1	0	0
	소계	547	100.00	479	49	1	3	15	0
8	의원	401	58.20	354	24	0	12	8	3
	위원회	26	3.77	26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23	32.37	184	32	0	0	6	1
	교육감	39	5.66	37	2	0	0	0	0
	소계	689	100.00	601	58	0	12	14	4
9	의원	389	57.04	350	26	2	0	1	10
	위원회	38	5.57	38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23	32.70	195	25	0	1	0	2
	교육감	32	4.69	27	1	0	0	0	4
	소계	682	100.00	610	52	2	1	1	16
총계	의원	1425	37.86	1206	146	3	20	34	16
	위원회	135	3.59	132	1	1	0	1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1819	48.33	1403	343	7	26	30	10
	교육감	385	10.23	347	26	0	2	6	4
	소계	3764	100.00	3088	516	11	48	71	30

[표 6] 대구광역시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1대~제9대

(단위: 건수,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1	건설위원회	27	6.92	23	3	0	1	0	0
	내무위원회	165	42.31	150	8	2	4	0	1
	문교사회위원회	101	25.90	89	10	0	1	0	1
	산업건설위원회	13	3.33	9	4	0	0	0	0
	산업위원회	21	5.38	16	4	0	0	0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0.77	3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3	3.33	12	0	1	0	0	0
	정보 누락	6	1.54	5	1	0	0	0	0
	조례정비특별위원회	41	10.51	41	0	0	0	0	0
	소계	390	100.00	348	30	3	6	0	3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2	건설위원회	5	11.90	4	0	0	0	0	1
	내무위원회	19	45.24	16	3	0	0	0	0
	문교사회위원회	14	33.33	5	9	0	0	0	0
	산업위원회	2	4.76	0	2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2	4.76	2	0	0	0	0	0
	소계	42	100.00	27	14	0	0	0	1
3	건설위원회	10	3.25	7	1	1	1	0	0
	건설환경위원회	37	12.01	25	12	0	0	0	0
	경제교통위원회	21	6.82	11	8	0	0	1	1
	교육사회위원회	36	11.69	26	8	1	0	0	1
	내무위원회	69	22.40	56	8	1	3	0	1
	문교사회위원회	48	15.58	33	9	0	1	5	0
	산업교통위원회	27	8.77	13	9	2	2	0	1
	산업위원회	1	0.32	1	0	0	0	0	0
	운영위원회	11	3.57	10	1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2	0.65	1	0	0	0	1	0
	정보 누락	3	0.97	1	1	0	0	0	1
	행정자치위원회	43	13.96	32	5	0	3	2	1
	소계	308	100.00	216	62	5	10	9	6
4	건설환경위원회	39	14.66	25	11	0	1	2	0
	경제교통위원회	37	13.91	14	20	0	0	3	0
	교육사회위원회	76	28.57	67	7	0	0	2	0
	운영위원회	13	4.89	11	2	0	0	0	0
	정보 누락	3	1.13	1	2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98	36.84	75	17	0	3	3	0
	소계	266	100.00	193	59	0	4	10	0
5	건설환경위원회	68	17.53	36	28	0	2	2	0
	경제교통위원회	58	14.95	28	25	0	2	3	0
	교육사회위원회	106	27.32	87	16	0	1	2	0
	운영위원회	28	7.22	25	3	0	0	0	0
	정보 누락	2	0.52	1	1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126	32.47	103	21	0	0	2	0
	소계	388	100.00	280	94	0	5	9	0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6	건설환경위원회	82	18.14	47	33	0	1	1	0
	경제교통위원회	73	16.15	41	28	0	2	2	0
	교육위원회	73	16.15	62	9	0	0	2	0
	문화복지위원회	88	19.47	67	18	0	0	3	0
	운영위원회	8	1.77	6	1	0	0	1	0
	정보 누락	5	1.11	1	0	0	2	2	0
	행정자치위원회	123	27.21	110	9	0	2	2	0
	소계	452	100.00	334	98	0	7	13	0
7	건설교통위원회	101	18.46	85	13	0	0	3	0
	경제환경위원회	74	13.53	61	9	1	0	3	0
	교육위원회	78	14.26	73	2	0	2	1	0
	기획행정위원회	168	30.71	155	11	0	1	1	0
	문화복지위원회	108	19.74	92	14	0	0	2	0
	운영위원회	8	1.46	8	0	0	0	0	0
	정보 누락	10	1.83	5	0	0	0	5	0
	소계	547	100.00	479	49	1	3	15	0
8	건설교통위원회	120	17.42	107	11	0	2	0	0
	경제환경위원회	116	16.84	100	11	0	0	4	1
	교육위원회	98	14.22	88	3	0	4	2	1
	기획행정위원회	157	22.79	134	14	0	5	3	1
	문화복지위원회	162	23.51	139	18	0	1	3	1
	운영위원회	8	1.16	7	1	0	0	0	0
	정보 누락	28	4.06	26	0	0	0	2	0
	소계	689	100.00	601	58	0	12	14	4
9	건설교통위원회	115	16.86	109	4	0	0	0	2
	경제환경위원회	148	21.70	113	30	1	0	0	4
	교육위원회	92	13.49	85	2	0	0	0	5
	기획행정위원회	148	21.70	138	6	1	1	0	2
	문화복지위원회	141	20.67	127	10	0	0	1	3
	운영위원회	12	1.76	12	0	0	0	0	0
	정보 누락	26	3.81	26	0	0	0	0	0
	소계	682	100.00	610	52	2	1	1	16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건설교통위원회	336	8.93	301	28	0	2	3	2
	건설위원회	42	1.12	34	4	1	2	0	1
	건설환경위원회	226	6.00	133	84	0	4	5	0
	경제교통위원회	189	5.02	94	81	0	4	9	1
	경제환경위원회	338	8.98	274	50	2	0	7	5
	교육사회위원회	218	5.79	180	31	1	1	4	1
	교육위원회	341	9.06	308	16	0	6	5	6
	기획행정위원회	473	12.57	427	31	1	7	4	3
	내무위원회	253	6.72	222	19	3	7	0	2
	문교사회위원회	163	4.33	127	28	0	2	5	1
	문화복지위원회	499	13.26	425	60	0	1	9	4
	산업건설위원회	13	0.35	9	4	0	0	0	0
	산업교통위원회	27	0.72	13	9	2	2	0	1
	산업위원회	24	0.64	17	6	0	0	0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0.08	3	0	0	0	0	0
	운영위원회	88	2.34	79	8	0	0	1	0
	의회운영위원회	17	0.45	15	0	1	0	1	0
	정보 누락	83	2.21	66	5	0	2	9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41	1.09	41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390	10.36	320	52	0	8	9	1
	소계	3764	100.00	3088	516	11	48	71	30

라. 인천광역시

❑ 조례안 정보 현황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1대부터 제9대까지 조례안 정보를 제공하나, 과거 일부 대수의 처리결과 기록이 불완전한 특징이 있음

- 특히 제1대~제5대 조례안의 상당수가 처리결과가 “미처리 등”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제5대 총 562건 중 559건이 미처리로 표시되어 사실상 처리결과가 남아 있지 않음
- 제6대부터는 기록이 비교적 충실하게 제6대 총 590건 중 305건(51.7%)이 미처리로 집계되었고, 제7대~제9대에는 미처리 비율이 각 5.4%, 3.2%, 7.2%로 크게 낮아졌음
- 전체적으로 5,144건 중 미처리 등이 2,328건(약 45.2%)으로 높게 나타나

는데, 이는 초기 대수 데이터 결손에 따름

○ 이러한 데이터 공백은 해당 조례안이 폐기된 것인지, 부결된 것인지, 아니면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처리결과를 알 수 없으면 해당 조례에 첨부된 비용추계서가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되었는지 사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

- 이는 지방의회 행정정보 시스템의 전반적인 혁신이 시급함을 시사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인천광역시의회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조례 발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음

- 7대 645건, 8대 914건, 9대 893건으로 8대 정점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제안자별로 보면, 의원 발의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여 1대 6.5%에서 8대 58.5%, 9대 63.6%로 확대되었고, 반대로 시장 제출은 1대 73.8%에서 9대 25.9%로 감소하였음

- 특히 1~3대에는 집행부 제안이 절대다수였으나, 7대부터 의원 제안이 50%를 넘고 8~9대에는 의원 주도 입법이 정착되었음

○ 제안자 정보 누락은 발견되지 않았음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인천광역시의회는 초기에 위원회 소관 정보가 크게 누락된 사례가 있음

- 1대의 경우 소관위원회가 파악되지 않은 조례안이 38건(전체의 8.1%), 2대의 경우 33건(10.3%)이었음

○ 행정자치위, 산업경제위, 교육위원회, 복지환경위 등에서 조례안이 주로 심사되었음

○ 대수별로 상임위원회 개편이 몇 차례 있었는데, 특히 6대 이전에 문교사회위원회 분리 등 구조 변화가 있었음

○ 인천이 위원회 명칭 변경이 비교적 잦았던 편으로, “내무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산업위원회” 등 몇 차례 개편이 있었음

[표 7] 인천광역시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1대~제9대

(단위: 건수, %)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1	의원	23	4.88		0	0	0	0	0	23
	위원회	32	6.79		15	0	0	0	0	17
	의장	4	0.85		0	0	0	0	0	4
	시장	347	73.67		2	1	0	2	0	342
	교육감	65	13.80		1	0	0	0	0	64
	소계	471	100.00		18	1	0	2	0	450
2	의원	14	4.39		0	1	0	0	0	13
	위원회	28	8.78		14	0	0	0	0	14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34	73.35		4	0	0	0	0	230
	교육감	43	13.48		0	0	0	0	0	43
	소계	319	100.00		18	1	0	0	0	300
3	의원	26	6.53	12	0	0	0	0	0	14
	위원회	15	3.77	3	5	0	0	0	0	7
	의장	0	0.00	0	0	0	0	0	0	0
	시장	296	74.37	104	3	6	1	1	0	181
	교육감	61	15.33	14	0	0	0	0	0	47
	소계	398	100.00	133	8	6	1	1	0	249
4	의원	37	10.51		2	0	0	1	0	34
	위원회	14	3.98		2	0	0	0	0	12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70	76.70		6	0	3	0	0	261
	교육감	31	8.81		1	0	0	0	0	30
	소계	352	100.00		11	0	3	1	0	337
5	의원	193	34.34		0	0	3	0	0	190
	위원회	49	8.72		0	0	0	0	0	49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88	51.25		0	0	0	0	0	288
	교육감	32	5.69		0	0	0	0	0	32
	소계	562	100.00		0	0	3	0	0	559
6	의원	276	46.78		76	63	0	0	0	137
	위원회	55	9.32		20	1	0	0	0	34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12	35.93		68	33	0	0	0	111
	교육감	47	7.97		17	7	0	0	0	23
	소계	590	100.00		181	104	0	0	0	305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7	의원	329	51.01		152	150	1	0	1	25
	위원회	3	0.47		3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62	40.62		176	74	2	1	0	9
	교육감	51	7.91		44	6	0	0	0	1
	소계	645	100.00		375	230	3	1	1	35
8	의원	535	58.53		240	271	1	0	0	23
	위원회	73	7.99		73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52	27.57		166	81	1	0	0	4
	교육감	54	5.91		46	6	0	0	0	2
	소계	914	100.00		525	358	2	0	0	29
9	의원	568	63.61		342	185	2	0	0	39
	위원회	18	2.02		18	0	0	0	0	0
	의장	1	0.11		0	0	1	0	0	0
	시장	231	25.87		165	55	1	0	0	10
	교육감	75	8.40		48	12	0	0	0	15
	소계	893	100.00		573	252	4	0	0	64
총계	의원	2001	38.90	12	812	670	7	1	1	498
	위원회	287	5.58	3	150	1	0	0	0	133
	의장	5	0.10	0	0	0	1	0	0	4
	시장	2392	46.50	104	590	250	8	4	0	1436
	교육감	459	8.92	14	157	31	0	0	0	257
	소계	5144	100.00	133	1709	952	16	5	1	2328

[표 8] 인천광역시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1대~제9대

(단위: 건수,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계류 등
1	건설위원회	28	5.94	0	0	0	0	0	0	28
	내무위원회	216	45.86	0	1	1	0	0	0	214
	문교사회위원회	109	23.14	0	1	0	0	0	0	108
	산업건설위원회	29	6.16	0	0	0	0	0	0	29
	산업경제위원회	30	6.37	0	0	0	0	0	0	30
	의회운영위원회	20	4.25	0	0	0	0	0	0	20
	정보 누락	38	8.07	0	16	0	0	2	0	20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0.21	0	0	0	0	0	0	1
	소계	471	100.00	0	18	1	0	2	0	450
2	건설위원회	41	12.85	0	0	0	0	0	0	41
	교육환경개선행정사무조사위원회	2	0.63	0	0	0	0	0	0	2
	내무위원회	106	33.23	0	4	0	0	0	0	102
	문교사회위원회	86	26.96	0	0	0	0	0	0	86
	산업경제위원회	42	13.17	0	0	0	0	0	0	42
	의회운영위원회	9	2.82	0	0	1	0	0	0	8
	정보 누락	33	10.34	0	14	0	0	0	0	19
	소계	319	100.00	0	18	1	0	0	0	300
3	건설위원회	70	17.59	27	1	0	1	0	0	41
	내무위원회	118	29.65	38	1	5	0	0	0	74
	문교사회위원회	121	30.40	33	0	0	0	0	0	88
	본회의	4	1.01	3	0	0	0	1	0	0
	산업경제위원회	61	15.33	26	2	1	0	0	0	32
	의회운영위원회	13	3.27	3	1	0	0	0	0	9
	정보 누락	11	2.76	3	3	0	0	0	0	5
	소계	398	100.00	133	8	6	1	1	0	249
4	건설교통위원회	52	14.77	0	0	0	1	0	0	51
	건설위원회	5	1.42	0	1	0	0	0	0	4
	기획행정위원회	109	30.97	0	0	0	0	0	0	109
	내무위원회	16	4.55	0	2	0	0	0	0	14
	문교사회위원회	77	21.88	0	2	0	0	0	0	75
	본회의	12	3.41	0	2	0	2	1	0	7
	산업경제위원회	65	18.47	0	2	0	0	0	0	63
	의회운영위원회	14	3.98	0	2	0	0	0	0	12
	정보 누락	2	0.57	0	0	0	0	0	0	2
	소계	352	100.00	0	11	0	3	1	0	337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계류 등
5	건설교통위원회	100	17.79	0	0	0	1	0	0	99
	기획행정위원회	166	29.54	0	0	0	1	0	0	165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1	0.18	0	0	0	0	0	0	1
	문교사회위원회	135	24.02	0	0	0	1	0	0	134
	본회의	2	0.36	0	0	0	0	0	0	2
	산업경제위원회	88	15.66	0	0	0	0	0	0	88
	의회운영위원회	24	4.27	0	0	0	0	0	0	24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1	0.18	0	0	0	0	0	0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45	8.01	0	0	0	0	0	0	45
	소계	562	100.00	0	0	0	3	0	0	559
6	건설교통위원회	90	15.25	0	34	12	0	0	0	44
	교육위원회	70	11.86	0	23	11	0	0	0	36
	기획행정위원회	170	28.81	0	66	19	0	0	0	85
	문교사회위원회	96	16.27	0	10	35	0	0	0	51
	본회의	50	8.47	0	15	1	0	0	0	34
	산업경제위원회	98	16.61	0	26	24	0	0	0	48
	의회운영위원회	14	2.37	0	6	2	0	0	0	6
	정보 누락	1	0.17	0	0	0	0	0	0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0.17	0	1	0	0	0	0	0
	소계	590	100.00	0	181	104	0	0	0	305
7	건설교통위원회	104	16.12	0	60	35	2	0	0	7
	교육위원회	93	14.42	0	78	12	0	0	0	3
	기획행정위원회	183	28.37	0	100	71	1	0	0	11
	문교사회위원회	122	18.91	0	46	69	0	0	0	7
	본회의	4	0.62	0	4	0	0	0	0	0
	산업경제위원회	112	17.36	0	73	34	0	1	0	4
	의회운영위원회	19	2.95	0	9	6	0	0	1	3
	정보 누락	8	1.24	0	5	3	0	0	0	0
	소계	645	100.00	0	375	230	3	1	1	35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계류 등
8	건설교통위원회	141	15.43	0	81	49	1	0	0	10
	교육위원회	144	15.75	0	120	22	0	0	0	2
	기획행정위원회	192	21.01	0	85	100	1	0	0	6
	문교사회위원회	151	16.52	0	36	111	0	0	0	4
	본회의	73	7.99	0	73	0	0	0	0	0
	산업경제위원회	163	17.83	0	99	57	0	0	0	7
	의회운영위원회	13	1.42	0	7	6	0	0	0	0
	정보 누락	1	0.11	0	1	0	0	0	0	0
	행정안전위원회	36	3.94	0	23	13	0	0	0	0
	소계	914	100.00	0	525	358	2	0	0	29
9	건설교통위원회	141	15.79	0	65	65	2	0	0	9
	교육위원회	183	20.49	0	144	19	0	0	0	20
	문화복지위원회	168	18.81	0	96	62	0	0	0	10
	본회의	18	2.02	0	18	0	0	0	0	0
	산업경제위원회	141	15.79	0	79	52	1	0	0	9
	의회운영위원회	28	3.14	0	6	18	0	0	0	4
	정보 누락	1	0.11	0	0	0	0	0	0	1
	행정안전위원회	213	23.85	0	165	36	1	0	0	11
	소계	893	100.00	0	573	252	4	0	0	64
총계	건설교통위원회	628	12.21	0	240	161	7	0	0	220
	건설위원회	144	2.80	27	2	0	1	0	0	114
	교육위원회	490	9.53	0	365	64	0	0	0	61
	교육환경개선행정사무조사위원회	2	0.04	0	0	0	0	0	0	2
	기획행정위원회	820	15.94	0	251	190	3	0	0	376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1	0.02	0	0	0	0	0	0	1
	내무위원회	456	8.86	38	8	6	0	0	0	404
	문교사회위원회	897	17.44	33	95	215	1	0	0	553
	문화복지위원회	168	3.27	0	96	62	0	0	0	10
	본회의	163	3.17	3	112	1	2	2	0	43
	산업건설위원회	29	0.56	0	0	0	0	0	0	29
	산업경제위원회	800	15.55	26	281	168	1	1	0	323
	의회운영위원회	154	2.99	3	31	33	0	0	1	86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1	0.02	0	0	0	0	0	0	1
	정보 누락	95	1.85	3	39	3	0	2	0	4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47	0.91	0	1	0	0	0	0	46
	행정안전위원회	249	4.84	0	188	49	1	0	0	11
	소계	5144	100.00	133	1709	952	16	5	1	2328

마. 광주광역시

❑ 조례안 정보 현황

- ○ 광주광역시의회는 제1대부터 제9대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결과 기록이 충실한 편임
- ○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제9대까지 204건으로, 제1대 320건 중 6건(1.9%), 제2대 279건 중 15건(5.4%), 제3대 328건 중 4건(1.2%) 등으로 미처리 건수 비율이 낮게 유지되었음
- ○ 이는 광주시의회가 조례안을 회기 내 처리하거나 임기만료 폐기 등으로 정리해 온 결과로 볼 수 있음
  - − 단, 광주는 통계상 “임기만료 폐기”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폐기”에 포함한 것으로 보임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 광주광역시의회도 조례 제안의 주체가 집행부에서 의원으로 이동해 왔지만, 그 속도는 타 광역의회에 비해 다소 완만하였음
  - − 제1대에는 의원 발의 비율이 1.25%에 그쳤고 시장 제출이 73.8%를 차지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의원 비중이 상승하여 제5대 25.6%, 제6대 42.5%, 제8대 46.4% 등으로 증가하였음
  - − 다만 제8대까지도 시장 제안이 46.7%로 거의 대등했으며, 제9대에서 의원 발의가 약 50%를 상회하였음(제9대 의원 337건, 시장 339건으로 각 46% 수준)
  - − 이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최근에야 의원입법이 근소하게 앞서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줌
  - − 교육감 제출은 평균 10~15% 내외로 유지되었고, 위원회나 의장 제안은 전체적으로 극히 적었음
- ○ 광주는 대부분 조례안을 원안가결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광주시의회는 대수를 거치며 상임위원회 구성의 일부 변화가 있었음

- 5대 이전에는 내무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등이 존재했고, 이후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조정되었음

○ 조례안은 행정자치위(또는 내무위)와 산업건설위, 교육위, 환경복지위 등에서 주로 심사되었음

- 특별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사한 비중은 크게 작은 편임

○ 전반적으로 광주는 특별한 편중 없이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처리했고, 위원회 체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9] 광주광역시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1대~제9대

(단위: 건수, %)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1	의원	4	1.25	1	3	0	0	0	0
	위원회	26	8.13	26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36	73.75	193	37	0	0	0	6
	교육감	54	16.88	47	7	0	0	0	0
	소계	320	100.00	267	47	0	0	0	6
2	의원	1	0.36	1	0	0	0	0	0
	위원회	23	8.24	23	0	0	0	0	0
	의장	1	0.36	1	0	0	0	0	0
	시장	225	80.65	149	60	0	0	2	14
	교육감	29	10.39	23	5	0	0	0	1
	소계	279	100.00	197	65	0	0	2	15
3	의원	26	7.93	21	5	0	0	0	0
	위원회	9	2.74	9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42	73.78	191	48	0	0	0	3
	교육감	51	15.55	44	6	0	0	0	1
	소계	328	100.00	265	59	0	0	0	4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4	의원	55	17.92	30	15	1	0	0	9
	위원회	3	0.98	3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09	68.08	175	33	0	0	0	1
	교육감	40	13.03	36	4	0	0	0	0
	소계	307	100.00	244	52	1	0	0	10
5	의원	110	25.58	69	28	0	0	0	13
	위원회	1	0.23	1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61	60.70	228	29	0	0	0	4
	교육감	58	13.49	50	8	0	0	0	0
	소계	430	100.00	348	65	0	0	0	17
6	의원	262	42.46	163	55	0	0	0	44
	위원회	35	5.67	35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68	43.44	227	35	0	0	0	6
	교육감	52	8.43	43	6	0	0	0	3
	소계	617	100.00	468	96	0	0	0	53
7	의원	337	46.42	285	39	0	1	0	12
	위원회	4	0.55	4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339	46.69	273	59	2	0	0	5
	교육감	46	6.34	41	3	0	0	0	2
	소계	726	100.00	603	101	2	1	0	19
8	의원	506	56.73	417	56	0	7	1	25
	위원회	3	0.34	2	1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333	37.33	285	41	0	2	0	5
	교육감	50	5.61	47	1	0	0	0	2
	소계	892	100.00	751	99	0	9	1	32
9	의원	468	60.23	376	58	0	0	1	33
	위원회	4	0.51	4	0	0	0	0	0
	의장	1	0.13	0	0	1	0	0	0
	시장	258	33.20	216	25	0	0	2	15
	교육감	46	5.92	43	3	0	0	0	0
	소계	777	100.00	639	86	1	0	3	48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의원	1769	37.83	1363	259	1	8	2	136
	위원회	108	2.31	107	1	0	0	0	0
	의장	2	0.04	1	0	1	0	0	0
	시장	2371	50.71	1937	367	2	2	4	59
	교육감	426	9.11	374	43	0	0	0	9
	소계	4676	100.00	3782	670	4	10	6	204

[표 10] 광주광역시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1대~제9대

(단위: 건수,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1	내무위원회	152	47.50	132	19	0	0	0	1
	문교사회위원회	90	28.13	77	11	0	0	0	2
	산업건설위원회	53	16.56	33	17	0	0	0	3
	의회운영위원회	18	5.63	18	0	0	0	0	0
	조례정비특별위원회	7	2.19	7	0	0	0	0	0
	소계	320	100.00	267	47	0	0	0	6
2	내무위원회	136	48.75	99	31	0	0	0	6
	문교사회위원회	49	17.56	34	10	0	0	2	3
	본회의	12	4.30	12	0	0	0	0	0
	산업건설위원회	58	20.79	34	22	0	0	0	2
	의회운영위원회	19	6.81	17	2	0	0	0	0
	정보 누락	3	1.08	0	0	0	0	0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0.36	1	0	0	0	0	0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1	0.36	0	0	0	0	0	1
	소계	279	100.00	197	65	0	0	2	15
3	교육사회위원회	87	26.52	72	14	0	0	0	1
	내무위원회	9	2.74	8	1	0	0	0	0
	문교사회위원회	5	1.52	5	0	0	0	0	0
	본회의	1	0.30	1	0	0	0	0	0
	산업건설위원회	88	26.83	66	19	0	0	0	3
	의회운영위원회	10	3.05	9	1	0	0	0	0
	정보 누락	1	0.30	1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127	38.72	103	24	0	0	0	0
	소계	328	100.00	265	59	0	0	0	4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4	교육사회위원회	86	28.01	60	21	0	0	0	5
	본회의	1	0.33	1	0	0	0	0	0
	산업건설위원회	60	19.54	48	10	0	0	0	2
	의회운영위원회	10	3.26	10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150	48.86	125	21	1	0	0	3
	소계	307	100.00	244	52	1	0	0	10
5	교육사회위원회	135	31.40	100	26	0	0	0	9
	본회의	1	0.23	1	0	0	0	0	0
	산업건설위원회	98	22.79	75	19	0	0	0	4
	의회운영위원회	16	3.72	11	3	0	0	0	2
	정보 누락	1	0.23	1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179	41.63	160	17	0	0	0	2
	소계	430	100.00	348	65	0	0	0	17
6	교육위원회	102	16.53	72	16	0	0	0	14
	산업건설위원회	125	20.26	89	26	0	0	0	10
	의회운영위원회	17	2.76	14	2	0	0	0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33	5.35	33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208	33.71	166	23	0	0	0	19
	환경복지위원회	132	21.39	94	29	0	0	0	9
	소계	617	100.00	468	96	0	0	0	53
7	교육문화위원회	79	10.88	74	5	0	0	0	0
	교육사회위원회	1	0.14	1	0	0	0	0	0
	교육위원회	55	7.58	48	4	0	0	0	3
	산업건설위원회	188	25.90	155	23	0	0	0	10
	의회운영위원회	26	3.58	26	0	0	0	0	0
	정보 누락	1	0.14	0	1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240	33.06	200	35	2	0	0	3
	환경복지위원회	136	18.73	99	33	0	1	0	3
	소계	726	100.00	603	101	2	1	0	19
8	교육문화위원회	221	24.78	200	13	0	2	0	6
	산업건설위원회	232	26.01	192	31	0	3	0	6
	의회운영위원회	30	3.36	26	2	0	0	0	2
	정보 누락	3	0.34	3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233	26.12	204	21	0	1	0	7
	환경복지위원회	173	19.39	126	32	0	3	1	11
	소계	892	100.00	751	99	0	9	1	32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9	교육문화위원회	189	24.32	172	8	1	0	0	8
	산업건설위원회	179	23.04	137	28	0	0	0	14
	의회운영위원회	33	4.25	30	3	0	0	0	0
	조례정비특별위원회	36	4.63	35	1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193	24.84	144	30	0	0	3	16
	환경복지위원회	147	18.92	121	16	0	0	0	10
	전체	777	100.00	639	86	1	0	3	48
총계	교육문화위원회	489	10.46	446	26	1	2	0	14
	교육사회위원회	309	6.61	233	61	0	0	0	15
	교육위원회	157	3.36	120	20	0	0	0	17
	내무위원회	297	6.35	239	51	0	0	0	7
	문교사회위원회	144	3.08	116	21	0	0	2	5
	본회의	15	0.32	15	0	0	0	0	0
	산업건설위원회	1081	23.12	829	195	0	3	0	54
	의회운영위원회	179	3.83	161	13	0	0	0	5
	정보 누락	9	0.19	5	1	0	0	0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77	1.65	76	1	0	0	0	0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1	0.02	0	0	0	0	0	1
	행정자치위원회	1330	28.44	1102	171	3	1	3	50
	환경복지위원회	588	12.57	440	110	0	4	1	33
	전체	4676	100.00	3782	670	4	10	6	204

바. 대전광역시

❑ 조례안 정보 현황

○ 대전광역시의회는 제1대부터 제9대까지의 조례안을 데이터화하였음

○ 전체 4,074건 중 미처리 등은 9건(0.2%)에 불과하며, 이는 사실상 모든 조례안이 처리완료 또는 처리유형이 분명히 기록되었음을 의미

– “미처리 등”으로 남은 안건이 거의 없음

– 대안반영 폐기, 임기만료 폐기도 별도 구분한 사례가 있는데, 완비되어 있지는 않음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대전광역시의회 조례안 발의 건수는 제1대 188건에서 제9대 755건으로 약 4배 증가하였음

○ 제안 주체별 추이를 보면, 제6대까지는 집행부 제안이 다소 많았으나 제7대 이후부터 의원 발의가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였음

- 제6대에는 의원 발의 34.4%, 시장 제출 54.7%였으나, 제7대에는 의원 54.5%, 시장 40.9%로 역전되었고, 제8대 49.2%, 42.4%, 제9대 52.6%, 42.3%로 의원 제안이 안정적으로 많아지는 추세임

○ 또한 대전의 특징은 조례안의 대부분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하고 부결이나 철회가 거의 없다는 점임

- 제1대~제9대 전체 부결 건수는 단 6건에 지나지 않아, 조례안 부결률이 매우 낮고 대부분 합의 처리되는 경향을 보였음

○ 정보 누락 사항도 제안자별로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대전시의회는 조례안 처리에 있어 상임위원회별 역할 분담이 비교적 균등한 편임

-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등이 매 대수 20% 안팎의 안건을 심사하여 특정 상임위원회에 대한 과도한 편중 없이 업무가 수행되었음

○ 대전은 임기마다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통계상의 위원회 변경 빈도가 낮음

- 내무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 교육위원회 등으로 일부 명칭 조정은 있었으나 구조의 큰 변동은 없었음

○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이 있었으나 조례안 심사 건수는 매우 적었고, 조례안의 절대다수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었음

[표 11] 대전광역시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1대~제9대

(단위: 건수, %)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대안반영폐기	임기만료폐기	철회	미처리 등
1	의원	2	1.06	1	1	0	0	0	0	0	0
	위원회	20	10.64	20	0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0
	시장	143	76.06	119	22	1	0	0	0	1	0
	교육감	23	12.23	21	2	0	0	0	0	0	0
	소계	188	100.00	161	25	1	0	0	0	1	0
2	의원	7	2.67	5	2	0	0	0	0	0	0
	위원회	1	0.38	1	0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0
	시장	226	86.26	194	32	0	0	0	0	0	0
	교육감	28	10.69	25	3	0	0	0	0	0	0
	소계	262	100.00	225	37	0	0	0	0	0	0
3	의원	17	5.72	14	3	0	0	0	0	0	0
	위원회	0	0.00	0	0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0
	시장	248	83.50	171	65	0	10	0	0	2	0
	교육감	32	10.77	25	7	0	0	0	0	0	0
	소계	297	100.00	210	75	0	10	0	0	2	0
4	의원	20	7.63	18	2	0	0	0	0	0	0
	위원회	0	0.00	0	0	0	0	0	0	0	0
	의장	1	0.38	1	0	0	0	0	0	0	0
	시장	212	80.92	140	65	0	2	0	0	5	0
	교육감	29	11.07	24	5	0	0	0	0	0	0
	소계	262	100.00	183	72	0	2	0	0	5	0
5	의원	70	17.77	56	14	0	0	0	0	0	0
	위원회	0	0.00	0	0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0
	시장	288	73.10	226	60	1	0	0	0	1	0
	교육감	36	9.14	29	7	0	0	0	0	0	0
	소계	394	100.00	311	81	1	0	0	0	1	0
6	의원	144	34.37	138	4	0	0	0	2	0	0
	위원회	0	0.00	0	0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0
	시장	229	54.65	188	40	0	0	0	1	0	0
	교육감	46	10.98	39	6	0	0	0	1	0	0
	소계	419	100.00	365	50	0	0	0	4	0	0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대안반영폐기	임기만료폐기	철회	미처리 등
7	의원	430	54.50	415	6	0	1	0	6	1	1
	위원회	0	0.00	0	0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0
	시장	323	40.94	235	79	1	0	0	5	3	0
	교육감	36	4.56	28	5	1	0	0	1	1	0
	소계	789	100.00	678	90	2	1	0	12	5	1
8	의원	348	49.15	320	15	0	0	0	10	2	1
	위원회	1	0.14	1	0	0	0	0	0	0	0
	의장	2	0.28	0	0	0	0	2	0	0	0
	시장	300	42.37	254	31	1	0	0	12	1	1
	교육감	57	8.05	53	3	0	0	0	1	0	0
	소계	708	100.00	628	49	1	0	2	23	3	2
9	의원	397	52.58	378	7	1	2	0	0	5	4
	위원회	1	0.13	1	0	0	0	0	0	0	0
	의장	1	0.13	0	0	0	0	0	0	0	1
	시장	319	42.25	303	13	0	0	0	0	2	1
	교육감	37	4.90	33	4	0	0	0	0	0	0
	소계	755	100.00	715	24	1	2	0	0	7	6
총계	의원	1435	35.22	1345	54	1	3	0	18	8	6
	위원회	23	0.56	23	0	0	0	0	0	0	0
	의장	4	0.10	1	0	0	0	2	0	0	1
	시장	2288	56.16	1830	407	4	12	0	18	15	2
	교육감	324	7.95	277	42	1	0	0	3	1	0
	소계	4074	100.00	3476	503	6	15	2	39	24	9

[표 12] 대전광역시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1대~제9대

(단위: 건수,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대안 반영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1	내무위원회	73	38.83	64	9	0	0	0	0	0	0
	문교사회위원회	55	29.26	47	7	0	0	0	0	1	0
	본회의	3	1.60	3	0	0	0	0	0	0	0
	산업건설위원회	40	21.28	31	8	1	0	0	0	0	0
	운영위원회	5	2.66	4	1	0	0	0	0	0	0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12	6.38	12	0	0	0	0	0	0	0
	소계	188	100.00	161	25	1	0	0	0	1	0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대안 반영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2	내무위원회	111	42.37	104	7	0	0	0	0	0	0
	문교사회위원회	67	25.57	53	14	0	0	0	0	0	0
	산업건설위원회	76	29.01	62	14	0	0	0	0	0	0
	운영위원회	7	2.67	5	2	0	0	0	0	0	0
	정보 누락	1	0.38	1	0	0	0	0	0	0	0
	소계	262	100.00	225	37	0	0	0	0	0	0
3	교육사회위원회	88	29.63	62	24	0	2	0	0	0	0
	내무위원회	12	4.04	11	1	0	0	0	0	0	0
	문교사회위원회	2	0.67	1	1	0	0	0	0	0	0
	산업건설위원회	70	23.57	37	28	0	4	0	0	1	0
	운영위원회	12	4.04	9	3	0	0	0	0	0	0
	정보 누락	1	0.34	1	0	0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112	37.71	89	18	0	4	0	0	1	0
	소계	297	100.00	210	75	0	10	0	0	2	0
4	교육사회위원회	73	27.86	55	18	0	0	0	0	0	0
	본회의	1	0.38	1	0	0	0	0	0	0	0
	산업건설위원회	65	24.81	26	34	0	1	0	0	4	0
	운영위원회	11	4.20	11	0	0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112	42.75	90	20	0	1	0	0	1	0
	소계	262	100.00	183	72	0	2	0	0	5	0
5	교육사회위원회	116	29.44	90	26	0	0	0	0	0	0
	산업건설위원회	110	27.92	95	15	0	0	0	0	0	0
	운영위원회	18	4.57	18	0	0	0	0	0	0	0
	정보 누락	6	1.52	4	2	0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144	36.55	104	38	1	0	0	0	1	0
	소계	394	100.00	311	81	1	0	0	0	1	0
6	교육위원회	55	13.13	48	6	0	0	0	1	0	0
	복지환경위원회	97	23.15	80	16	0	0	0	1	0	0
	산업건설위원회	99	23.63	90	8	0	0	0	1	0	0
	운영위원회	11	2.63	11	0	0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157	37.47	136	20	0	0	0	1	0	0
	소계	419	100.00	365	50	0	0	0	4	0	0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대안 반영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7	교육위원회	163	20.66	151	6	1	0	0	4	1	0
	복지환경위원회	149	18.88	123	23	0	0	0	3	0	0
	본회의	1	0.13	0	0	0	0	0	0	0	1
	산업건설위원회	187	23.70	164	18	1	1	0	0	3	0
	운영위원회	19	2.41	18	1	0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270	34.22	222	42	0	0	0	5	1	0
	소계	789	100.00	678	90	2	1	0	12	5	1
8	교육위원회	107	15.11	98	4	0	0	0	5	0	0
	복지환경위원회	163	23.02	133	16	0	0	0	12	2	0
	본회의	2	0.28	2	0	0	0	0	0	0	0
	산업건설위원회	177	25.00	161	13	0	0	2	1	0	0
	운영위원회	29	4.10	24	3	0	0	0	0	1	1
	행정자치위원회	230	32.49	210	13	1	0	0	5	0	1
	소계	708	100.00	628	49	1	0	2	23	3	2
9	교육위원회	115	15.23	107	6	0	1	0	0	1	0
	복지환경위원회	170	22.52	163	6	0	1	0	0	0	0
	본회의	1	0.13	1	0	0	0	0	0	0	0
	산업건설위원회	183	24.24	176	2	0	0	0	0	1	4
	운영위원회	44	5.83	39	2	1	0	0	0	1	1
	행정자치위원회	242	32.05	229	8	0	0	0	0	4	1
	소계	755	100.00	715	24	1	2	0	0	7	6
총계	교육사회위원회	277	6.80	207	68	0	2	0	0	0	0
	교육위원회	440	10.80	404	22	1	1	0	10	2	0
	내무위원회	196	4.81	179	17	0	0	0	0	0	0
	문교사회위원회	124	3.04	101	22	0	0	0	0	1	0
	복지환경위원회	579	14.21	499	61	0	1	0	16	2	0
	본회의	8	0.20	7	0	0	0	0	0	0	1
	산업건설위원회	1007	24.72	842	140	2	6	2	2	9	4
	운영위원회	156	3.83	139	12	1	0	0	0	2	2
	정보 누락	8	0.20	6	2	0	0	0	0	0	0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12	0.29	12	0	0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1267	31.10	1080	159	2	5	0	11	8	2
	소계	4074	100.00	3476	503	6	15	2	39	24	9

사. 울산광역시

❑ 조례안 정보 현황

- ㅇ 울산광역시의회 조례안 자료는 제1대부터 제8대까지 축적되어 있으며,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의 조례안을 포함함
- ㅇ 처리결과 기록에는 “임기만료폐기” 항목이 별도로 나타나지 않으며, 임기만료 시 처리되지 못한 안건도 “폐기”로 분류되었음
- ㅇ 전체 3,306건 중 미처리 등으로 남은 안건은 16건(0.5%)에 불과하며, 거의 완전한 처리를 보임
  - − 제8대 진행 중이던 일부 안건이 미처리로 집계되었고, 그 외 회기에서는 미처리 건수가 0으로 나타남
- ㅇ 또한 울산은 제1대~제2대에 의원 제안자 정보가 일부 누락된 사례도 보이지 않아, 제안자 및 처리결과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음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ㅇ 울산광역시의회도 의원 입법 활동이 증가하여 제1대 의원 발의는 2.5%에 그쳤으나 제7대 55.0%, 제8대 59.1%로 크게 증가하였음
  - − 특히 제7대에 처음으로 의원 발의(434건)가 시장 제출(250건)을 크게 앞질렀고, 제8대에는 의원 발의가 약 59%, 시장 제출 34%로 격차가 커졌음
  - − 이에 따라 집행부 제안 비중은 제1대 78.7%에서 제8대 33.7%로 하락하였음
- ㅇ 교육감 발의는 평균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음
- ㅇ 울산의 특징은 제1대~제5대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저조했다는 점인데, 제5대까지는 집행부 제안이 절대다수였고 의원 발의 안건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였음
  - − 그러나 제6대 들어 24.1%로 증가한 데 이어 제7대부터 의원 입법이 활발해진 것으로 평가됨
- ㅇ 조례안 처리결과를 보면, 울산은 부결이나 철회 건수가 매우 적고(전체 기준 부결 4건, 철회 17건) 대부분 원안 또는 수정가결로 의결되어 합의 통과되는 경향이 강하였음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울산광역시의회는 광역시 승격 후 상임위원회 체계를 여러 차례 정비해 왔음

- 초기에는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이 있었고, 이후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으로 개편되었음

○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해당 시기 위원회에 소관으로 처리되었으며, 행정자치위(또는 내무위)와 산업건설위가 다소 많은 안건을 다루었고 교육 및 환경 관련 위원회도 역할을 수행하였음

○ 특별위원회 활동은 울산에서도 드물지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안을 1건 처리한 사례가 있음

[표 13] 울산광역시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1대~제8대

(단위: 건수, %)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1	의원	6	2.51	0	5	1	0	0	0
	위원회	1	0.42	1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188	78.66	174	12	1	1	0	0
	교육감	44	18.41	42	2	0	0	0	0
	소계	239	100.00	217	19	2	1	0	0
2	의원	3	0.89	2	1	0	0	0	0
	위원회	16	4.76	16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67	79.46	225	40	1	0	1	0
	교육감	50	14.88	38	11	0	0	1	0
	소계	336	100.00	281	52	1	0	2	0
3	의원	12	4.67	3	5	0	4	0	0
	위원회	14	5.45	13	0	0	0	1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191	74.32	149	39	0	2	1	0
	교육감	40	15.56	35	4	0	0	1	0
	소계	257	100.00	200	48	0	6	3	0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4	의원	59	18.15	41	7	0	10	1	0
	위원회	7	2.15	7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16	66.46	199	16	0	1	0	0
	교육감	43	13.23	39	3	0	1	0	0
	소계	325	100.00	286	26	0	12	1	0
5	의원	71	22.90	51	15	0	5	0	0
	위원회	8	2.58	8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176	56.77	159	16	0	1	0	0
	교육감	55	17.74	46	6	0	3	0	0
	소계	310	100.00	264	37	0	9	0	0
6	의원	103	24.12	87	7	0	9	0	0
	위원회	15	3.51	15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75	64.40	264	10	0	1	0	0
	교육감	34	7.96	31	2	0	1	0	0
	소계	427	100.00	397	19	0	11	0	0
7	의원	434	55.01	342	76	0	11	5	0
	위원회	36	4.56	35	1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50	31.69	215	25	0	7	3	0
	교육감	69	8.75	52	15	0	2	0	0
	소계	789	100.00	644	117	0	20	8	0
8	의원	368	59.07	341	9	0	0	3	15
	위원회	16	2.57	15	0	0	0	0	1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210	33.71	192	18	0	0	0	0
	교육감	29	4.65	25	3	1	0	0	0
	소계	623	100.00	573	30	1	0	3	16
총계	의원	1056	31.94	867	125	1	39	9	15
	위원회	113	3.42	110	1	0	0	1	1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1773	53.63	1577	176	2	13	5	0
	교육감	364	11.01	308	46	1	7	2	0
	소계	3306	100.00	2862	348	4	59	17	16

[표 14] 울산광역시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1대~제8대

(단위: 건수,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1	건설교통위원회	28	11.72	26	1	0	1	0	0
	교육사회위원회	47	19.67	42	5	0	0	0	0
	내무위원회	102	42.68	96	4	2	0	0	0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21	8.79	21	0	0	0	0	0
	도시경제위원회	8	3.35	3	5	0	0	0	0
	보사위원회	19	7.95	19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9	3.77	9	0	0	0	0	0
	정보 누락	1	0.42	1	0	0	0	0	0
	환경수도위원회	4	1.67	0	4	0	0	0	0
	소계	239	100.00	217	19	2	1	0	0
2	교육사회위원회	98	29.17	71	26	0	0	1	0
	내무위원회	152	45.24	142	8	1	0	1	0
	산업건설위원회	69	20.54	51	18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4	4.17	14	0	0	0	0	0
	정보 누락	3	0.89	3	0	0	0	0	0
	소계	336	100.00	281	52	1	0	2	0
3	교육사회위원회	81	31.52	63	17	0	0	1	0
	내무위원회	105	40.86	84	16	0	4	1	0
	산업건설위원회	58	22.57	41	15	0	2	0	0
	의회운영위원회	13	5.06	12	0	0	0	1	0
	소계	257	100.00	200	48	0	6	3	0
4	교육사회위원회	96	29.54	83	10	0	2	1	0
	내무위원회	122	37.54	118	2	0	2	0	0
	산업건설위원회	88	27.08	69	14	0	5	0	0
	의회운영위원회	19	5.85	16	0	0	3	0	0
	소계	325	100.00	286	26	0	12	1	0
5	교육위원회	60	19.35	49	7	0	4	0	0
	산업건설위원회	78	25.16	65	10	0	3	0	0
	의회운영위원회	10	3.23	8	2	0	0	0	0
	정보 누락	1	0.32	1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106	34.19	98	7	0	1	0	0
	환경복지위원회	55	17.74	43	11	0	1	0	0
	소계	310	100.00	264	37	0	9	0	0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6	교육위원회	57	13.35	51	4	0	2	0	0
	규제개혁특별위원회	1	0.23	1	0	0	0	0	0
	산업건설위원회	106	24.82	100	4	0	2	0	0
	의회운영위원회	12	2.81	12	0	0	0	0	0
	정보 누락	6	1.41	6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174	40.75	165	5	0	4	0	0
	환경복지위원회	71	16.63	62	6	0	3	0	0
	소계	427	100.00	397	19	0	11	0	0
7	교육위원회	147	18.63	111	32	0	2	2	0
	본회의	1	0.13	0	0	0	1	0	0
	산업건설위원회	202	25.60	171	22	0	8	1	0
	의회운영위원회	42	5.32	34	6	0	1	1	0
	정보 누락	4	0.51	0	0	0	3	1	0
	행정자치위원회	256	32.45	213	40	0	3	0	0
	환경복지위원회	137	17.36	115	17	0	2	3	0
	소계	789	100.00	644	117	0	20	8	0
8	교육위원회	106	17.01	91	6	1	0	0	8
	문화복지환경위원회	130	20.87	117	10	0	0	2	1
	산업건설위원회	160	25.68	147	7	0	0	1	5
	의회운영위원회	24	3.85	23	0	0	0	0	1
	행정자치위원회	203	32.58	195	7	0	0	0	1
	소계	623	100.00	573	30	1	0	3	16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건설교통위원회	28	0.85	26	1	0	1	0	0
	교육사회위원회	322	9.74	259	58	0	2	3	0
	교육위원회	370	11.19	302	49	1	8	2	8
	규제개혁특별위원회	1	0.03	1	0	0	0	0	0
	내무위원회	481	14.55	440	30	3	6	2	0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21	0.64	21	0	0	0	0	0
	도시경제위원회	8	0.24	3	5	0	0	0	0
	문화복지환경위원회	130	3.93	117	10	0	0	2	1
	보사위원회	19	0.57	19	0	0	0	0	0
	본회의	1	0.03	0	0	0	1	0	0
	산업건설위원회	761	23.02	644	90	0	20	2	5
	의회운영위원회	143	4.33	128	8	0	4	2	1
	정보 누락	15	0.45	11	0	0	3	1	0
	행정자치위원회	739	22.35	671	59	0	8	0	1
	환경복지위원회	263	7.96	220	34	0	6	3	0
	환경수도위원회	4	0.12	0	4	0	0	0	0
	소계	3306	100.00	2862	348	4	59	17	16

아.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안 정보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12년 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구성되어, 제1대부터 제4대(현재)까지의 조례안을 대상으로 함

○ 세종은 다른 의회에 비해 역사 자료가 짧지만, 그만큼 최근의 조례안 정보가 상세히 관리되고 있음

○ 전체 3,089건 중 미처리 등은 60건(1.9%)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정부 제4대에 계류 중인 안건들로 보임

○ 세종시는 제1대 조례안 중 일부에 소관위 정보 누락(38.0%)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소관위 정보 누락 사례가 없음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조례 제안은 최근 급격히 의원 주도로 전환되었음

– 제1대에는 의원 발의 29.7%, 시장 제출 57.8%였고 제2대에도 의원

36.8%, 시장 52.9%로 집행부 우위가 유지되었으나, 제3대에는 의원 55.6%, 시장 36.1%로 역전되었음

- 특히 제4대(2022~현재) 들어 의원 발의 비중이 79.5%에 달해 시장 제출 16.4%를 압도하고 있어, 세종은 가장 최근 회기에서 의원입법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된 모습을 보임

○ 교육감 제출은 평균 6~12%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또 다른 특징은 조례안 부결률이 낮고 수정가결이 활발하다는 점임

- 제1대~제3대까지 부결된 조례안은 대수별로 0~1건에 불과하였지만, 수정가결 비율은 높았음
- 제3대에는 의원 발의안 467건 중 130건(27.8%)이 수정가결로 처리되어, 타 시도에 비해 조례안 내용 수정에 적극적인 심사 관행을 보임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안 다수를 담당하고, 교육위원회가 다음의 비중을 차지함

○ 세종시의회 위원회별 처리결과를 보면, 1대에 위원회 정보 누락 건(정보 누락 201건)이 다소 있었지만, 이는 당시의 일시적 현상으로, 제2대 이후로는 누락이 해소되었음

[표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1대~제4대

(단위: 건수, %)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1	의원	157	29.68	93	49	0	9	6	0
	위원회	2	0.38	2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306	57.84	246	50	0	8	2	0
	교육감	64	12.10	54	9	0	1	0	0
	소계	529	100.00	395	108	0	18	8	0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2	의원	244	36.80	190	34	0	13	7	0
	위원회	6	0.90	6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351	52.94	283	50	0	16	2	0
	교육감	62	9.35	57	4	0	1	0	0
	소계	663	100.00	536	88	0	30	9	0
3	의원	467	55.60	321	130	0	11	5	0
	위원회	18	2.14	18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시장	303	36.07	238	55	0	9	1	0
	교육감	52	6.19	44	7	0	1	0	0
	소계	840	100.00	621	192	0	21	6	0
4	의원	840	79.47	671	108	6	0	1	54
	위원회	6	0.57	6	0	0	0	0	0
	의장	1	0.09	0	1	0	0	0	0
	시장	173	16.37	141	22	3	1	1	5
	교육감	37	3.50	30	6	0	0	0	1
	소계	1057	100.00	848	137	9	1	2	60
총계	의원	1708	55.29	1275	321	6	33	19	54
	위원회	32	1.04	32	0	0	0	0	0
	의장	1	0.03	0	1	0	0	0	0
	시장	1133	36.68	908	177	3	34	6	5
	교육감	215	6.96	185	26	0	3	0	1
	소계	3089	100.00	2400	525	9	70	25	60

[표 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1대~제4대

(단위: 건수,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1	교육위원회	44	8.32	28	15	0	1	0	0
	본회의	2	0.38	2	0	0	0	0	0
	산업건설위원회	117	22.12	77	28	0	8	4	0
	의회운영위원회	16	3.02	9	5	0	0	2	0
	정보 누락	201	38.00	200	0	0	1	0	0
	행정복지위원회	149	28.17	79	60	0	8	2	0
	소계	529	100.00	395	108	0	18	8	0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2	교육위원회	89	13.42	81	6	0	1	1	0
	본회의	2	0.30	1	1	0	0	0	0
	산업건설위원회	227	34.24	173	32	0	18	4	0
	의회운영위원회	29	4.37	22	7	0	0	0	0
	행정복지위원회	316	47.66	259	42	0	11	4	0
	소계	663	100.00	536	88	0	30	9	0
3	교육안전위원회	199	23.69	127	66	0	4	2	0
	교육위원회	4	0.48	4	0	0	0	0	0
	본회의	2	0.24	2	0	0	0	0	0
	산업건설위원회	251	29.88	199	43	0	7	2	0
	의회운영위원회	32	3.81	28	3	0	1	0	0
	행정복지위원회	352	41.90	261	80	0	9	2	0
	소계	840	100.00	621	192	0	21	6	0
4	교육안전위원회	206	19.49	175	20	0	0	0	11
	산업건설위원회	361	34.15	279	61	4	0	1	16
	의회운영위원회	49	4.64	37	11	0	0	0	1
	행정복지위원회	441	41.72	357	45	5	1	1	32
	소계	1057	100.00	848	137	9	1	2	60
총계	교육안전위원회	405	13.11	302	86	0	4	2	11
	교육위원회	137	4.44	113	21	0	2	1	0
	본회의	6	0.19	5	1	0	0	0	0
	산업건설위원회	956	30.95	728	164	4	33	11	16
	의회운영위원회	126	4.08	96	26	0	1	2	1
	정보 누락	201	6.51	200	0	0	1	0	0
	행정복지위원회	1258	40.73	956	227	5	29	9	32
	소계	3089	100.00	2400	525	9	70	25	60

4. 도·특별자치도의 조례안 처리결과

가. 경기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ㅇ 경기도의회는 제7대부터 제11대까지의 조례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ㅇ 전체 5,903건의 조례안 중 미처리 등으로 남은 건은 511건(8.7%)임
- ㅇ 경기도의회는 광역의회 중 조례안 발의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타 시도 대비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 − 그럼에도 처리결과 정보 누락은 드물고, 위원회 정보 누락 건도 39건(0.7%)으로 낮은 수준임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ㅇ 경기도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의원입법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임
  - − 제8대에 의원 발의 비율이 63.7% 수준으로 올라선 이후, 제9대 73.6%, 제10대 80.7%, 제11대 83.5%로 꾸준히 상승해 왔음
  - − 현재는 의원 발의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며, 제11대의 경우 의원 발의 1,292건, 도지사 제출 140건으로, 의원이 집행부 대비 약 9배 많은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음
  - − 반면 도지사(집행부) 제안은 제7대 41.7%에서 제11대 9.0%로 급감했고, 교육감 제안도 제7대~제11대 평균 3~7% 수준에 머물렀음
- ㅇ 경기도는 조례안 처리결과에서 원안가결과 수정가결 비중이 모두 높아, 전체 가결된 안건 5,983건 중 원안가결 3,759건(63%), 수정가결 1,554건(26%)으로 약 4건 중 1건은 수정되어 가결되었음
- ㅇ 부결은 총 27건(0.5%)으로 적고, 철회 18건, 미처리 511건 정도임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ㅇ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원회 개편과 전문화가 활발하게 나타난 편임
  - − 제7대~제11대 동안 경제노동위원회 신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분리 등 여러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조례안 소관이 조정되었음

- 경기도의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수 상임위에 비교적 고르게 분배되었으나, 제7대~제8대에는 교육위원회 소관이 다소 많은 편이었고(각 약 19%), 제9대~제11대에는 기획재정위와 경제노동위, 건설교통위 등도 많은 역할을 하였음

○ 경기도의회는 혁신추진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을 소수 다룬 기록이 있음

- 특별위 소관 조례안은 전체의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의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었음

○ 위원회별 정보 누락은 앞서 언급한 39건 외에는 없고, 경기도의회는 방대한 조례안도 체계적으로 위원회별 분류·처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17] 경기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7대~제11대

(단위: 건수, %)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7	의원	188	33.27	123	50	3	1	1	10
	위원회	43	7.61	43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286	50.62	164	104	9	2	3	4
	교육감	48	8.50	39	9	0	0	0	0
	소계	565	100.00	369	163	12	3	4	14
8	의원	520	63.65	240	193	3	3	0	81
	위원회	23	2.82	21	1	0	1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90	23.26	113	59	2	0	0	16
	교육감	84	10.28	65	12	2	0	0	5
	소계	817	100.00	439	265	7	4	0	102
9	의원	1071	81.69	582	351	3	7	0	128
	위원회	59	4.50	59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18	9.00	62	47	1	1	0	7
	교육감	63	4.81	55	7	0	0	0	1
	소계	1311	100.00	758	405	4	8	0	136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10	의원	1342	80.70	916	312	1	4	0	109
	위원회	69	4.15	69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205	12.33	117	80	0	0	0	8
	교육감	47	2.83	38	8	0	0	0	1
	소계	1663	100.00	1140	400	1	4	0	118
11	의원	1292	83.52	871	271	1	14	6	129
	위원회	64	4.14	63	0	0	0	1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40	9.05	81	43	2	1	5	8
	교육감	51	3.30	38	7	0	0	2	4
	소계	1547	100.00	1053	321	3	15	14	141
총계	의원	4413	74.76	2732	1177	11	29	7	457
	위원회	258	4.37	255	1	0	1	1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939	15.91	537	333	14	4	8	43
	교육감	293	4.96	235	43	2	0	2	11
	소계	5903	100.00	3759	1554	27	34	18	511

[표 18] 경기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7대~제11대

(단위: 건수,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7	건설교통위원회	49	8.67	34	13	1	0	0	1
	경제노동위원회	46	8.14	26	13	2	0	3	2
	교육위원회	48	8.50	39	9	0	0	0	0
	기획재정위원회	92	16.28	41	47	1	0	0	3
	농정해양위원회	28	4.96	23	4	1	0	0	0
	도시환경위원회	66	11.68	39	23	1	0	1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8	6.73	25	11	1	0	0	1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81	14.34	47	31	0	0	0	3
	본회의	43	7.61	43	0	0	0	0	0
	안전행정위원회	25	4.42	15	4	3	2	0	1
	의회운영위원회	12	2.12	8	2	1	0	0	1
	정보 누락	37	6.55	29	6	1	1	0	0
	소계	565	100.00	369	163	12	3	4	14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8	건설교통위원회	53	6.49	20	23	1	0	0	9
	경제노동위원회	61	7.47	38	19	2	0	0	2
	교육위원회	160	19.58	113	20	2	0	0	25
	기획재정위원회	112	13.71	56	46	0	0	0	10
	농정해양위원회	36	4.41	23	9	0	0	0	4
	도시환경위원회	82	10.04	34	34	0	0	0	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3	6.49	32	18	0	0	0	3
	보건복지위원회	50	6.12	22	19	0	0	0	9
	본회의	23	2.82	21	1	0	1	0	0
	안전행정위원회	86	10.53	54	26	0	0	0	6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67	8.20	15	37	1	2	0	12
	의회운영위원회	32	3.92	11	11	1	1	0	8
	정보 누락	2	0.24	0	2	0	0	0	0
	소계	817	100.00	439	265	7	4	0	102
9	건설교통위원회	128	9.76	53	46	1	1	0	27
	경제노동위원회	118	9.00	60	41	0	1	0	16
	교육위원회	190	14.49	131	35	0	0	0	24
	기획재정위원회	129	9.84	52	66	1	1	0	9
	농정해양위원회	57	4.35	47	8	0	0	0	2
	도시환경위원회	170	12.97	105	45	2	2	0	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2	6.25	55	21	0	3	0	3
	보건복지위원회	106	8.09	50	48	0	0	0	8
	본회의	59	4.50	59	0	0	0	0	0
	안전행정위원회	141	10.76	83	49	0	0	0	9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83	6.33	46	29	0	0	0	8
	의회운영위원회	48	3.66	17	17	0	0	0	14
	소계	1311	100.00	758	405	4	8	0	136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10	건설교통위원회	138	8.30	86	33	0	3	0	16
	경제노동위원회	133	8.00	94	25	0	0	0	14
	교육기획위원회	166	9.98	109	44	0	0	0	13
	교육행정위원회	132	7.94	75	46	0	0	0	11
	기획재정위원회	144	8.66	85	45	0	1	0	13
	농정해양위원회	74	4.45	54	16	0	0	0	4
	도시환경위원회	205	12.33	155	41	0	0	0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7	7.04	94	20	0	0	0	3
	보건복지위원회	169	10.16	122	41	0	0	0	6
	본회의	17	1.02	17	0	0	0	0	0
	안전행정위원회	174	10.46	116	43	1	0	0	14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116	6.98	76	30	0	0	0	10
	의회운영위원회	78	4.69	57	16	0	0	0	5
	소계	1663	100.00	1140	400	1	4	0	118
11	건설교통위원회	110	7.11	73	26	0	0	1	10
	경제노동위원회	115	7.43	91	21	0	0	0	3
	교육기획위원회	106	6.85	71	21	0	2	1	11
	교육행정위원회	168	10.86	102	41	1	2	1	21
	기획재정위원회	119	7.69	80	21	2	0	3	13
	농정해양위원회	117	7.56	92	19	0	0	1	5
	도시환경위원회	146	9.44	95	43	0	2	2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2	7.24	102	6	0	0	0	4
	미래과학협력위원회	62	4.01	36	20	0	4	0	2
	보건복지위원회	112	7.24	61	30	0	2	1	18
	안전행정위원회	148	9.57	114	26	0	0	1	7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118	7.63	64	29	0	0	2	23
	의회운영위원회	113	7.30	71	18	0	3	1	20
	혁신추진특별위원회	1	0.06	1	0	0	0	0	0
	소계	1547	100.00	1053	321	3	15	14	141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건설교통위원회	478	8.10	266	141	3	4	1	63
	경제노동위원회	473	8.01	309	119	4	1	3	37
	교육기획위원회	272	4.61	180	65	0	2	1	24
	교육위원회	398	6.74	283	64	2	0	0	49
	교육행정위원회	300	5.08	177	87	1	2	1	32
	기획재정위원회	596	10.10	314	225	4	2	3	48
	농정해양위원회	312	5.29	239	56	1	0	1	15
	도시환경위원회	669	11.33	428	186	3	4	3	4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02	6.81	308	76	1	3	0	14
	미래과학협력위원회	62	1.05	36	20	0	4	0	2
	보건복지위원회	437	7.40	255	138	0	2	1	41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81	1.37	47	31	0	0	0	3
	본회의	142	2.41	140	1	0	1	0	0
	안전행정위원회	574	9.72	382	148	4	2	1	37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84	6.51	201	125	1	2	2	53
	의회운영위원회	283	4.79	164	64	2	4	1	48
	정보 누락	39	0.66	29	8	1	1	0	0
	혁신추진특별위원회	1	0.02	1	0	0	0	0	0
	소계	5903	100.00	3759	1554	27	34	18	511

나.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강원도의회(2023년부터 특별자치도)는 제4대부터 제11대까지 조례안을 집계하고 있음

○ 일부 대수의 경우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전무한 특징이 있음

- 제4대~제8대 강원도의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조례를 주로 집행부만 제출했음을 의미

○ 전체 1,167건의 조례안 중 미처리 등으로 남은 안건은 32건(약 2.7%)이며, 정보 누락으로 인한 미처리 표기는 적은 편임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타 지역에 비해 의원 발의 활성화가 늦게 시작되었음

- 제4대~제8대에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없고 대부분 도지사나 교육감 발의였음
- 그러나 제8대부터 점차 의원 제안이 증가하여 8대에는 의원 발의가 약 20% 수준으로 나타났고, 제10대~제11대 들어 현저히 높아졌음

○ 전체 누적 통계로는 의원 발의 34.7%, 도지사 제출 약 44.0%로 의원 비중이 아직 절반 이하지만, 최근인 제11대만 보면 의원 제안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큼(제11대 의원 69.9%, 도지사 21.1%)

○ 한편, 제11대 소계 863건 중 수정가결이 242건으로 약 28% 수준인데, 이는 높은 수준의 수정률로, 강원도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에 대해 입법 과정을 통해 강력한 견제와 조정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 가능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23년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로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변화가 있었음

- 8대 이전에는 농림수산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등이 있었고, 이후 경제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등으로 재편되었음
- 조례안 소관위원회도 그에 맞춰 변경되었으며, 통계에 “경제산업위원회”, “경제통상위원회”가 모두 등장해 위원회 개칭 이력이 반영되어 있음

○ 특히, 농림수산위원회의 부상이 두드러지는데, 제9대 80건, 제10대 79건이었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이 제11대 들어 15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이는 기후 변화, 농촌 소멸, 스마트팜 지원 등 농어업 분야의 재정지원 수요 증가와 맞물리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농림 분야 조례는 보조금 지급이나 기금 조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추계 시 재원 조달 방안(국비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표 1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4대~제11대

(단위: 건수, %)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4	의원	0	0.00	0	0	0	0	0	0	0
	위원회	9	6.34	0	9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103	72.54	0	93	10	0	0	0	0
	교육감	27	19.01	0	25	2	0	0	0	0
	정보누락	3	2.11	0	2	1	0	0	0	0
	소계	142	100.00	0	129	13	0	0	0	0
5	의원	0	0.00	0	0	0	0	0	0	0
	위원회	10	3.73	0	9	1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214	79.85	0	180	33	1	0	0	0
	교육감	44	16.42	0	36	8	0	0	0	0
	정보누락	0	0.00	0	0	0	0	0	0	0
	소계	268	100.00	0	225	42	1	0	0	0
6	의원	0	0.00	0	0	0	0	0	0	0
	위원회	17	7.52	0	16	0	0	0	0	1
	의장	1	0.44	0	1	0	0	0	0	0
	도지사	162	71.68	0	145	15	0	1	0	1
	교육감	41	18.14	0	37	2	0	0	0	2
	정보누락	5	2.21	0	1	1	0	0	0	3
	소계	226	100.00	0	200	18	0	1	0	7
7	의원	0	0.00	0	0	0	0	0	0	0
	위원회	15	5.28	0	15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170	59.86	0	129	37	0	0	0	4
	교육감	51	17.96	0	48	3	0	0	0	0
	정보누락	48	16.90	0	31	10	0	0	0	7
	소계	284	100.00	0	223	50	0	0	0	11
8	의원	0	0.00	0	0	0	0	0	0	0
	위원회	8	2.07	0	8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180	46.63	0	142	34	0	1	0	3
	교육감	97	25.13	0	80	11	0	0	0	6
	정보누락	101	26.17	0	61	31	0	0	0	9
	소계	386	100.00	0	291	76	0	1	0	18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9	의원	215	39.52	0	163	39	3	0	1	9
	위원회	15	2.76	0	15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263	48.35	0	200	46	10	0	4	3
	교육감	51	9.38	0	39	8	1	0	1	2
	정보누락	0	0.00	0	0	0	0	0	0	0
	소계	544	100.00	0	417	93	14	0	6	14
10	의원	349	53.94	56	190	88	2	1	7	5
	위원회	15	2.32	0	15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203	31.38	33	115	49	3	0	0	3
	교육감	56	8.66	11	40	5	0	0	0	0
	정보누락	24	3.71	23	1	0	0	0	0	0
	소계	647	100.00	123	361	142	5	1	7	8
11	의원	603	69.87	0	382	186	9	0	8	18
	위원회	29	3.36	0	28	1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182	21.09	0	128	49	4	0	1	0
	교육감	49	5.68	0	42	6	1	0	0	0
	정보누락	0	0.00	0	0	0	0	0	0	0
	소계	863	100.00	0	580	242	14	0	9	18
총계	의원	1167	34.73	56	735	313	14	1	16	32
	위원회	118	3.51	0	115	2	0	0	0	1
	의장	1	0.03	0	1	0	0	0	0	0
	도지사	1477	43.96	33	1132	273	18	2	5	14
	교육감	416	12.38	11	347	45	2	0	1	10
	정보누락	181	5.39	23	96	43	0	0	0	19
	소계	3360	100.00	123	2426	676	34	3	22	76

[표 2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4대~제11대

(단위: 건수,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계류 등
4	관광건설위원회	1	0.70	0	1	0	0	0	0	0
	교육사회위원회	98	69.01	0	87	11	0	0	0	0
	기획행정위원회	2	1.41	0	2	0	0	0	0	0
	내무위원회	11	7.75	0	11	0	0	0	0	0
	본회의	3	2.11	0	3	0	0	0	0	0
	산업위원회	17	11.97	0	16	1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0	7.04	0	9	1	0	0	0	0
	소계	142	100.00	0	129	13	0	0	0	0
5	관광건설위원회	46	17.16	0	39	7	0	0	0	0
	교육사회위원회	62	23.13	0	49	13	0	0	0	0
	기획행정위원회	116	43.28	0	104	11	1	0	0	0
	산업경제위원회	36	13.43	0	25	11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8	2.99	0	8	0	0	0	0	0
	소계	268	100.00	0	225	42	1	0	0	0
6	관광건설위원회	29	12.83	0	21	5	0	0	0	3
	교육사회위원회	52	23.01	0	43	5	0	1	0	3
	기획행정위원회	100	44.25	0	96	4	0	0	0	0
	산업경제위원회	29	12.83	0	25	4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6	7.08	0	15	0	0	0	0	1
	소계	226	100.00	0	200	18	0	1	0	7
7	관광건설위원회	50	17.61	0	29	19	0	0	0	2
	교육사회위원회	83	29.23	0	67	14	0	0	0	2
	기획행정위원회	107	37.68	0	94	8	0	0	0	5
	본회의	3	1.06	0	2	1	0	0	0	0
	산업경제위원회	34	11.97	0	24	8	0	0	0	2
	의회운영위원회	7	2.46	0	7	0	0	0	0	0
	소계	284	100.00	0	223	50	0	0	0	11
8	경제건설위원회	60	15.54	0	46	10	0	0	0	4
	교육위원회	104	26.94	0	82	15	0	0	0	7
	기획행정위원회	114	29.53	0	89	22	0	1	0	2
	농림수산위원회	32	8.29	0	13	18	0	0	0	1
	사회문화위원회	66	17.10	0	52	11	0	0	0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0.26	0	1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8	2.07	0	8	0	0	0	0	0
	정보 누락	1	0.26	0	0	0	0	0	0	1
	소계	386	100.00	0	291	76	0	1	0	18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계류 등
9	경제건설위원회	111	20.40	0	97	11	0	0	1	2
	교육위원회	73	13.42	0	55	12	2	0	1	3
	기획행정위원회	174	31.99	0	136	28	4	0	2	4
	농림수산위원회	80	14.71	0	52	21	4	0	2	1
	사회문화위원회	89	16.36	0	60	21	4	0	0	4
	의회운영위원회	17	3.13	0	17	0	0	0	0	0
	소계	544	100.00	0	417	93	14	0	6	14
10	경제건설위원회	132	20.40	22	88	20	2	0	0	0
	교육위원회	114	17.62	17	73	19	0	1	1	3
	기획행정위원회	167	25.81	31	80	48	2	0	3	3
	농림수산위원회	79	12.21	13	38	23	0	0	3	2
	사회문화위원회	125	19.32	24	68	32	1	0	0	0
	의회운영위원회	30	4.64	16	14	0	0	0	0	0
	소계	647	100.00	123	361	142	5	1	7	8
11	경제산업위원회	74	8.57	0	50	20	2	0	2	0
	경제통상위원회	2	0.23	0	1	1	0	0	0	0
	교육위원회	165	19.12	0	118	38	3	0	0	6
	기획행정위원회	139	16.11	0	97	39	2	0	1	0
	농림수산위원회	159	18.42	0	131	26	0	0	1	1
	사회문화위원회	155	17.96	0	73	71	5	0	2	4
	안전건설위원회	126	14.60	0	77	40	2	0	3	4
	의회운영위원회	43	4.98	0	33	7	0	0	0	3
	소계	863	100.00	0	580	242	14	0	9	18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경제건설위원회	303	9.02	22	231	41	2	0	1	6
	경제산업위원회	74	2.20	0	50	20	2	0	2	0
	경제통상위원회	2	0.06	0	1	1	0	0	0	0
	관광건설위원회	126	3.75	0	90	31	0	0	0	5
	교육사회위원회	295	8.78	0	246	43	0	1	0	5
	교육위원회	456	13.57	17	328	84	5	1	2	19
	기획행정위원회	919	27.35	31	698	160	9	1	6	14
	내무위원회	11	0.33	0	11	0	0	0	0	0
	농림수산위원회	350	10.42	13	234	88	4	0	6	5
	본회의	6	0.18	0	5	1	0	0	0	0
	사회문화위원회	435	12.95	24	253	135	10	0	2	11
	산업경제위원회	99	2.95	0	74	23	0	0	0	2
	산업위원회	17	0.51	0	16	1	0	0	0	0
	안전건설위원회	126	3.75	0	77	40	2	0	3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0.03	0	1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39	4.14	16	111	8	0	0	0	4
	정보 누락	1	0.03	0	0	0	0	0	0	1
	소계	3360	100.00	123	2426	676	34	3	22	76

다. 충청북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충청북도의회는 제4대부터 제12대까지 조례안 정보를 제공

– 충청북도의회는 기록 누락이 거의 없이 자료가 관리되고 있으나, 2011년 이전 제1대~제3대의 조례안은 통계에서 제외되었음

○ 전체 조례안 중 미처리 등은 57건으로 적은 편임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충청북도의회는 집행부 주도 입법에서 의원 주도 입법으로 완만하게 전환되었음

– 제4대부터 제6대까지는 도지사 제출이 압도적이었고 의원 발의는 한 자릿수 비율에 머물렀으나, 제7대 이후 의원 발의가 점차 증가하여 현재 제12대에는 69.1%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충청북도의회는 상임위원회 구조와 명칭이 여러 번 개편된 특징이 있음

– 위원회 변경 빈도가 잦았음에도, 조례안 데이터에는 각 명칭별 소관 건수가 명확히 집계되어 있음

○ 충청북도의 경우 행정문화위원회(또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경제/경제건설위원회의 소관 조례안이 많았고, 교육위원회도 다수 나타났음

○ 각 위원회의 임기만료 폐기나 미처리 건수가 고르게 낮아, 위원회별로 맡은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는 완결성이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특별위원회는 충북에서 조례안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

[표 21] 충청북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4대~제12대

(단위: 건수, %)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4	의원	8	2.74	5	2	1	0	0	0
	위원회	38	13.01	37	1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97	67.47	170	16	9	1	0	1
	교육감	49	16.78	44	5	0	0	0	0
	소계	292	100.00	256	24	10	1	0	1
5	의원	1	0.50	0	1	0	0	0	0
	위원회	12	5.94	12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55	76.73	125	22	7	1	0	0
	교육감	34	16.83	31	3	0	0	0	0
	소계	202	100.00	168	26	7	1	0	0
6	의원	1	0.31	0	0	0	0	1	0
	위원회	76	23.82	76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202	63.32	156	40	1	1	4	0
	교육감	40	12.54	34	6	0	0	0	0
	소계	319	100.00	266	46	1	1	5	0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7	의원	26	11.02	20	4	0	2	0	0
	위원회	10	4.24	9	0	0	0	1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54	65.25	89	61	1	0	3	0
	교육감	46	19.49	32	13	0	1	0	0
	소계	236	100.00	150	78	1	3	4	0
8	의원	115	33.63	104	9	0	1	1	0
	위원회	17	4.97	17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56	45.61	117	32	2	3	2	0
	교육감	54	15.79	45	7	0	2	0	0
	소계	342	100.00	283	48	2	6	3	0
9	의원	198	46.48	188	5	0	3	2	0
	위원회	11	2.58	10	0	0	0	1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54	36.15	120	32	0	1	1	0
	교육감	63	14.79	58	3	1	1	0	0
	소계	426	100.00	376	40	1	5	4	0
10	의원	244	48.70	228	10	0	2	4	0
	위원회	13	2.59	13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98	39.52	152	35	1	8	2	0
	교육감	46	9.18	40	2	4	0	0	0
	소계	501	100.00	433	47	5	10	6	0
11	의원	384	60.66	361	14	0	0	0	9
	위원회	25	3.95	25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71	27.01	147	16	0	0	0	8
	교육감	53	8.37	44	8	0	0	0	1
	소계	633	100.00	577	38	0	0	0	18
12	의원	546	69.11	519	9	1	0	0	17
	위원회	39	4.94	39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71	21.65	142	12	0	0	0	17
	교육감	34	4.30	28	2	0	0	0	4
	소계	790	100.00	728	23	1	0	0	38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의원	1523	40.71	1425	54	2	8	8	26
	위원회	241	6.44	238	1	0	0	2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558	41.65	1218	266	21	15	12	26
	교육감	419	11.20	356	49	5	4	0	5
	소계	3741	100.00	3237	370	28	27	22	57

[표 22] 충청북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4대~제12대

(단위: 건수,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4	건설위원회	16	5.48	16	0	0	0	0	0
	교육사회위원회	26	8.90	22	4	0	0	0	0
	기획경제위원회	17	5.82	15	2	0	0	0	0
	내무위원회	123	42.12	108	12	1	1	0	1
	농림수산위원회	7	2.40	7	0	0	0	0	0
	문교사회위원회	42	14.38	39	3	0	0	0	0
	산업위원회	15	5.14	11	2	2	0	0	0
	운영위원회	17	5.82	16	1	0	0	0	0
	정보 누락	4	1.37	4	0	0	0	0	0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5	8.56	18	0	7	0	0	0
	소계	292	100.00	256	24	10	1	0	1
5	건설교통위원회	12	5.94	9	1	2	0	0	0
	교육사회위원회	56	27.72	49	7	0	0	0	0
	기획경제위원회	47	23.27	35	7	4	1	0	0
	내무위원회	68	33.66	57	10	1	0	0	0
	농림수산위원회	8	3.96	7	1	0	0	0	0
	운영위원회	5	2.48	5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6	2.97	6	0	0	0	0	0
	소계	202	100.00	168	26	7	1	0	0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6	관광건설위원회	37	11.60	32	4	0	0	1	0
	교육사회위원회	64	20.06	51	12	0	0	1	0
	기획내무위원회	6	1.88	4	2	0	0	0	0
	기획행정위원회	110	34.48	88	18	1	1	2	0
	농업경제위원회	1	0.31	1	0	0	0	0	0
	산업경제위원회	29	9.09	18	10	0	0	1	0
	의회운영위원회	13	4.08	13	0	0	0	0	0
	조례정비특별위원회	59	18.50	59	0	0	0	0	0
	소계	319	100.00	266	46	1	1	5	0
7	관광건설위원회	30	12.71	18	12	0	0	0	0
	교육사회위원회	70	29.66	45	23	1	1	0	0
	기획행정위원회	103	43.64	63	35	0	2	3	0
	산업경제위원회	19	8.05	11	8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3	5.51	13	0	0	0	0	0
	정보 누락	1	0.42	0	0	0	0	1	0
	소계	236	100.00	150	78	1	3	4	0
8	건설문화위원회	48	14.04	40	7	0	0	1	0
	관광건설위원회	6	1.75	3	3	0	0	0	0
	교육사회위원회	78	22.81	67	9	0	2	0	0
	기획행정위원회	16	4.68	11	4	1	0	0	0
	산업경제위원회	49	14.33	39	8	1	0	1	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0.29	1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22	6.43	21	1	0	0	0	0
	정보 누락	2	0.58	0	2	0	0	0	0
	행정소방위원회	71	20.76	66	2	0	2	1	0
	행정자치위원회	49	14.33	35	12	0	2	0	0
	소계	342	100.00	283	48	2	6	3	0
9	건설소방위원회	57	13.38	50	7	0	0	0	0
	교육위원회	82	19.25	76	4	1	1	0	0
	산업경제위원회	61	14.32	58	2	0	0	1	0
	의회운영위원회	12	2.82	11	0	0	0	1	0
	정보 누락	9	2.11	8	0	0	0	1	0
	정책복지위원회	64	15.02	51	12	0	1	0	0
	행정문화위원회	141	33.10	122	15	0	3	1	0
	소계	426	100.00	376	40	1	5	4	0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10	건설소방위원회	66	13.17	61	2	0	2	1	0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	0.40	1	0	0	1	0	0
	교육위원회	90	17.96	82	3	4	1	0	0
	산업경제위원회	81	16.17	78	2	0	1	0	0
	의회운영위원회	14	2.79	13	1	0	0	0	0
	정보 누락	7	1.40	7	0	0	0	0	0
	정책복지위원회	86	17.17	66	17	0	3	0	0
	행정문화위원회	155	30.94	125	22	1	2	5	0
	소계	501	100.00	433	47	5	10	6	0
11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7	16.90	91	4	0	0	0	12
	교육위원회	149	23.54	134	13	0	0	0	2
	산업경제위원회	85	13.43	79	5	0	0	0	1
	의회운영위원회	28	4.42	28	0	0	0	0	0
	정보 누락	3	0.47	3	0	0	0	0	0
	정책복지위원회	109	17.22	102	6	0	0	0	1
	행정문화위원회	152	24.01	140	10	0	0	0	2
	소계	633	100.00	577	38	0	0	0	18
12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22	15.44	119	2	1	0	0	0
	교육위원회	131	16.58	125	5	0	0	0	1
	산업경제위원회	133	16.84	115	3	0	0	0	15
	의회운영위원회	37	4.68	36	1	0	0	0	0
	정보 누락	26	3.29	8	0	0	0	0	18
	정책복지위원회	159	20.13	148	10	0	0	0	1
	행정문화위원회	182	23.04	177	2	0	0	0	3
	전체	790	100.00	728	23	1	0	0	38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건설교통위원회	12	0.32	9	1	2	0	0	0
	건설문화위원회	48	1.28	40	7	0	0	1	0
	건설소방위원회	123	3.29	111	9	0	2	1	0
	건설위원회	16	0.43	16	0	0	0	0	0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29	6.12	210	6	1	0	0	12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	0.05	1	0	0	1	0	0
	관광건설위원회	73	1.95	53	19	0	0	1	0
	교육사회위원회	294	7.86	234	55	1	3	1	0
	교육위원회	452	12.08	417	25	5	2	0	3
	기획경제위원회	64	1.71	50	9	4	1	0	0
	기획내무위원회	6	0.16	4	2	0	0	0	0
	기획행정위원회	229	6.12	162	57	2	3	5	0
	내무위원회	191	5.11	165	22	2	1	0	1
	농림수산위원회	15	0.40	14	1	0	0	0	0
	농업경제위원회	1	0.03	1	0	0	0	0	0
	문교사회위원회	42	1.12	39	3	0	0	0	0
	산업경제위원회	457	12.22	398	38	1	1	3	16
	산업위원회	15	0.40	11	2	2	0	0	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0.03	1	0	0	0	0	0
	운영위원회	22	0.59	21	1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45	3.88	141	3	0	0	1	0
	정보 누락	52	1.39	30	2	0	0	2	18
	정책복지위원회	418	11.17	367	45	0	4	0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84	2.25	77	0	7	0	0	0
	행정문화위원회	630	16.84	564	49	1	5	6	5
	행정소방위원회	71	1.90	66	2	0	2	1	0
	행정자치위원회	49	1.31	35	12	0	2	0	0
	소계	3741	100.00	3237	370	28	27	22	57

라. 충청남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충청남도의회의 조례안 정보 통계는 제4대부터 제12대까지 포함

○ 충청남도의회는 조례안 정보에서 제안자나 소관위원회 정보에 대한 누락이 없고, 총 3,740여 건의 조례안 중 미처리 등 사례는 96건 수준으로 적은 편임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충남도의회는 최근 들어 의원 입법이 크게 강화되었음

- 제7대까지만 해도 의원 발의 비율이 10% 미만에 머물렀으나, 제11대에는 의원 발의 73.3%, 도지사 제출 15.5%로 역전되었고, 제12대 현재도 의원 약 72%, 도지사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누적 통계로는 의원 발의 41.6%, 도지사 제출 39.5%로 입법부 비중이 근소하게 높으며, 현시점에서는 의원주도 입법이 정착된 상태로 평가할 수 있음
- 부결된 조례안은 전체의 0.2%(8건)로 미미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충청남도의회는 회기별로 상임위원회 명칭이 여러 번 변경되었음

- 제4대에는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등이 있었고, 이후 행정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등으로 변화를 거쳤음

○ 충청남도의회는 경제·건설 분야 특별위원회를 두기도 했으나 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크지 않았음

[표 23] 충청남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4대~제12대

(단위: 건수, %)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료 폐기	철회	미처리 등
4	의원	9	2.56	9	0	0	0	0	0	0
	위원회	42	11.97	41	0	0	0	0	1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249	70.94	207	34	1	3	0	3	1
	교육감	51	14.53	44	5	0	0	0	1	1
	소계	351	100.00	301	39	1	3	0	5	2
5	의원	3	1.42	2	0	0	1	0	0	0
	위원회	10	4.74	10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167	79.15	129	33	0	2	0	3	0
	교육감	31	14.69	21	6	0	4	0	0	0
	소계	211	100.00	162	39	0	7	0	3	0
6	의원	11	3.85	9	0	0	2	0	0	0
	위원회	21	7.34	21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205	71.68	161	41	0	2	0	1	0
	교육감	49	17.13	42	7	0	0	0	0	0
	소계	286	100.00	233	48	0	4	0	1	0
7	의원	16	7.51	11	3	0	2	0	0	0
	위원회	22	10.33	22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131	61.50	112	18	0	1	0	0	0
	교육감	44	20.66	42	2	0	0	0	0	0
	소계	213	100.00	187	23	0	3	0	0	0
8	의원	63	19.44	50	10	0	2	0	1	0
	위원회	31	9.57	30	0	0	1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183	56.48	150	27	0	3	0	2	1
	교육감	47	14.51	38	8	0	1	0	0	0
	소계	324	100.00	268	45	0	7	0	3	1
9	의원	99	23.86	76	18	0	4	0	0	1
	위원회	74	17.83	74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169	40.72	123	40	1	0	0	0	5
	교육감	73	17.59	66	5	2	0	0	0	0
	소계	415	100.00	339	63	3	4	0	0	6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료 폐기	철회	미처리 등
10	의원	177	37.42	158	12	0	0	7	0	0
	위원회	19	4.02	19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225	47.57	164	48	0	1	4	0	8
	교육감	52	10.99	38	9	1	0	0	0	4
	소계	473	100.00	379	69	1	1	11	0	12
11	의원	672	73.36	515	126	0	3	18	2	8
	위원회	42	4.59	40	1	0	0	1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142	15.50	108	33	0	1	0	0	0
	교육감	60	6.55	44	14	0	0	1	0	1
	소계	916	100.00	707	174	0	4	20	2	9
12	의원	652	72.28	530	58	1	8	0	1	54
	위원회	54	5.99	53	0	0	0	0	0	1
	의장	3	0.33	1	0	1	0	0	0	1
	도지사	145	16.08	116	19	1	3	0	1	5
	교육감	48	5.32	43	0	0	0	0	0	5
	소계	902	100.00	743	77	3	11	0	2	66
총계	의원	1702	41.60	1360	227	1	22	25	4	63
	위원회	315	7.70	310	1	0	1	1	1	1
	의장	3	0.07	1	0	1	0	0	0	1
	도지사	1616	39.50	1270	293	3	16	4	10	20
	교육감	455	11.12	378	56	3	5	1	1	11
	소계	4091	100.00	3319	577	8	44	31	16	96

[표 24] 충청남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4대~제12대

(단위: 건수,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4	건설위원회	20	5.70	15	4	0	1	0	0	0
	교육사회위원회	68	19.37	55	11	0	0	0	1	1
	기획경제위원회	26	7.41	22	4	0	0	0	0	0
	내무위원회	150	42.74	135	11	1	0	0	2	1
	농림수산위원회	16	4.56	10	5	0	1	0	0	0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1	0.28	0	0	0	1	0	0	0
	문교사회위원회	9	2.56	8	1	0	0	0	0	0
	본회의	3	0.85	3	0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6	4.56	16	0	0	0	0	0	0
	조례정비특별위원회	32	9.12	31	0	0	0	0	1	0
	지역경제위원회	10	2.85	6	3	0	0	0	1	0
	소계	351	100.00	301	39	1	3	0	5	2
5	건설교통위원회	7	3.32	3	4	0	0	0	0	0
	건설위원회	11	5.21	9	1	0	1	0	0	0
	교육사회위원회	47	22.27	27	13	0	5	0	2	0
	기획경제위원회	20	9.48	17	3	0	0	0	0	0
	내무위원회	98	46.45	82	14	0	1	0	1	0
	농림수산위원회	15	7.11	13	2	0	0	0	0	0
	본회의	12	5.69	10	2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	0.47	1	0	0	0	0	0	0
	소계	211	100.00	162	39	0	7	0	3	0
6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	2	0.70	2	0	0	0	0	0	0
	건설소방위원회	27	9.44	26	1	0	0	0	0	0
	교육사회위원회	85	29.72	73	12	0	0	0	0	0
	내무위원회	10	3.50	6	4	0	0	0	0	0
	농수산경제위원회	25	8.74	15	8	0	2	0	0	0
	본회의	23	8.04	23	0	0	0	0	0	0
	산업위원회	6	2.10	6	0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2	0.70	2	0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106	37.06	80	23	0	2	0	1	0
	소계	286	100.00	233	48	0	4	0	1	0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7	건설소방위원회	21	9.86	17	4	0	0	0	0	0
	교육사회위원회	60	28.17	52	8	0	0	0	0	0
	농수산경제위원회	17	7.98	14	3	0	0	0	0	0
	본회의	13	6.10	13	0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5	2.35	5	0	0	0	0	0	0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3	1.41	3	0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94	44.13	83	8	0	3	0	0	0
	소계	213	100.00	187	23	0	3	0	0	0
8	건설소방위원회	46	14.20	40	5	0	0	0	1	0
	교육사회위원회	82	25.31	65	16	0	1	0	0	0
	농수산경제위원회	37	11.42	32	4	0	1	0	0	0
	본회의	26	8.02	25	0	0	1	0	0	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0.31	1	0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5	1.54	5	0	0	0	0	0	0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2	0.62	1	1	0	0	0	0	0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3	0.93	2	1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122	37.65	97	18	0	4	0	2	1
	소계	324	100.00	268	45	0	7	0	3	1
9	건설소방위원회	36	8.67	23	10	0	2	0	0	1
	교육위원회	84	20.24	74	8	2	0	0	0	0
	농수산경제위원회	78	18.80	73	5	0	0	0	0	0
	문화복지위원회	81	19.52	58	18	0	2	0	0	3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1	0.24	1	0	0	0	0	0	0
	윤리특별위원회	1	0.24	1	0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25	6.02	23	1	0	0	0	0	1
	충청남도내포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1	0.24	0	1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108	26.02	86	20	1	0	0	0	1
	소계	415	100.00	339	63	3	4	0	0	6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10	건설해양소방위원회	12	2.54	9	2	0	0	0	0	1
	교육위원회	99	20.93	83	11	1	0	0	0	4
	농업경제환경위원회	77	16.28	66	9	0	0	2	0	0
	문화복지위원회	76	16.07	51	19	0	0	2	0	4
	본회의	19	4.02	19	0	0	0	0	0	0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62	13.11	47	12	0	0	3	0	0
	의회운영위원회	1	0.21	0	0	0	0	1	0	0
	행정자치위원회	127	26.85	104	16	0	1	3	0	3
	소계	473	100.00	379	69	1	1	11	0	12
11	교육위원회	146	15.94	110	28	0	0	6	0	2
	기획경제위원회	90	9.83	61	26	0	0	3	0	0
	농수산해양위원회	56	6.11	49	7	0	0	0	0	0
	농업경제환경위원회	97	10.59	71	19	0	1	2	2	2
	문화복지위원회	84	9.17	72	7	0	2	2	0	1
	복지환경위원회	76	8.30	55	21	0	0	0	0	0
	본회의	43	4.69	40	1	0	0	1	0	1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66	7.21	55	11	0	0	0	0	0
	안전건설소방위원회	56	6.11	40	10	0	0	4	0	2
	의회운영위원회	8	0.87	8	0	0	0	0	0	0
	의회운영행정사무감사	1	0.11	1	0	0	0	0	0	0
	행정문화위원회	102	11.14	83	18	0	0	1	0	0
	행정자치위원회	91	9.93	62	26	0	1	1	0	1
	소계	916	100.00	707	174	0	4	20	2	9
12	건설소방위원회	96	10.64	77	12	0	4	0	0	3
	교육위원회	187	20.73	159	3	1	0	0	0	24
	기획경제위원회	106	11.75	82	15	1	4	0	0	4
	농수산해양위원회	97	10.75	79	12	0	0	0	0	6
	보건복지환경위원회	166	18.40	137	14	0	1	0	1	13
	본회의	55	6.10	54	0	0	0	0	0	1
	의회운영위원회	5	0.55	3	2	0	0	0	0	0
	행정문화위원회	190	21.06	152	19	1	2	0	1	15
	소계	902	100.00	743	77	3	11	0	2	66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총계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	2	0.05	2	0	0	0	0	0	0
	건설교통위원회	7	0.17	3	4	0	0	0	0	0
	건설소방위원회	226	5.52	183	32	0	6	0	1	4
	건설위원회	31	0.76	24	5	0	2	0	0	0
	건설해양소방위원회	12	0.29	9	2	0	0	0	0	1
	교육사회위원회	342	8.36	272	60	0	6	0	3	1
	교육위원회	516	12.61	426	50	4	0	6	0	30
	기획경제위원회	242	5.92	182	48	1	4	3	0	4
	내무위원회	258	6.31	223	29	1	1	0	3	1
	농림수산위원회	31	0.76	23	7	0	1	0	0	0
	농수산경제위원회	157	3.84	134	20	0	3	0	0	0
	농수산해양위원회	153	3.74	128	19	0	0	0	0	6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74	4.25	137	28	0	1	4	2	2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1	0.02	0	0	0	1	0	0	0
	문교사회위원회	9	0.22	8	1	0	0	0	0	0
	문화복지위원회	241	5.89	181	44	0	4	4	0	8
	보건복지환경위원회	166	4.06	137	14	0	1	0	1	13
	복지환경위원회	76	1.86	55	21	0	0	0	0	0
	본회의	194	4.74	187	3	0	1	1	0	2
	산업위원회	6	0.15	6	0	0	0	0	0	0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1	0.02	1	0	0	0	0	0	0
	안전건설소방위원회	56	1.37	40	10	0	0	4	0	2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28	3.13	102	23	0	0	3	0	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0.02	1	0	0	0	0	0	0
	윤리특별위원회	1	0.02	1	0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68	1.66	63	3	0	0	1	0	1
	의회운영행정사무감사	1	0.02	1	0	0	0	0	0	0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2	0.05	1	1	0	0	0	0	0
	조례정비특별위원회	32	0.78	31	0	0	0	0	1	0
	지역경제위원회	10	0.24	6	3	0	0	0	1	0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3	0.07	3	0	0	0	0	0	0
	충청남도내포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1	0.02	0	1	0	0	0	0	0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3	0.07	2	1	0	0	0	0	0
	행정문화위원회	292	7.14	235	37	1	2	1	1	15
	행정자치위원회	648	15.84	512	111	1	11	4	3	6
	소계	4091	100.00	3319	577	8	44	31	16	96

마.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ㅇ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제4대부터 제12대까지의 조례안을 포함하고 있음
- ㅇ 처리결과 기록은 의안정보에서는 “폐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미처리 등”으로 집계하였음
- ㅇ 제안자가 “소방본부장”, “농림수산국장”, “농촌진흥청장”, “도립국악원장”,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인 경우는 “도지사”로 분류
- ㅇ 제4대와 제5대에서는 소관위원회 정보가 거의 누락 되어 있음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ㅇ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집행부와 의원 간 입법주도권 변화가 뚜렷함
  - − 제4대~제6대에는 도지사 제출이 절대다수였으나, 7대부터 의원 발의가 꾸준히 늘어 9대에는 약 30%, 10대부터는 절대다수로 나타나고 있음
  - − 누적 통계상 의원 발의는 47.4%, 도지사 발의 35.7% 수준이지만, 최근 12대에서는 의원 발의가 전체의 77.4% 수준을 보여 사실상 의원입법 중심으로 전환되었음
- ㅇ 총계 수준에서 볼 때, 부결은 4건, 철회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ㅇ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대수별로 상임위원회 개편이 일부 있었고, 특히 경제산업경제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 등 경제분야 위원회의 통합·분리가 있었으며, 조례안 심사에 있어 작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왔음
- ㅇ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도 많은 조례안을 처리하였음

[표 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4대~제12대

(단위: 건수, %)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철회	미처리 등
4	의원	23	10.55	0	0	0	0	0	23
	위원회	49	22.48	0	0	0	0	0	49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12	51.38	0	0	0	0	0	112
	교육감	26	11.93	0	0	0	0	0	26
	정보누락	8	3.67	0	0	0	0	0	8
	소계	218	100.00	0	0	0	0	0	218
5	의원	28	13.21	0	0	0	0	0	28
	위원회	5	2.36	0	0	0	0	0	5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27	59.91	0	0	0	0	0	127
	교육감	44	20.75	0	0	0	0	0	44
	정보누락	8	3.77	0	0	0	0	0	8
	소계	212	100.00	0	0	0	0	0	212
6	의원	4	1.54	0	2	2	0	0	0
	위원회	18	6.95	0	18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97	76.06	0	135	60	0	0	2
	교육감	40	15.44	0	31	9	0	0	0
	정보누락	0	0.00	0	0	0	0	0	0
	소계	259	100.00	0	186	71	0	0	2
7	의원	3	1.69	0	2	1	0	0	0
	위원회	60	33.90	0	59	1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87	49.15	0	67	20	0	0	0
	교육감	27	15.25	0	26	1	0	0	0
	정보누락	0	0.00	0	0	0	0	0	0
	소계	177	100.00	0	154	23	0	0	0
8	의원	45	22.06	0	35	8	0	0	2
	위원회	7	3.43	0	7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27	62.25	0	77	37	0	4	9
	교육감	25	12.25	0	21	3	0	0	1
	정보누락	0	0.00	0	0	0	0	0	0
	소계	204	100.00	0	140	48	0	4	12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철회	미처리 등
9	의원	85	30.69	0	49	29	0	0	7
	위원회	37	13.36	0	37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12	40.43	0	82	29	0	0	1
	교육감	43	15.52	0	27	6	3	0	7
	정부부처	0	0.00	0	0	0	0	0	0
	소계	277	100.00	0	195	64	3	0	15
10	의원	390	58.91	0	313	54	0	0	23
	위원회	1	0.15	0	1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213	32.18	0	163	41	1	0	8
	교육감	58	8.76	0	52	6	0	0	0
	정부부처	0	0.00	0	0	0	0	0	0
	소계	662	100.00	0	529	101	1	0	31
11	의원	401	66.17	0	368	0	0	0	33
	위원회	10	1.65	0	1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59	26.24	0	149	0	0	0	10
	교육감	36	5.94	0	34	0	0	0	2
	정부부처	0	0.00	0	0	0	0	0	0
	소계	606	100.00	0	561	0	0	0	45
12	의원	675	77.41	453	198	0	0	0	24
	위원회	16	1.83	13	3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09	12.50	66	36	0	0	0	7
	교육감	72	8.26	37	29	0	0	0	6
	정부부처	0	0.00	0	0	0	0	0	0
	소계	872	100.00	569	266	0	0	0	37
총계	의원	1654	47.43	453	967	94	0	0	140
	위원회	203	5.82	13	135	1	0	0	54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243	35.65	66	709	187	1	4	276
	교육감	371	10.64	37	220	25	3	0	86
	정부부처	16	0.46	0	0	0	0	0	16
	소계	3487	100.00	569	2031	307	4	4	572

[표 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4대~제12대

(단위: 건수,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철회	미처리 등
4	정보 누락	218	100.00	0	0	0	0	0	218
	전체	218	100.00	0	0	0	0	0	218
5	운영위원회	1	0.47	0	0	0	0	0	1
	정보 누락	211	99.53	0	0	0	0	0	211
	소계	212	100.00	0	0	0	0	0	212
6	교육복지위원회	59	22.78	0	40	18	0	0	1
	농산업경제위원회	42	16.22	0	31	10	0	0	1
	문화관광건설위원회	17	6.56	0	12	5	0	0	0
	문화관광위원회	38	14.67	0	24	14	0	0	0
	운영위원회	11	4.25	0	11	0	0	0	0
	정보 누락	6	2.32	0	6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86	33.20	0	62	24	0	0	0
	소계	259	100.00	0	186	71	0	0	2
7	교육복지위원회	40	22.60	0	38	2	0	0	0
	농산업경제위원회	12	6.78	0	12	0	0	0	0
	문화관광위원회	5	2.82	0	2	3	0	0	0
	문화관광건설위원회	15	8.47	0	2	13	0	0	0
	운영위원회	6	3.39	0	5	1	0	0	0
	정보 누락	56	31.64	0	55	1	0	0	0
	행정자치위원회	43	24.29	0	40	3	0	0	0
	소계	177	100.00	0	154	23	0	0	0
8	교육복지위원회	56	27.45	0	46	9	0	0	1
	농산업경제위원회	23	11.27	0	13	8	0	0	2
	문화관광건설위원회	37	18.14	0	17	19	0	1	0
	운영위원회	1	0.49	0	1	0	0	0	0
	정보 누락	9	4.41	0	9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78	38.24	0	54	12	0	3	9
	소계	204	100.00	0	140	48	0	4	12
9	교육위원회	56	20.22	0	35	13	3	0	5
	농산업경제위원회	28	10.11	0	19	8	0	0	1
	문화관광건설위원회	36	13.00	0	19	16	0	0	1
	운영위원회	2	0.72	0	2	0	0	0	0
	정보 누락	41	14.80	0	35	0	0	0	6
	행정자치위원회	71	25.63	0	57	14	0	0	0
	환경복지위원회	43	15.52	0	28	13	0	0	2
	소계	277	100.00	0	195	64	3	0	15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철회	미처리 등
10	교육복지위원회	2	0.30	0	2	0	0	0	0
	교육위원회	125	18.88	0	104	20	0	0	1
	농산업경제위원회	88	13.29	0	63	19	0	0	6
	문화건설안전위원회	95	14.35	0	74	16	0	0	5
	문화관광건설위원회	21	3.17	0	15	6	0	0	0
	운영위원회	32	4.83	0	30	0	0	0	2
	정보 누락	10	1.51	0	5	0	0	0	5
	행정자치위원회	167	25.23	0	142	17	1	0	7
	환경복지위원회	122	18.43	0	94	23	0	0	5
	소계	662	100.00	0	529	101	1	0	31
11	교육위원회	110	18.15	0	98	0	0	0	12
	농산업경제위원회	100	16.50	0	94	0	0	0	6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11	18.32	0	107	0	0	0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0.33	0	2	0	0	0	0
	운영위원회	20	3.30	0	20	0	0	0	0
	정보 누락	14	2.31	0	11	0	0	0	3
	행정자치위원회	140	23.10	0	125	0	0	0	15
	환경복지위원회	109	17.99	0	104	0	0	0	5
	소계	606	100.00	0	561	0	0	0	45
12	경제산업건설위원회	85	9.75	82	0	0	0	0	3
	교육위원회	188	21.56	120	59	0	0	0	9
	기획행정위원회	80	9.17	78	0	0	0	0	2
	농산업경제위원회	74	8.49	30	40	0	0	0	4
	농업복지환경위원회	85	9.75	83	0	0	0	0	2
	문화건설안전위원회	61	7.00	24	37	0	0	0	0
	문화관광건설위원회	4	0.46	4	0	0	0	0	0
	문화안전소방위원회	52	5.96	49	0	0	0	0	3
	운영위원회	15	1.72	4	11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9	1.03	9	0	0	0	0	0
	정보 누락	12	1.38	9	3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104	11.93	34	65	0	0	0	5
	환경복지위원회	103	11.81	43	51	0	0	0	9
	소계	872	100.00	569	266	0	0	0	37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85	2.44	82	0	0	0	0	3
	교육복지위원회	157	4.50	0	126	29	0	0	2
	교육위원회	479	13.74	120	296	33	3	0	27
	기획행정위원회	80	2.29	78	0	0	0	0	2
	농산업경제위원회	367	10.52	30	272	45	0	0	20
	농업복지환경위원회	85	2.44	83	0	0	0	0	2
	문화건설안전위원회	267	7.66	24	218	16	0	0	9
	문화관광위원회	43	1.23	0	26	17	0	0	0
	문화관광건설위원회	130	3.73	4	65	59	0	1	1
	문화안전소방위원회	52	1.49	49	0	0	0	0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0.06	0	2	0	0	0	0
	운영위원회	88	2.52	4	80	1	0	0	3
	의회운영위원회	9	0.26	9	0	0	0	0	0
	정보 누락	577	16.55	9	124	1	0	0	443
	행정자치위원회	689	19.76	34	545	70	1	3	36
	환경복지위원회	377	10.81	43	277	36	0	0	21
	전체	3487	100.00	569	2031	307	4	4	572

바. 전라남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전라남도의회는 제4대부터 제12대까지의 조례안을 분석 대상으로 함

- 제1대~제3대 의안정보는 제외되어 있음

○ 처리결과 기록에서 대안반영 폐기나 임기만료 폐기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폐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전라남도의회는 초기에는 의원입법이 부진하였으나, 점차 활발해진 사례임

- 제4대~제5대에는 의원 발의 비율이 2~3%대에 그치고 도지사 제안이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제6대에도 의원 3.3%, 도지사 66.7%로 집행부 위주였음
- 그러나 제8대 들어 의원 발의가 32.2%로 크게 늘고, 제9대~제10대에는 50%대, 제11대~제12대에는 80% 수준까지 상승하였음

○ 전라남도의 또 다른 특징은 교육감 제출 비중이 크다는 점임

- 제4대~제6대 교육감 제안이 15~23%로 높았고, 이후에도 평균 10% 수준을 차지해 전국에서 교육청 제출 조례안이 비교적 많은 편임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전라남도의회는 농수산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비중이 큰 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다룬 조례안이 많은 특성이 있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등 지역 경제와 직결된 위원회에 안건이 집중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역시 교육감 발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며 일정 역할을 하였음

○ 특별위원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외에는 조례안 입법에 활용되지 않았음

[표 27] 전라남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4대~제12대

(단위: 건수, %)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4	의원	6	3.77	3	3	0	0	0	0
	위원회	9	5.66	9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07	67.30	96	11	0	0	0	0
	교육감	37	23.27	33	4	0	0	0	0
	소계	159	100.00	141	18	0	0	0	0
5	의원	5	2.23	5	0	0	0	0	0
	위원회	22	9.82	21	0	0	1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62	72.32	135	25	1	1	0	0
	교육감	35	15.63	28	6	0	1	0	0
	소계	224	100.00	189	31	1	3	0	0
6	의원	9	3.33	6	1	0	2	0	0
	위원회	20	7.41	2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80	66.67	132	39	0	1	8	0
	교육감	61	22.59	49	9	3	0	0	0
	소계	270	100.00	207	49	3	3	8	0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7	의원	14	6.09	3	6	0	4	1	0
	위원회	33	14.35	32	0	1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43	62.17	98	34	0	6	5	0
	교육감	40	17.39	34	6	0	0	0	0
	소계	230	100.00	167	46	1	10	6	0
8	의원	102	32.18	86	11	0	1	4	0
	위원회	24	7.57	24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50	47.32	115	32	0	1	2	0
	교육감	41	12.93	39	2	0	0	0	0
	소계	317	100.00	264	45	0	2	6	0
9	의원	254	54.74	195	44	4	0	0	11
	위원회	19	4.09	19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27	27.37	102	23	0	0	0	2
	교육감	64	13.79	50	11	0	0	0	3
	소계	464	100.00	366	78	4	0	0	16
10	의원	514	57.37	469	32	0	0	0	13
	위원회	146	16.29	145	0	0	1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91	21.32	130	59	0	0	0	2
	교육감	45	5.02	39	4	0	0	0	2
	소계	896	100.00	783	95	0	1	0	17
11	의원	708	78.06	650	45	0	4	0	9
	위원회	64	7.06	63	0	0	0	0	1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90	9.92	72	14	0	4	0	0
	교육감	45	4.96	38	2	0	3	0	2
	소계	907	100.00	823	61	0	11	0	12
12	의원	791	82.48	730	37	0	2	0	22
	위원회	45	4.69	45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84	8.76	62	12	0	1	0	9
	교육감	39	4.07	36	0	0	0	0	3
	소계	959	100.00	873	49	0	3	0	34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의원	2403	54.29	2147	179	4	13	5	55
	위원회	382	8.63	378	0	1	2	0	1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234	27.88	942	249	1	14	15	13
	교육감	407	9.20	346	44	3	4	0	10
	소계	4426	100.00	3813	472	9	33	20	79

[표 28] 전라남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4대~제12대

(단위: 건수,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4	건설소방위원회	9	5.66	8	1	0	0	0	0
	내무위원회	66	41.51	62	4	0	0	0	0
	농림수산위원회	1	0.63	0	1	0	0	0	0
	본회의	6	3.77	4	2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3	1.89	3	0	0	0	0	0
	정보 누락	71	44.65	61	10	0	0	0	0
	조례정비특별위원회	3	1.89	3	0	0	0	0	0
	소계	159	100.00	141	18	0	0	0	0
5	건설소방위원회	18	8.04	15	3	0	0	0	0
	기획행정위원회	17	7.59	10	7	0	0	0	0
	내무위원회	85	37.95	79	6	0	0	0	0
	농림수산위원회	10	4.46	7	3	0	0	0	0
	본회의	11	4.91	10	0	1	0	0	0
	의회운영위원회	7	3.13	7	0	0	0	0	0
	정보 누락	76	33.93	61	12	0	3	0	0
	소계	224	100.00	189	31	1	3	0	0
6	건설소방위원회	1	0.37	0	1	0	0	0	0
	경제건설위원회	32	11.85	21	7	0	0	4	0
	교육사회위원회	74	27.41	55	16	3	0	0	0
	기획재정위원회	40	14.81	32	8	0	0	0	0
	내무위원회	9	3.33	7	2	0	0	0	0
	농림수산위원회	17	6.30	10	4	0	1	2	0
	의회운영위원회	26	9.63	23	1	0	2	0	0
	행정자치위원회	71	26.30	59	10	0	0	2	0
	소계	270	100.00	207	49	3	3	8	0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7	경제건설위원회	32	13.91	19	13	0	0	0	0
	교육사회위원회	48	20.87	37	10	0	1	0	0
	기획재정위원회	30	13.04	27	2	0	1	0	0
	농림수산위원회	23	10.00	12	8	0	2	1	0
	본회의	2	0.87	0	0	0	1	1	0
	의회운영위원회	18	7.83	14	2	1	0	1	0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7	7.39	17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60	26.09	41	11	0	5	3	0
	소계	230	100.00	167	46	1	10	6	0
8	건설소방위원회	36	11.36	27	9	0	0	0	0
	경제관광문화위원회	35	11.04	27	6	0	0	2	0
	교육사회위원회	69	21.77	60	8	0	1	0	0
	기획행정위원회	112	35.33	95	17	0	0	0	0
	농수산환경위원회	42	13.25	33	4	0	1	4	0
	본회의	1	0.32	1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22	6.94	21	1	0	0	0	0
	소계	317	100.00	264	45	0	2	6	0
9	건설소방위원회	38	8.19	34	4	0	0	0	0
	경제관광문화위원회	70	15.09	60	9	0	0	0	1
	교육위원회	83	17.89	62	12	2	0	0	7
	기획사회위원회	105	22.63	77	26	0	0	0	2
	농수산위원회	33	7.11	23	8	1	0	0	1
	농수산환경위원회	5	1.08	4	1	0	0	0	0
	본회의	11	2.37	11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7	3.66	13	1	0	0	0	3
	행정자치위원회	24	5.17	19	4	1	0	0	0
	행정환경위원회	78	16.81	63	13	0	0	0	2
	소계	464	100.00	366	78	4	0	0	16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10	건설소방위원회	36	4.02	30	4	0	0	0	2
	경제관광문화위원회	126	14.06	110	12	0	0	0	4
	교육위원회	108	12.05	93	11	0	0	0	4
	기획사회위원회	52	5.80	37	14	0	0	0	1
	기획행정위원회	121	13.50	98	21	0	0	0	2
	농림해양수산위원회	54	6.03	51	3	0	0	0	0
	농수산위원회	21	2.34	18	2	0	0	0	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84	9.38	76	7	0	0	0	1
	본회의	144	16.07	143	0	0	1	0	0
	안전건설소방위원회	77	8.59	67	8	0	0	0	2
	안전행정환경위원회	29	3.24	25	4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2	1.34	12	0	0	0	0	0
	행정환경위원회	32	3.57	23	9	0	0	0	0
	소계	896	100.00	783	95	0	1	0	17
11	경제관광문화위원회	145	15.99	129	14	0	1	0	1
	교육사회위원회	1	0.11	1	0	0	0	0	0
	교육위원회	179	19.74	159	13	0	3	0	4
	기획행정위원회	164	18.08	148	12	0	1	0	3
	농림수산위원회	1	0.11	0	0	0	1	0	0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	0.22	2	0	0	0	0	0
	농수산위원회	106	11.69	98	3	0	3	0	2
	보건복지환경위원회	157	17.31	144	12	0	1	0	0
	본회의	63	6.95	62	0	0	0	0	1
	안전건설소방위원회	80	8.82	71	7	0	1	0	1
	의회운영위원회	8	0.88	8	0	0	0	0	0
	정보 누락	1	0.11	1	0	0	0	0	0
	소계	907	100.00	823	61	0	11	0	12
12	경제관광문화위원회	159	16.58	145	10	0	1	0	3
	교육위원회	190	19.81	180	6	0	0	0	4
	기획행정위원회	160	16.68	136	14	0	0	0	10
	농수산위원회	119	12.41	113	4	0	0	0	2
	보건복지환경위원회	153	15.95	136	10	0	2	0	5
	본회의	45	4.69	45	0	0	0	0	0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22	12.72	108	5	0	0	0	9
	의회운영위원회	11	1.15	10	0	0	0	0	1
	소계	959	100.00	873	49	0	3	0	34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건설소방위원회	138	3.12	114	22	0	0	0	2
	경제건설위원회	64	1.45	40	20	0	0	4	0
	경제관광문화위원회	535	12.09	471	51	0	2	2	9
	교육사회위원회	192	4.34	153	34	3	2	0	0
	교육위원회	560	12.65	494	42	2	3	0	19
	기획사회위원회	157	3.55	114	40	0	0	0	3
	기획재정위원회	70	1.58	59	10	0	1	0	0
	기획행정위원회	574	12.97	487	71	0	1	0	15
	내무위원회	160	3.62	148	12	0	0	0	0
	농림수산위원회	52	1.17	29	16	0	4	3	0
	농림해양수산위원회	56	1.27	53	3	0	0	0	0
	농수산위원회	279	6.30	252	17	1	3	0	6
	농수산환경위원회	47	1.06	37	5	0	1	4	0
	보건복지환경위원회	394	8.90	356	29	0	3	0	6
	본회의	283	6.39	276	2	1	2	1	1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79	6.30	246	20	0	1	0	12
	안전행정환경위원회	29	0.66	25	4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24	2.80	111	5	1	2	1	4
	정보 누락	148	3.34	123	22	0	3	0	0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0	0.45	20	0	0	0	0	0
	행정자치위원회	155	3.50	119	25	1	5	5	0
	행정환경위원회	110	2.49	86	22	0	0	0	2
	소계	4426	100.00	3813	472	9	33	20	79

사. 경상북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경상북도의회 자료는 제8대부터 제12대까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료의 포괄 범위가 작음

○ 처리결과 분류 체계는 임기만료 폐기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폐기에 포함한 것으로 보임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경상북도의회는 전통적으로 집행부 제안이 강세였으나, 최근 들어 의원 입법이

뚜렷이 증가하였음

- 제8대에는 의원 발의 비중이 17.5%에 머물렀으나, 제9대 약 40%, 제10대 54%, 제11대 68%까지 증가하였고, 제12대 현재도 의원 발의 안건이 절반 이상으로 파악됨

○ 제8대~제12대 현재 누적 통계로는 의원 발의 59.1%, 도지사 제출 25.8%, 교육감 제출 10.2%로 나타나고 있음

○ 조례안 처리결과를 보면, 수정가결은 제8대~제12대 현재 누적 통계 기준으로 240건이 나타나 적지 않은 편임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총계 기준에서 위원회별 처리 비중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들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인 복지 및 교육 관련 조례안의 비중이 작지 않은데, 이러한 의안들은 비용추계서가 요구되는 의무지출 수반 가능성이 높음

○ 경북도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조례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

[표 29] 경상북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8대~제12대

(단위: 건수, %)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8	의원	50	17.54	36	12	0	2	0	0
	위원회	25	8.77	24	1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59	55.79	123	32	2	2	0	0
	교육감	51	17.89	36	13	1	1	0	0
	소계	285	100.00	219	58	3	5	0	0
9	의원	148	40.44	104	37	0	5	2	0
	위원회	28	7.65	28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29	35.25	93	29	3	3	1	0
	교육감	61	16.67	39	19	3	0	0	0
	소계	366	100.00	264	85	6	8	3	0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10	의원	295	53.64	267	15	0	7	6	0
	위원회	19	3.45	19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66	30.18	142	21	0	1	2	0
	교육감	70	12.73	60	7	3	0	0	0
	소계	550	100.00	488	43	3	8	8	0
11	의원	447	68.04	396	25	0	25	1	0
	위원회	35	5.33	35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26	19.18	109	16	0	0	1	0
	교육감	49	7.46	46	2	0	1	0	0
	소계	657	100.00	586	43	0	26	2	0
12	의원	615	79.66	116	6	1	0	0	492
	위원회	22	2.85	11	0	0	0	0	11
	의장	1	0.13	0	0	0	0	0	1
	도지사	98	12.69	16	5	0	0	6	71
	교육감	36	4.66	5	0	0	0	0	31
	소계	772	100.00	148	11	1	0	6	606
총계	의원	1555	59.13	919	95	1	39	9	492
	위원회	129	4.90	117	1	0	0	0	11
	의장	1	0.04	0	0	0	0	0	1
	도지사	678	25.78	483	103	5	6	10	71
	교육감	267	10.15	186	41	7	2	0	31
	소계	2630	100.00	1705	240	13	47	19	606

[표 30] 경상북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8대~제12대

(단위: 건수,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8	건설소방위원회	42	14.74	33	9	0	0	0	0
	교육환경위원회	65	22.81	44	19	1	1	0	0
	기획경제위원회	62	21.75	52	8	1	1	0	0
	농수산위원회	14	4.91	12	2	0	0	0	0
	본회의	3	1.05	2	1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5	5.26	13	2	0	0	0	0
	통상문화위원회	12	4.21	9	1	1	1	0	0
	행정보건복지위원회	72	25.26	54	16	0	2	0	0
	소계	285	100.00	219	58	3	5	0	0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9	건설소방위원회	30	8.20	27	3	0	0	0	0
	교육위원회	70	19.13	41	26	3	0	0	0
	기획경제위원회	73	19.95	64	8	0	0	1	0
	농수산위원회	29	7.92	22	4	1	2	0	0
	농수산소위원회	1	0.27	0	1	0	0	0	0
	문화환경위원회	37	10.11	20	16	0	1	0	0
	본회의	11	3.01	9	1	1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8	4.92	16	2	0	0	0	0
	정보 누락	1	0.27	0	0	0	1	0	0
	행정보건복지위원회	96	26.23	65	24	1	4	2	0
	소계	366	100.00	264	85	6	8	3	0
10	건설소방위원회	68	12.36	64	1	0	2	1	0
	교육위원회	103	18.73	92	8	3	0	0	0
	기획경제위원회	113	20.55	99	12	0	2	0	0
	농수산위원회	56	10.18	51	2	0	0	3	0
	문화환경위원회	75	13.64	67	8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3	2.36	12	0	0	1	0	0
	행정보건복지위원회	122	22.18	103	12	0	3	4	0
	소계	550	100.00	488	43	3	8	8	0
11	건설소방위원회	67	10.20	64	3	0	0	0	0
	교육위원회	130	19.79	118	5	0	7	0	0
	기획경제위원회	161	24.51	135	19	0	6	1	0
	농수산위원회	80	12.18	70	6	0	3	1	0
	문화환경위원회	70	10.65	65	3	0	2	0	0
	의회운영위원회	34	5.18	34	0	0	0	0	0
	행정보건복지위원회	115	17.50	100	7	0	8	0	0
	소계	657	100.00	586	43	0	26	2	0
12	건설소방위원회	93	12.05	23	0	0	0	0	70
	교육위원회	151	19.56	20	0	1	0	0	130
	기획경제위원회	144	18.65	25	7	0	0	5	107
	농수산위원회	90	11.66	19	0	0	0	0	71
	문화환경위원회	131	16.97	26	4	0	0	1	100
	의회운영위원회	34	4.40	14	0	0	0	0	20
	정보 누락	1	0.13	0	0	0	0	0	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128	16.58	21	0	0	0	0	107
	소계	772	100.00	148	11	1	0	6	606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건설소방위원회	300	11.41	211	16	0	2	1	70
	교육위원회	454	17.26	271	39	7	7	0	130
	교육환경위원회	65	2.47	44	19	1	1	0	0
	기획경제위원회	553	21.03	375	54	1	9	7	107
	농수산위원회	269	10.23	174	14	1	5	4	71
	농수산소위원회	1	0.04	0	1	0	0	0	0
	문화환경위원회	313	11.90	178	31	0	3	1	100
	본회의	14	0.53	11	2	1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14	4.33	89	4	0	1	0	20
	정보 누락	2	0.08	0	0	0	1	0	1
	통상문화위원회	12	0.46	9	1	1	1	0	0
	행정보건복지위원회	533	20.27	343	59	1	17	6	107
	소계	2630	100.00	1705	240	13	47	19	606

아. 경상남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경상남도의회는 제4대부터 제12대까지의 조례안을 포함하며, 총 약 4,100건 이상의 조례안을 다룬 것으로 집계됨
- 제안자에서 “건설소방”, “의회운영”은 각각 “건설소방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로 “위원회” 처리하였음
- 처리결과 기록은 임기만료 시 폐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폐기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상남도의회는 전체 미처리 등 건수가 2% 미만임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경상남도의회는 제4대~제7대 의원 발의 비중이 5%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제11대에서는 69.4%를 기록하였음
- 누적 통계로 의원 발의는 약 37.8%, 도지사 제안 45.5%로 나타나지만, 최근 제11대~제12대에는 의원 발의 비율이 69.4%, 59.8%로 집행부를 크게 압도하는 상황
- 교육감 제출 조례안이 총계 기준 11.4%로 나타났는데, 의장 제안은 없었음

○ 처리결과 측면에서 부결 7건으로 경남은 대부분의 안건을 합의 통과시켰음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경상남도의 산업적 특성상 기업 지원, 산단 조성 등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인 경제 관련 조례가 많은 특성이 있음

– 이 분야의 비용추계서는 직접 지원금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 등 편익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 비용추계 제도와 긴장이 유발될 수 있음

○ 특히, 다른 대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된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제12대에서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128건을 심의하여 모두 원안가결로 처리되었음

[표 31] 경상남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4대~제12대

(단위: 건수, %)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료 폐기	철회	미처리 등
4	의원	14	4.64	8	1	1	2	0	1	1
	위원회	9	2.98	9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221	73.18	182	32	3	1	0	3	0
	교육감	58	19.21	56	0	0	1	0	1	0
	소계	302	100.00	255	33	4	4	0	5	1
5	의원	5	2.27	1	0	0	4	0	0	0
	위원회	16	7.27	15	0	0	1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137	62.27	112	22	0	1	0	2	0
	교육감	62	28.18	44	18	0	0	0	0	0
	소계	220	100.00	172	40	0	6	0	2	0
6	의원	3	0.83	0	1	0	1	0	0	1
	위원회	16	4.41	15	1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283	77.96	234	38	1	4	0	6	0
	교육감	61	16.80	50	9	0	2	0	0	0
	소계	363	100.00	299	49	1	7	0	6	1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료 폐기	철회	미처리 등
7	의원	3	1.35	3	0	0	0	0	0	0
	위원회	16	7.17	16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170	76.23	137	30	0	2	0	1	0
	교육감	34	15.25	31	3	0	0	0	0	0
	소계	223	100.00	187	33	0	2	0	1	0
8	의원	80	22.92	61	19	0	0	0	0	0
	위원회	21	6.02	20	1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201	57.59	153	46	0	1	0	1	0
	교육감	47	13.47	37	6	0	4	0	0	0
	소계	349	100.00	271	72	0	5	0	1	0
9	의원	143	32.43	51	65	0	0	0	9	18
	위원회	52	11.79	52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179	40.59	131	39	0	0	0	0	9
	교육감	67	15.19	42	21	1	1	0	1	1
	소계	441	100.00	276	125	1	1	0	10	28
10	의원	256	44.29	198	45	0	6	0	7	0
	위원회	20	3.46	20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257	44.46	232	23	0	2	0	0	0
	교육감	45	7.79	42	2	0	1	0	0	0
	소계	578	100.00	492	70	0	9	0	7	0
11	의원	577	69.43	395	124	1	2	3	52	0
	위원회	36	4.33	36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168	20.22	142	21	0	1	1	3	0
	교육감	50	6.02	41	6	0	1	0	2	0
	소계	831	100.00	614	151	1	4	4	57	0
12	의원	478	59.75	375	45	0	0	0	24	34
	위원회	148	18.50	148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130	16.25	109	13	0	1	0	4	3
	교육감	44	5.50	40	2	0	0	0	1	1
	소계	800	100.00	672	60	0	1	0	29	38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료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의원	1559	37.96	1092	300	2	15	3	93	54
	위원회	334	8.13	331	2	0	1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0
	도지사	1746	42.51	1432	264	4	13	1	20	12
	교육감	468	11.40	383	67	1	10	0	5	2
	소계	4107	100.00	3238	633	7	39	4	118	68

[표 32] 경상남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4대~제12대

(단위: 건수,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4	건설위원회	26	8.61	22	4	0	0	0	0	0
	기획위원회	6	1.99	3	3	0	0	0	0	0
	내무위원회	119	39.40	101	13	2	1	0	2	0
	농림수산위원회	9	2.98	6	3	0	0	0	0	0
	문교사회위원회	97	32.12	90	4	1	1	0	1	0
	본회의	8	2.65	8	0	0	0	0	0	0
	산업위원회	16	5.30	10	5	0	0	0	1	0
	의회운영위원회	16	5.30	12	0	1	2	0	0	1
	정보 누락	5	1.66	3	1	0	0	0	1	0
	소계	302	100.00	255	33	4	4	0	5	1
5	건설도시위원회	19	8.64	17	2	0	0	0	0	0
	경제문화위원회	11	5.00	9	2	0	0	0	0	0
	교육사회위원회	73	33.18	51	22	0	0	0	0	0
	기획위원회	17	7.73	9	5	0	1	0	2	0
	내무위원회	17	7.73	17	0	0	0	0	0	0
	농림수산위원회	16	7.27	14	2	0	0	0	0	0
	본회의	8	3.64	5	1	0	2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1	5.00	10	0	0	1	0	0	0
	정보 누락	48	21.82	40	6	0	2	0	0	0
	소계	220	100.00	172	40	0	6	0	2	0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6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1	8.54	27	4	0	0	0	0	0
	경제환경위원회	45	12.40	35	7	0	1	0	2	0
	교육사회위원회	86	23.69	68	14	0	2	0	1	1
	기획내무위원회	12	3.31	10	1	0	0	0	1	0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25	34.44	107	12	1	3	0	2	0
	농림수산위원회	7	1.93	4	2	0	1	0	0	0
	본회의	2	0.55	2	0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4	3.86	13	1	0	0	0	0	0
	정보 누락	41	11.29	33	8	0	0	0	0	0
	소계	363	100.00	299	49	1	7	0	6	1
7	건설소방위원회	19	8.52	6	13	0	0	0	0	0
	경제환경문화위원회	29	13.00	23	5	0	1	0	0	0
	교육사회위원회	47	21.08	39	8	0	0	0	0	0
	기획행정위원회	99	44.39	94	4	0	0	0	1	0
	농수산위원회	11	4.93	7	3	0	1	0	0	0
	본회의	15	6.73	15	0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3	1.35	3	0	0	0	0	0	0
	소계	223	100.00	187	33	0	2	0	1	0
8	건설소방위원회	49	14.04	20	29	0	0	0	0	0
	경제환경문화위원회	66	18.91	51	14	0	1	0	0	0
	교육사회위원회	83	23.78	63	16	0	4	0	0	0
	기획행정위원회	114	32.66	103	11	0	0	0	0	0
	농수산위원회	17	4.87	16	1	0	0	0	0	0
	본회의	5	1.43	5	0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4	4.01	13	1	0	0	0	0	0
	정보 누락	1	0.29	0	0	0	0	0	1	0
	소계	349	100.00	271	72	0	5	0	1	0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9	건설소방위원회	46	10.43	29	11	0	0	0	0	6
	경제환경위원회	42	9.52	23	15	0	0	0	1	3
	교육위원회	76	17.23	42	27	1	1	0	1	4
	기획행정위원회	124	28.12	94	23	0	0	0	2	5
	농해양수산위원회	11	2.49	5	4	0	0	0	0	2
	문화복지위원회	68	15.42	22	36	0	0	0	3	7
	본회의	4	0.91	4	0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13	2.95	9	1	0	0	0	3	0
	정보 누락	57	12.93	48	8	0	0	0	0	1
	소계	441	100.00	276	125	1	1	0	10	28
10	건설소방위원회	92	15.92	76	14	0	2	0	0	0
	경제환경위원회	73	12.63	64	8	0	0	0	1	0
	교육위원회	89	15.40	77	10	0	2	0	0	0
	기획행정위원회	159	27.51	142	14	0	2	0	1	0
	농해양수산위원회	49	8.48	34	11	0	0	0	4	0
	문화복지위원회	92	15.92	75	13	0	3	0	1	0
	본회의	2	0.35	2	0	0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6	1.04	6	0	0	0	0	0	0
	정보 누락	16	2.77	16	0	0	0	0	0	0
	소계	578	100.00	492	70	0	9	0	7	0
11	건설소방위원회	123	14.80	85	26	0	2	1	9	0
	경제환경위원회	121	14.56	92	25	0	0	1	3	0
	교육위원회	141	16.97	104	27	0	1	0	9	0
	기획행정위원회	174	20.94	149	11	0	0	0	14	0
	농해양수산위원회	64	7.70	36	19	0	0	1	8	0
	문화복지위원회	160	19.25	105	38	1	1	1	14	0
	의회운영위원회	37	4.45	34	3	0	0	0	0	0
	정보 누락	11	1.32	9	2	0	0	0	0	0
	소계	831	100.00	614	151	1	4	4	57	0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12	건설소방위원회	86	10.75	63	17	0	0	0	3	3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 특별위원회	128	16.00	128	0	0	0	0	0	0
	경제환경위원회	103	12.88	69	15	0	1	0	9	9
	교육위원회	124	15.50	106	5	0	0	0	5	8
	기획행정위원회	131	16.38	112	9	0	0	0	2	8
	농해양수산위원회	71	8.88	60	4	0	0	0	5	2
	문화복지위원회	131	16.38	110	8	0	0	0	5	8
	의회운영위원회	26	3.25	24	2	0	0	0	0	0
	소계	800	100.00	672	60	0	1	0	29	38
총계	건설도시위원회	19	0.46	17	2	0	0	0	0	0
	건설소방위원회	415	10.10	279	110	0	4	1	12	9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1	0.75	27	4	0	0	0	0	0
	건설위원회	26	0.63	22	4	0	0	0	0	0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 특별위원회	128	3.12	128	0	0	0	0	0	0
	경제문화위원회	11	0.27	9	2	0	0	0	0	0
	경제환경문화위원회	95	2.31	74	19	0	2	0	0	0
	경제환경위원회	384	9.35	283	70	0	2	1	16	12
	교육사회위원회	289	7.04	221	60	0	6	0	1	1
	교육위원회	430	10.47	329	69	1	4	0	15	12
	기획내무위원회	12	0.29	10	1	0	0	0	1	0
	기획위원회	23	0.56	12	8	0	1	0	2	0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25	3.04	107	12	1	3	0	2	0
	기획행정위원회	801	19.50	694	72	0	2	0	20	13
	내무위원회	136	3.31	118	13	2	1	0	2	0
	농림수산위원회	32	0.78	24	7	0	1	0	0	0
	농수산위원회	28	0.68	23	4	0	1	0	0	0
	농해양수산위원회	195	4.75	135	38	0	0	1	17	4
	문교사회위원회	97	2.36	90	4	1	1	0	1	0
	문화복지위원회	451	10.98	312	95	1	4	1	23	15
	본회의	44	1.07	41	1	0	2	0	0	0
	산업위원회	16	0.39	10	5	0	0	0	1	0
	의회운영위원회	140	3.41	124	8	1	3	0	3	1
	정보 누락	179	4.36	149	25	0	2	0	2	1
	소계	4107	100.00	3238	633	7	39	4	118	68

자.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제주도의회는 제4대부터 제12대까지의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으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조례안을 포함하고 있음

– 제주도의회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점으로 의회 구조가 개편되었으며, 기존 북제주·남제주군의회 통합 등으로 4대부터 집계된 맥락이 있음

○ 다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는 제8대부터 확인 가능

○ 처리결과는 제4대~제7대에 가결을 원안가결과 수정가결로 구분하였으나, 제8대부터는 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의 구분이 없으며, 임기만료 폐기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음

○ 제주도의 특성상 조례안 비용추계에 관한 자체 조례와 규정을 운용하였으며, 제주도의회는 비용추계 관련 조례안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자료 축적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제주도의회는 제4대~제8대에는 도지사 제출 조례안의 비중이 60% 수준 이상을 지속 유지하였으며, 제7대에는 약 80%의 수준을 보였음

– 다만, 제7대에 도지사가 제출한 262건의 안건 중 원안 가결은 102건에 불과한 반면, 수정 가결은 150건에 달하는데, 이는 제주도의회가 집행부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였음을 강력하게 시사

○ 이후 제9대~제10대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의 비중이 30%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제11~제12대에는 60% 이상의 비중으로 나타남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상임위원회 개편이 특별자치도 출범 시점에 이루어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 현재 제12대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보건복

지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체육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며, 조례안은 이들 위원회에 고르게 배분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의 특별자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조례들이 집중되며, 조직 신설이나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가 핵심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평가 가능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제주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 보전 조례는 기회비용과 규제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재정지출 규모뿐 아니라, 환경 가치와 개발 이익 간의 형량이 중요한 쟁점이 있음

[표 3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4대~제12대

(단위: 건수, %)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4	의원	24	10.08		22	0	0	0	0	2
	위원회	7	2.94		7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64	68.91		146	15	0	0	0	3
	교육감	43	18.07		40	3	0	0	0	0
	소계	238	100.00		215	18	0	0	0	5
5	의원	13	6.91		10	1	1	0	0	1
	위원회	22	11.70		22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25	66.49		91	30	0	0	0	4
	교육감	28	14.89		20	8	0	0	0	0
	소계	188	100.00		143	39	1	0	0	5
6	의원	23	10.41		23	0	0	0	0	0
	위원회	0	0.00		0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151	68.33		101	43	0	0	0	7
	교육감	47	21.27		39	8	0	0	0	0
	소계	221	100.00		163	51	0	0	0	7
7	의원	20	6.15		4	14	0	1	0	1
	위원회	13	4.00		13	0	0	0	0	0
	의장	0	0.00		0	0	0	0	0	0
	도지사	262	80.62		102	150	0	0	0	10
	교육감	30	9.23		21	8	0	0	0	1
	소계	325	100.00		140	172	0	1	0	12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8	의원	112	16.62	102			0	1	0	9
	위원회	12	1.78	5			0	0	0	7
	의장	0	0.00	0			0	0	0	0
	도지사	475	70.47	451			4	0	0	20
	교육감	75	11.13	67			1	0	3	4
	소계	674	100	625			5	1	3	40
9	의원	241	39.83	171			3	1	3	63
	위원회	19	3.14	7			0	0	0	12
	의장	0	0.00	0			0	0	0	0
	도지사	304	50.25	139			4	2	1	158
	교육감	41	6.78	25			0	0	0	16
	소계	605	100.00	342			7	3	4	249
10	의원	338	36.86	332			0	0	1	5
	위원회	46	5.02	7			0	0	0	39
	의장	0	0.00	0			0	0	0	0
	도지사	476	51.91	457			1	0	2	16
	교육감	57	6.22	55			0	0	1	1
	소계	917	100.00	851			1	0	4	61
11	의원	724	61.77	687			2	7	0	28
	위원회	49	4.18	40			1	0	0	8
	의장	2	0.17	1			0	1	0	0
	도지사	368	31.40	345			2	6	0	15
	교육감	29	2.47	26			0	0	0	3
	소계	1172	100.00	1099			5	14	0	54
12	의원	686	62.59	654			1	7	5	19
	위원회	32	2.92	32			0	0	0	0
	의장	5	0.46	2			0	1	0	2
	도지사	313	28.56	302			0	3	3	5
	교육감	60	5.47	59			0	0	0	1
	소계	1096	100.00	1049			1	11	8	27
총계	의원	2158	39.70	1946	36	15	7	17	9	128
	위원회	223	4.10	91	65	0	1	0	0	66
	의장	7	0.13	3	0	0	0	2	0	2
	도지사	2638	48.53	1694	440	238	11	11	6	238
	교육감	410	7.54	232	120	27	1	0	4	26
	소계	5436	100.00	3966	661	280	20	30	19	460

[표 3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8대~제12대

(단위: 건수,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8	교육위원회	76	11.28	69			1	0	3	3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94	13.95	89			0	0	0	5
	문화관광위원회	79	11.72	79			0	0	0	0
	복지안전위원회	101	14.99	97			0	0	0	4
	본회의	19	2.82	7			4	0	0	8
	의회운영위원회	26	3.86	25			0	0	0	1
	행정자치위원회	156	23.15	143			0	1	0	12
	환경도시위원회	123	18.25	116			0	0	0	7
	전체	674	100.00	625			5	1	3	40
9	교육위원회	70	11.57	40			0	0	1	29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66	10.91	37			0	0	1	28
	문화관광위원회	73	12.07	45			0	0	0	28
	복지안전위원회	97	16.03	55			1	0	0	41
	본회의	19	3.14	19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27	4.46	17			1	0	0	9
	행정자치위원회	161	26.61	81			2	3	1	74
	환경도시위원회	92	15.21	48			3	0	1	40
	전체	605	100.00	342			7	3	4	249
10	교육위원회	113	12.32	110			0	0	1	2
	농수축경제위원회	133	14.50	124			0	0	2	7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17	12.76	112			0	0	1	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69	18.43	162			0	0	0	7
	본회의	6	0.65	0			0	0	0	6
	의회운영위원회	38	4.14	15			0	0	0	23
	행정자치위원회	190	20.72	182			1	0	0	7
	환경도시위원회	151	16.47	146			0	0	0	5
	전체	917	100.00	851			1	0	4	61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11	교육위원회	156	13.31	146			0	2	0	8
	농수축경제위원회	159	13.57	149			0	1	0	9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65	14.08	157			0	2	0	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96	16.72	190			0	1	0	5
	본회의	48	4.10	39			1	0	0	8
	의회운영위원회	28	2.39	24			0	1	0	3
	행정자치위원회	227	19.37	209			3	6	0	9
	환경도시위원회	193	16.47	185			1	1	0	6
	전체	1172	100.00	1099			5	14	0	54
12	교육위원회	157	14.32	147			0	2	1	7
	농수축경제위원회	169	15.42	160			0	2	4	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67	15.24	156			0	0	0	1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8	18.98	202			0	0	2	4
	본회의	32	2.92	32			0	0	0	0
	의회운영위원회	21	1.92	20			0	0	1	0
	행정자치위원회	148	13.50	146			0	0	0	2
	환경도시위원회	194	17.70	186			1	7	0	0
	전체	1096	100.00	1049			1	11	8	27
총계	교육위원회	572	12.81	512			1	4	6	49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60	3.58	126			0	0	1	33
	농수축경제위원회	461	10.33	433			0	3	6	19
	문화관광위원회	152	3.41	124			0	0	0	28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32	7.44	313			0	2	0	17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17	2.62	112			0	0	1	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573	12.84	554			0	1	2	16
	복지안전위원회	198	4.44	152			1	0	0	45
	본회의	124	2.78	97			5	0	0	22
	의회운영위원회	140	3.14	101			1	1	1	36
	행정자치위원회	882	19.76	761			6	10	1	104
	환경도시위원회	753	16.87	681			5	8	1	58
	전체	4464	100.00	3966			19	29	19	431

Ⅳ. 조례안 비용추계의 운영체계 및 사례 검토

1. 조례안 비용추계의 배경 및 근거 법률

❑ 조례안 비용추계의 배경(국회예산정책처, 2024[1])

○ 의안 비용추계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2005년 「국회법」 개정과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국회는 2005년 「국회법」(법률 제7614호, 2005.7.28. 일부개정, 2005.7.28. 시행) 개정을 통해 비용추계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의원, 위원회 또는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법률 제8050호, 2006.10.4. 제정, 2007.1.1. 시행) 제정을 통해 정부가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경우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규정

○ 2006년 9월에는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른 비용추계 규정의 하위 법령으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과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국회규정)이 각각 제정되었음

- 동 규칙과 규정에는 비용추계서의 정의와 함께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의안의 요건, 비용추계서에 작성하여야 할 내용, 비용추계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2011년 「지방자치법」의 조례안 비용추계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

○ 조례안 비용추계의 법률 근거는 「지방자치법」[2](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2011.10.15. 시행) 제66조의3 신설을 통해 마련되었음

- 2011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3]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1) 국회예산정책처. (2024. 9).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1.8.29.).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시행: 재원의 효율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준칙(안)을 제시하였음

2011년 조례안 비용추계 관련「지방자치법」규정 신설

「지방자치법」(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2011.10.15. 시행)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지방자치법」(법률 제20870호, 2025.4.1. 일부개정, 2025.10.2. 시행) 제78조에 근거하여 비용추계 제도를 운영

현행 조례안 비용추계 관련「지방자치법」규정

「지방자치법」(법률 제20870호, 2025.4.1. 일부개정, 2025.10.2. 시행)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78조가 조례안 비용추계의 대상 의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의안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까지도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으로 규정(국회예산정책처, 2024[4)5)])

- 조례안 비용추계제도는 국회의 법률안 비용추계제도와 마찬가지로 입법에 의한 재정부담에 대해 사전에 그 비용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조례안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적인 배분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4) 윤주철. (2024). 조례안 비용추계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4(4): 63-89.

5) 국회예산정책처. (2024. 9).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조례안 비용추계

가.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6]

○ 현행: 조례 제9837호, 2025.9.29. 일부개정, 2025.9.29. 시행

○ 2015년 제정: 조례 제5809호, 2015.1.2. 제정, 2015.1.2.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각각 제출하거나 발의,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정의)

–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함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6)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이하 자치법규 관련 자료는 동 정보시스템 자료에서 확인.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

-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8조(자료협조)

- 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현행: 조례 제6804호, 2022.12.28. 일부개정, 2022.12.28. 시행

○ 2011년 제정: 조례 제4685호, 2011.11.2. 제정, 2011.11.2.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

○ 제2조(정의)

-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다만, 재원조달 방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함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 시장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함

○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함

다.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현행: 조례 제6019호, 2023.10.4. 전부개정, 2023.10.4. 시행

○ 2011년 제정: 조례 제4290호, 2011.11.10. 제정, 2011.11.10.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하거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에서 각각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정의)

-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발의·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 시장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함

○ 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

–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

관부서에서 작성함

○ 제8조(자료 제출 협조 등)

- 시장은 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현행: 조례 제6755호, 2021.12.30. 일부개정, 2022.1.13. 시행

○ 2012년 제정: 조례 제5050호, 2012.1.16. 제정, 2012.1.16.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

○ 제2조(정의)

-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원등”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함
-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함

–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마.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

○ 현행: 조례 제5840호, 2021.12.15. 일부개정, 2022.1.13. 시행

○ 2020년 제정: 조례 제5612호, 2020.12.15. 제정, 2020.12.15.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

○ 제2조(정의)

– “비용추계서”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시장, 의원,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

-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바.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 현행: 조례 제5828호, 2022.4.15. 일부개정, 2022.4.15. 시행

○ 2011년 제정: 조례 제4008호, 2011.12.30. 제정, 2011.12.30.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정의)

–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함

○ 제3조(작성대상)

–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나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을 작성대상으로 함

○ 제4조(작성제외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5조(작성방법)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함

- 다만, 필요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함
  - 의원 및 위원회에 대한 예외 규정 별도 없음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음
- 다만,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함
-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경우 예산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사.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현행: 조례 제2646호, 2022.12.1. 일부개정, 2022.12.1. 시행

○ 2012년 제정: 조례 제1318호, 2012.11.15. 제정, 2012.11.15.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정의)
-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과세입의 순증가액 또는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 제3조(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범위)
-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의회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함
-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

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함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첨부가 곤란한 경우
  -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4조(비용추계서 등의 작성 부서)

- 의안의 시행을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주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그 작성을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음

○ 제5조(비용추계서 등의 첨부 시기)

○ 제6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

-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제7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방법)

아.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현행: 조례 제1985호, 2022.11.14. 일부개정, 2022.11.14. 시행

○ 2012년 제정: 조례 제14호, 2012.7.2. 제정, 2012.7.2.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규정

○ 제2조(정의)

- “비용추계서”란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함
-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함
-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3. 도·특별자치도의 조례안 비용추계

가. 경기도

❑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현행: 조례 제7495호, 2022.12.30. 일부개정, 2022.12.30. 시행

○ 2012년 제정: 조례 제4389호, 2012.5.11. 제정, 2012.5.11.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정의)

–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경기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경기도지사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투입이 필요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함
  - 의원 및 위원회에 대한 예외 규정 별도 없음

○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현행: 조례 제5178호, 2023.11.3. 일부개정, 2023.11.3. 시행

○ 2019년 제정: 조례 제4437호, 2019.7.26. 제정, 2019.7.26. 시행

○ 비용추계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별도 조례 없음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2조(정의)

-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 제11조(자치법규안 심사)

- 도지사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함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기 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함
- 제1항에 따른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함

○ 제12조(작성대상 및 내용)

-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13조(비용추계의 방법 및 기간)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할 수 있음
-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제14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 도지사는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

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의원 및 위원회에 대한 예외 규정 별도 없음

다. 충청북도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 현행: 조례 제4230호, 2022.12.9. 일부개정, 2022.12.9. 시행

○ 2007년 제정: 조례 제3017호, 2007.8.10. 제정, 2007.8.10. 시행

– 비용추계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별도 조례 없으나, 의회훈령 형식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있음

○ 「충청북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현행: 의회훈령 제106호, 2025.10.27. 제정, 2025.10.27. 시행

- 현행 훈령이 2025년 제정 훈령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정의)

- 1. “비용추계 등”이란 충청북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한 추계와 그 검토 등에 관한 업무처리를 말한다.
- 2. “검토요구자”란 의안 비용추계서의 검토를 요구하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및 검토의뢰)

- 검토요구자는 의안을 발의·제안하기 전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이하 “예결전문위원”이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검토요구자는 예산을 수반하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결전문위원에게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다만,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도 그 시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 제4조(검토내용 협의)

- 예결전문위원은 비용추계서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검토요구자 및 해당 집행부서와 간담회 등의 형태로 협의할 수 있음

– 제5조(검토의견 작성)

- 예결전문위원이 작성하는 검토의견에는 안건 개요, 추계 주요내용 요약, 검토결과, 종합의견,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이 포함됨
- 예결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적정, 수정, 미대상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예결전문위원은 비용추계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검토요구자에게 수정 ·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예결전문위원은 비용추계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결과를 검토의견서에 첨부할 수 있음

– 제8조(자료협조)

-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은 비용추계서 검토의견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함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2조(정의)

–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 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 제11조(비용추계 작성대상)

–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함

–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주민대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

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등)

-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음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함

○ 제13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 재원조달 방안 작성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14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 비용추계서는 조례안 발의권자인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출 할 수 있음
-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세출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함

-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제15조(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

- 충청북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소관 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비용추계작성 및 조례안이 마련 되도록 협조함

라. 충청남도

❑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현행: 조례 제5177호, 2022.2.10. 일부개정, 2022.2.10. 시행

○ 2020년 제정: 조례 제4724호, 2020.6.10. 제정, 2020.6.10. 시행

- 비용추계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별도 조례 없으나, 의회훈령 형식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있음

○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현행: 의회훈령 제65호,7 2021.8.3. 일부개정, 2021.8.3. 시행
-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장 비용추계서 작성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이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의뢰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6조(관련자료 요청)
  - 예산정책담당관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개정 2021.8.3.>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2조(정의)

- “비용추계서”란 자치법규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

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 제12조(비용추계 대상)

- 도지사 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자치법규 입법안에 붙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이 수정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자치법규 입법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관하여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제13조(작성방법 등)

-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도지사가 제출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할 수 있음
- 비용추계 기간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제14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 도지사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자치법규 입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 비용추계서 작성은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의원ㆍ위원회가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도의회 예산정책담당 부서를 소관부서로 본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마.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현행: 조례 제5399호, 2023.12.8. 일부개정, 2024.1.18. 시행

○ 2019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 제3862호, 2014.6.27. 제정, 2014.6.27. 시행

– 비용추계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별도 조례 없음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2조(정의)

–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 제12조(비용추계 작성대상 및 제출)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등)

–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제14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 도지사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의원 및 위원회에 대한 예외 규정 별도 없음

○ 제15조(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시기)

–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비용추계서는 입안 초기단계부터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바. 전라남도

❑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현행: 조례 제6467호, 2025.12.18. 일부개정, 2025.12.18. 시행

○ 2013년 일부개정: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675호,

2013.2.20. 제정, 2013.2.20. 시행

- 비용추계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별도 조례 없음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2조(정의)

- “비용추계서”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 의원 및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제15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 도지사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해야 함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등)

-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제14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 도지사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의원 및 위원회에 대한 예외 규정 별도 없음

○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사. 경상북도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현행: 조례 제5074호, 2024.7.11. 일부개정, 2024.7.11. 시행

○ 2012년 제정: 조례 제3337호, 2012.5.31. 제정, 2012.5.31.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정의)

-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 제3조(작성대상)

-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경상북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야 함

-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4조(작성방법 등)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 도지사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의원 및 위원회에 대한 예외 규정 별도 없음

○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경우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재정분석 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

례·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함

-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아. 경상남도

❑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현행: 조례 제5839호, 2025.5.15. 일부개정, 2025.5.15. 시행

○ 2012년 제정: 조례 제3685호, 2012.1.12. 제정, 2012.1.12.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정의)

-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 제3조(비용추계 대상)

-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위원회 및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음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

-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추계의 상세내역, 관련 의견,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
- 다만, 재원조달방안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함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음
-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수입,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때 관계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함

○ 제7조(작성 및 제출시기)

- 모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 소관 집행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제8조(자료협조)

- 도지사는 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 현행: 조례 제3051호, 2022.1.12. 일부개정, 2022.1.13. 시행

○ 2012년 제정: 조례 제901호, 2012.5.16. 제정, 2012.5.16. 시행

– 비용추계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별도 조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규 형식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도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현행: 의회예규 제70호, 2024.2.14. 일부개정, 2024.2.14.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이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의뢰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의2(비용추계의 제출범위)

• 입법지원담당관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개정 2024. 2. 14.>

1.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규모에 대한 영향이나 변화가 없는 경우

2. 비용을 수반한 기 시행중인 사업이 포함된 의안인 경우

– 제6조(관련 자료 요청)

• 입법지원담당관은 의안의 비용추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의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개정 2024. 2. 14.>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정의)

– “비용추계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나 위원회”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의·제출

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부대의견,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비용추계는 예산이나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음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 도지사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함께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하여야 함
- 재원조달방안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민간 등의 재

원분담계획이 포함되어야 힘

- 재원조달방안 수립에 관련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함

4. 광역지방의회 조례안 비용추계 운영체계 비교

❑ 비교 분석 개요

○ 조례의 제명 및 정의, 비용추계의 대상 및 범위, 작성 주체 및 지원 조직, 재원 조달방안의 작성 의무, 면제 기준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조례안 비용추계 비교 검토

[표 35] 광역지방의회 비용추계제도 비교 요약표

지역	근거 조례	대상 범위	금액 기준	자료 제출 및 예산 협의
서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위원회·시장 발의 의안	-	의원·위원회의 시장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권(제8조)
부산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위원회·시장 발의 의안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3억원 미만	-
대구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위원회·시장 발의 의안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3억원 미만	의원·위원회의 시장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권(제8조)
인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위원회·시장·의장(주민조례발안) 발의 의안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3억원 미만	-
광주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	의원·위원회·시장 발의 의안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3억원 미만	-
대전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의원·위원회·시장 발의 의안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3억원 미만	-
울산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위원회·시장 발의 의안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3억원 미만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위원회·시장 발의 의안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3억원 미만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의무(제7조)
경기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위원회·도지사 발의 의안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3억원 미만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의무(제6조)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의원·위원회·도지사 발의 의안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3억원 미만	-

지역	근거 조례	대상 범위	금액 기준	자료 제출 및 예산 협의
충북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의원·위원회·도지사 발의 의안	명문 규정 없음	훈령(「충청북도의회 의안 비용추계 운영규정」)에 따라 의원·위원회의 시장·교육감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권(제8조)
충남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의원·위원회·도지사 발의 의안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3억원 미만	훈령(「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원·위원회의 시장·교육감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권(제6조)
전북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의원·위원회·도지사 발의 의안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3억원 미만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의무(제15조)
전남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상 도지사 발의 의안만 명시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3억원 미만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의무(제15조)
경북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위원회·도지사 발의 의안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3억원 미만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의무(제6조)
경남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위원회·도지사 발의 의안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3억원 미만	의원·위원회의 도지사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권(제8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의원·위원회·도지사 발의 의안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3억원 미만	훈령(「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원·위원회의 시장·교육감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권(제6조)

주: 발의, 제안, 제출은 “발의”로 표현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조례안 비용추계의 특징

❑ 서울특별시: 전문성과 체계성의 표본

○ 서울특별시는 2015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

9837호)를 통해 가장 선진화된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 서울시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적인 지원 조직의 명문화와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임

○ 정의 및 범위

- 동 조례 제2조에서 비용추계서를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으로 정의하면서, 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감세(세입 감소) 조례안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동 조례 제3조는 의원, 위원회, 시장 모두를 제출 의무자로 규정

○ 면제 기준의 특수성

- 타 지자체가 ‘연평균 1억원 미만’ 등의 구체적 금액 기준을 조례 본문에 명시하는 것과 달리, 서울특별시는 동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
- 이는 일률적인 소액 기준 적용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판단과 금액 자체보다는 추계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작성 지원 조직

- 동 조례 제7조는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작성 부서를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로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집행부(시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의회 차원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비용추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항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음

○ 재원조달방안

- 동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지방채 발행 등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을 명시해야 함
- 이는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집행부의 협조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볼 수 있음

❑ 부산광역시: 일반적 사례

○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통해 표준적인

비용추계 모델을 운영

- ㅇ 서울특별시와 달리 면제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한 것이 특징임
- ㅇ 면제 기준(동 조례 제3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국가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
- ㅇ 작성 주체
  - 동 조례 제6조에서 의원 발의 시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서울특별시처럼 별도의 의회 내 분석 조직을 명시하기보다, 집행부(주관부서)의 지원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집행부의 협조 여부에 따라 추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

❑ 대구광역시: 위원회 의결을 통한 면제권

- ㅇ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6019호)를 운영 중으로 그 특징은 위원회 의결을 통한 예외 인정 조항임
- ㅇ 면제 권한(동 조례 제3조)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입법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비용추계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
  - 이는 재정 통제라는 제도의 본질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운영상의 신중함이 요구됨
- ㅇ 재원조달방안
  - 동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 의무를 부과하여, 의원 발의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의 포괄

- ㅇ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조례안 발의 주체를 “시장, 의원, 위원회”뿐만 아니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장이 발의한 의안”까지 포괄하여 ‘의원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주민 직접 참여에 의한 입법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로, 주민 조례 발안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선도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작성 부서와 관련해서도 의원등의 사전 요청 시 업무 소관 부서가 작성하도록 하여 집행부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였음

❑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 제3조에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해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안 심사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제7조에서 입안 초기 단계부터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되, 의원 발의안은 예외로 두어 의원의 입법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제5조 작성 방법에서 재원조달방안 작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의원 및 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규정 문헌 자체에 따르면, 의원에게도 재원조달방안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예산 편성권이 없는 의원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는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임

❑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비용추계서와 별도로 “재원조달계획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재원조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음
- 시장 제출안에는 두 가지 모두를 첨부해야 하지만, 의원 발의안은 비용추계서만 첨부하도록 이원화하여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

- 2012년 출범 초기부터 제정된 조례를 통해 1억원/3억원 미만의 면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 발의 시 의원이 작성하거나 소관 부서에 요청하는 표준 모델을 따르고 있음

나. 도·특별자치도의 조례안 비용추계의 특징

❑ 경기도: 의회 예산정책 기능의 강화

○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버금가는 의회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음

-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7495호)는 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

○ 작성 지원 조직

- 동 조례 제6조는 의원·위원회 발의 시 작성 부서를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명확히 지정하고 있음
- 이는 의회 내에 비용추계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재정적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강력한 기제로 평가 가능

○ 재원조달방안

- 동 조례 제5조에서 재원조달방안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 발의 시 예외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지 않았음
- 다만, 의회 예산정책부서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통합형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는 별도의 비용추계 단행 조례가 아닌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내에 비용추계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재원조달방안

– 각 지방자치단체의 동 조례 제14조에서 재원조달방안 작성 주체를 ‘도지사’로 한정하고 차입금,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구체적 명시를 요구함으로써,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충청북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설

○ 충청북도는 별도의 단행 조례 없이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내에 비용추계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해 왔으나, 최근인 2025년 10월 27일 의회훈령인 「충청북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설

– 도의회는 2025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신설하여 도와 교육청의 예산·기금 주요사업의 재정소요 분석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적인 비용추계를 통해 조례와 재정의 연계성을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7)]

○ 자료 요청권

– 훈령을 통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의원 발의 비용추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 충청남도: 이원화된 규정 체계

○ 충청남도는 조례와 훈령을 병행하는 이원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전체적인 틀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의회 내부 절차는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의회훈령)으로 다루고 있음

○ 면제 사유

– “상위법령 개정이나 조직 변경에 따른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면제 대상으로 명시(동 조례 제12조)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음

○ 자료 요청권

7) 충청북도의회 보도자료. (2025.7.18.). 충북도의회 의안 비용추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

- 훈령을 통해 예산정책담당관이 집행부 및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의원 발의 비용추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 전라남도: 작성 주체의 모호성

○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규정에서 비용추계서를 “도지사가 발의한 의안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음

○ 동 조례 제15조 작성 대상 또한 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어,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은 조례상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 실제로는 도의원 발의 조례안에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있음

○ 이는 의원입법에 대한 재정적 통제가 제도적으로 공백 상태임을 의미하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지원체계와 파급효과 고려

○ 경상북도

- 도지사 제출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며, 의원 발의안은 의회사무처 재정분석 담당 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하여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

○ 경상남도

- 나아가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는 비용추계 대상을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단순히 예산 지출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례가 지역 경제나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개념적으로는 선진적인 조항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재원조달방안 의견 제시와 비용추계 대상의 명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와 예규를 함께 운영함

○ 동 조례 제5조 재원조달방안 작성 시 “관계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

- 이는 단순한 비용 계산을 넘어,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되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환류' 기능을 비용추계제도 내에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장치로 평가 가능

○ 예규 제2조의2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규모에 대한 영향이나 변화가 없는 경우", "비용을 수반한 기 시행중인 사업이 포함된 의안인 경우"를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용추계의 의미를 명확화

다. 종합 검토

❑ 비용추계 면제 기준의 획일성과 유연성

○ 대부분의 지자체가 '연평균 1억 원/총 3억 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경직된 금액 기준을 조례 본문에 명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를 강조함으로써, 방대한 예산 규모에 맞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 한편, '선언적·권고적 형식' 조항은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존재

- 이는 비용추계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활용되어 재정 규율 약화 요인으로 작동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비용추계의 실제 운영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작성 지원체계: 의회 독립성과 집행부 의존성

○ 조례안 비용추계 제도는 작성주체에 따라 의회 독립형과 집행부 의존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의회 독립형(Parliamentary Independence Model)

- 서울, 경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제주 등은 조례나 훈령에 '의회사무처 재정분석/예산정책 등 부서'를 작성 주체로 명시하고 있음
- 전남은 근거 조례의 규정은 없으나 전담 부서(특별전문위원)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인 추계를 가능하게 하며, 의원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모델로 평가할 수 있음

○ 집행부 의존형(Executive Dependence Model)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등은 의원이 직접 작성하거나 '소관 부서(집행부)'에 요청하도록 규정
- 이 경우 집행부가 정책에 반대하여 방어적·과다 추계를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의원의 입법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 재원조달방안 의무의 비대칭성

○ 단체장(시장·도지사)이 제출하는 의안에는 재원조달방안(지방세, 지방채,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제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이는 예산 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한국 지방자치의 기관 대립형(strong mayor-council)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의원이 비용을 추계할 수는 있어도,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을 신설할 권한은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의원에게도 재원조달방안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례는 현실과의 괴리가 크며,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라. 정책적 시사점

❑ 의회 예산정책 전담 조직의 의무화

○ 의원 발의 입법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으로 비용추계를 수행할 수 있는 '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조직이 모든 광역의회에 필수적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조직 설치의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면제 기준의 합리화 및 사후 관리

○ 획일적인 '1억원' 및 '한시 3억원' 금액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선언적 조례’라는 이유로 추계를 면제받은 조례들이 실제로는 예산 집행을 유발하는지 추적하는 제도(예: 국회예산정책처의 가결법률 재정소요점검 등)를 도입하여, 우회 입법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

❑ 재원조달방안의 현실화

○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가칭)예산 부서와의 협의 결과서’ 제출로 대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 검토

❑ 사례 분석 개요

○ 조례안 비용추계 우수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분석

○ 사례 선별 기준

– 지출 관련 비용추계뿐 아니라 수입 관련 비용추계(예: 지방세 감면, 사용료·수수료 조정)를 포함

– 비용추계서 첨부 사례뿐 아니라 미첨부[비첨부] 및 미대상[비대상] 사례도 분석 대상에 포함

– 지방의회별 소관위원회의 분야 다양성(행정, 경제·산업, 복지, 교육, 건설·교통, 농업 등)을 고려하여 사례를 선별

○ 참고로 그간 발간된 지방의회별 비용추계 사례집은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의회

• 2017년 의안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8)]

• 2018년 의원 · 위원회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9)]

– 경기도의회

• 2022년 의원입법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10)]

– 충청남도의회

• 2020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11)]

• 2021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12)]

• 2022~2023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1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2022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14)]

• 2023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15)]

• 2024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16)]

---

8) 서울특별시의회. (2017.12). 2017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9) 서울특별시의회. (2018.12). 2018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10) 경기도의회. (2023.3). 2022년 의원입법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11) 충청남도의회. (2021.3). 2020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12) 충청남도의회. (2022.4). 2021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13) 충청남도의회. (2024.3). 2022~2023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3.2). 2022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4.3). 2023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가. 우수 사례

1) 비용항목의 세분화 및 추계근거의 명확성

❑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 조례안

- ㅇ 지출 추계: 경제·산업 분야
- ㅇ 소관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 ㅇ 비용추계의 내용: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설치·지정 운영, 실태조사, 지원위원회 운영비를 5년간 추계
  - – 산업구조 전환(탈석탄 등)에 따른 노동전환 훈련센터 설치·운영 비용을 추계한 사례
  - – 센터 건립비(시설 투자비),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추계
- ㅇ 추계방법 및 가정
  - – 추계기간 2023~2027년(5년),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기준단가 및 기존(○○노동권익센터) 운영비 준용, 물가·인건비 상승 별도 미반영
- ㅇ 우수 사항
  - – 비용항목의 세분화 및 추계 근거의 명확성 측면에서 우수
  - – 센터 운영비를 인건비·사업비·운영비·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세분하고, 각 항목별로 계약예규 기준단가 및 기존 유사기관(○○노동권익센터) 운영비 실적을 추계 근거로 구체적으로 제시
  - – 특히 인건비의 경우 인원 규모와 직급별 인건비 단가를 명시하여 추계의 투명성을 확보
  - – 이러한 항목별 세분화와 근거 명시는 추계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을 높이며, 향후 예산편성 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수

2) 세수추계 모형의 체계적 적용

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5.3). 2024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 ○○○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ㅇ 수입 추계: 지방세
- ㅇ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 ㅇ 비용추계의 내용: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상향 등으로 인한 도세 수입 감소를 5년간 추계
  - – 도세(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에 따른 지방세수 변동분을 추계
  - – 감면 대상 범위, 적용 세율, 과세표준 등을 기초로 세수 감소분을 산출
- ㅇ 추계방법 및 가정
  - – 추계기간 2022~2026년(5년), 최근 3년 평균 증가율(44%)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증가분(66%) 반영, 물가상승률 배제
- ㅇ 우수 사항
  - – 수입 추계에 있어 세수추계 모형의 체계적 적용이 긍정적
  - – 세액공제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산출하고, 여기에 조례 개정에 따른 단가 상향(150원→250원, 300원→500원) 효과를 분리하여 추가 증가분을 별도 반영하는 등 제도변화 효과와 추세 효과를 구분하여 추계한 점이 우수
  - – 또한 감면기한 연장 부분은 추가 세입감소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황자료만 제시하는 등, 추계 대상의 경계를 의식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대상 인구 추계와 연동한 비용 산출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ㅇ 지출 추계: 사회·복지 분야
- ㅇ 비용추계 정보
  - –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 ㅇ 비용추계의 내용: 저상버스 구입비·운행비 일부 지원 근거 신설에 따른 재정소요를 5년간 추계
- ㅇ 추계방법 및 가정

- 추계기간 2023~2027년(5년), 기추진 저상버스 도입 지원 확대 전제, 물가·인건비 상승 미반영

○ 우수 사항

- 대규모 재정사업의 비용추계(5년 합계 5,000억원 이상)로서, 기존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의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대 규모를 산정한 점이 체계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저상버스 대폐차 계획·도입 계획을 비용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책 목표와 추계 구조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음
- 아울러 추계의 규모가 큰 만큼, 입법 심사 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용추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

4) 추계 구조의 명확성 및 재현 가능성 확보

❑ ○○○○○○○ 교육청 체육복 지원 조례안

○ 지출 추계: 교육 분야

○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학생배치계획 기반 학생 대상 체육복 1회 지원(70천원 이내)을 4년간 추계

○ 추계방법 및 가정

- 추계기간 2025~2028년(4년), 학생 수는 중기 학생배치계획 준용, 단가(70천원)는 타 시도교육청 사례 준용, 물가·인건비 상승 미반영

○ 우수 사항

- 추계 구조의 명확성과 재현 가능성(replicability)이 우수
- “대상 학생 수 × 체육복 단가”라는 단순·명확한 추계 구조를 채택하고, 학생 수는 중기 학생배치계획이라는 공식 자료를, 단가는 타 시도교육청 사례라는 비교 가능한 자료를 각각 근거로 활용하였음
- 추계의 구성요소가 명확하여, 향후 여건 변화(학생 수 변동, 단가 변동) 시 추계치의 갱신이 용이한 구조임
- 또한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이 지속 발생함을 명시하여 사업의 계속적

성격을 드러낸 점도 긍정적

5) 세외수입 추계에 있어 이용자 행동의 고려

❑ ○○○○○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ㅇ 수입 추계: 세외수입(사용료)
- ㅇ 소관위원회: 교통위원회
- ㅇ 비용추계의 내용: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를 추계
- ㅇ 추계방법 및 가정
  - − 추계기간 2019~2023년(5년), 2018년 8월 대상 인원(634명·6명) 기준, 2017년 공영주차장 국가유공자 이용자료로 1인당 연평균 이용횟수(1.44회)와 건당요금(6,790원)을 산정 후 50% 할인 적용
- ㅇ 우수 사항
  - − 세외수입(사용료) 추계에 있어 실제 이용 데이터에 기반한 추계가 긍정적
  - − 단순히 “대상 인원 × 요금”으로 산출하지 않고, 기존 유사 감면 대상자(국가유공자)의 실제 이용 실적(이용횟수, 건당요금)을 활용하여 현실적인 이용 행태를 추계에 반영하였음
    - • 세외수입 추계에 있어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 변화(가격탄력성)를 고려한 것으로 평가 가능
  - − 이는 세외수입 추계에서 흔히 간과되는 이용자 행태(behavioral pattern)를 실증 자료에 기초하여 반영한 것으로, 추계의 현실성을 높이는 접근

6) 복지 분야 지출 추계에서의 대상 범위 설정의 체계성

❑ ○○○○ 청년 기본 조례안

- ㅇ 지출 추계: 복지 분야
- ㅇ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 ㅇ 비용추계의 내용: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지원센터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추계방법 및 가정

- 유사 기관(타 시도 청년센터) 운영비 실적 및 위원회 수당 기준 준용

○ 우수 사항

- 복지 분야 지출 추계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 설정이 체계적임
- 청년의 연령 범위(18세~34세 등)를 조례안에 따라 명확히 특정하고,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 인구를 산출한 점이 우수함
- 또한 센터 운영비와 위원회 운영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추계 근거(타 시도 사례, 수당 기준)를 명시하여 추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음

7) 교육 분야 지출 추계에서의 대상자별 단가 차등 적용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지출 추계: 교육 분야

○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 상담지원,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비용 등을 추계

○ 추계방법 및 가정

- 지원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단가 차등

○ 우수 사항

-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대상 집단의 규모를 기존 통계자료(학업중단 현황 등)에 기초하여 추정하고, 지원 프로그램별로 단가를 차등 적용한 점이 우수
- 대상자 수의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서 기존 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 추정을 시도한 점은 비용추계의 현실적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음

나.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례

1) 기준선 불명확

❑ ○○○○○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 ㅇ 지출 추계: 행정 분야
- ㅇ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 ㅇ 비용추계의 내용: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설·환경 개선 지원 비용을 5년간 추계
- ㅇ 추계방법 및 가정
  - 시행 후 5년(2018~2022년) 추계, 일부 사업은 “기 추진사업”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유사사례 준용, 시설·환경개선은 “연 5개 기관 지원” 가정
- ㅇ 문제점
  - 첫째, “기 추진사업 제외” 및 “유사사례 준용”이라는 표현은 비용추계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현행 대비 순증가액(증분) 산정의 기준선(baseline)이 비용추계서 내에서 직접적으로 설정되고 있지 않음
    - 즉,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을 제외할 때, 조례 제정으로 지원 범위 · 대상 · 단가가 변화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함께 점검할 필요
  - 둘째, 시설·환경개선이 “연5개 기관”이라는 물량에 대한 핵심 가정의 근거(수요 추정, 과거 실적, 중기계획 등)가 제시되지 않았음
  - 셋째, 추계기간은 5년으로 원칙에 부합하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장기 비교 시 실질·명목의 혼선을 낳을 수 있음
- ㅇ 개선 방향
  - 첫째, “기 추진사업 제외”를 적용 시, 현행 지출·조례안 시행 후 지출·순증 항목 등을 제시하고, 제외 근거(예산서 사업명·연도·금액)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관 수(5개)’ 같은 물량 가정은 최소한 (가) 과거 3년 실적, (나) 신청·수요 추세, (다) 예산제약을 고려한 시나리오(예: 상·중·하 시나리오)의 형태로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경상가격 원칙을 기본값으로 하되(물가변수 적용), 물가반영을 배제할 경우 그 사유(단가의 행정적 고정, 단기사업 등)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 지출 추계: 행정 분야
○ 소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활동 보조금, 컨설팅 비용 등을 추계
○ 추계방법 및 가정
  – 기시행 마을만들기 사업 정보 활용
○ 문제점
  – 기존에 시행 중인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과의 관계가 불명확
  – 조례안에 의한 신규 재정소요분과 기존사업의 지속분이 구분되지 않아, 순증 비용(net cost)의 파악이 곤란
  – 기준선이 불명확할 경우, 비용추계서가 제시하는 금액이 전액 추가 소요인지, 기존사업의 재편에 불과한지를 판단할 수 없어 입법 심사에 필요한 재정정보로서의 기능이 저하됨
○ 개선 방향
  – 기준선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와 조례안 시행 시나리오의 병기 필요
  – 즉, 현행 예산(예: 관련 사업별 최근 3년 평균)과 조례안 시행 시 소요비용에 따른 순증 비용 제시를 통해 기존사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

2) 물가・인건비 상승 미반영에 따른 과소추계 가능성

❑ ○○○○○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 지출 추계: 교육 분야
○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 운영 및 ‘난독 학생 통합지원센터’ 설치·지원사업 비용을 5년간 추계
○ 추계방법 및 가정
  – 추계기간 시행 후 5년(2019~2023년), 물가상승 미반영, 위원회 운영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참석수당 등) 준용, 센터·지원사업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세부예산 내역 준용

○ 문제점

- 첫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를 준용하여 인건비·운영비 등을 산정하는 방식은 유사사업 비교(benchmarking) 접근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나, 5년간 물가·인건비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경상가격(nominal price) 기준의 재정영향이 과소추계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난독 학생의 규모(유병률) 추정에 활용된 근거자료의 시점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셋째, 센터 설치 초기(시설 투자비, 장비 구입비 등)와 정상 운영 시의 비용 구조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연도별 재정소요의 변동 패턴이 드러나지 않음

○ 개선 방향

- 첫째, 경상가격 원칙을 적용하여 예를 들어 인건비 상승률(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도별로 반영하되, 이를 배제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난독 학생 유병률 추정의 근거자료(학술연구, 교육부 통계 등)와 적용 가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추계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셋째, 설치 초기 비용과 정상 운영 비용을 구분하여, 연도별 재정소요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3) 미첨부 사유의 부적정

❑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안

○ 미첨부

○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문제점

-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면서 그 사유로 재정수반이 예상되나 구체적 추계가 곤란하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음
-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은 타 시도(서울, 경기, 대전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이들의 실적자료를 준용하면 합

리적 가정 하에 추계가 가능

- 재정수반이 분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미첨부로 처리한 것은, 미첨부 사유(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비용추계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개선 방향

- 첫째, 미첨부 사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 때문에 추계가 곤란한지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 "구체적 추계 곤란"이라는 포괄적 사유만으로는 미첨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둘째, 타 시도의 유사기관 운영비 실적을 활용한 유사사업 비교방식의 추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확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추계 범위(range estimation)또는 상·하한 추계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완전한 추계가 어렵더라도 개략적인 재정소요 규모의 제시가 미첨부보다 의회의 입법 심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조례안

○ 미첨부

○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문제점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수어통역,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 보급 등)이 예상됨에도 미첨부로 처리되었음
- 지원 대상(의사소통 장애인 수)의 추정이 가능하고, 유사 지원사업(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단가 자료도 확보 가능한 상황이라면 미첨부는 적절하지 않음

○ 개선 방향

- 대상자 수 × 서비스 단가의 기본 구조로 추계를 시도하되, 불확실성이 큰 경우 시나리오별 추계(최소·중간·최대)를 통해 재정소요의 가능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미대상 판단의 적정성 문제

❑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

- ㅇ 미대상
- ㅇ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 ㅇ 문제점
  -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비용추계 미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주민자치회 운영에는 위원 수당, 회의 운영비, 행정지원 비용등의 경상적 재정소요가 수반됨
  - – 나아가, 주민자치회에 예산편성 참여권이나 주민참여예산 기능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재정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 있음
  - – 금액 규모가 작더라도 재정소요가 있는 이상 비용추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ㅇ 개선 방향
  - – 첫째, 위원회·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의 경우에도 위원 수×회의 수당, 연간 회의 개최 횟수, 운영비등을 근거로 비용추계를 실시하여야 함
  - – 둘째, 비용추계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은 재정소요의 유무이지 규모의 대소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소규모 재정소요 조례안이 일률적으로 미대상으로 분류되는 사례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5) 수입 추계 시 기준선 및 행동 반응의 복합적 문제

❑ ○○○○○○○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ㅇ 수입 추계: 세외수입
- ㅇ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또는 기획경제위원회)
- ㅇ 비용추계의 내용: 환경보전기여금의 부과 대상·요율 조정에 따른 세외수입 변동분을 추계
- ㅇ 추계방법 및 가정
  - – 현재 방문객 수에 변경 요율 적용
- ㅇ 문제점

- 첫째, 환경보전기여금의 요율 조정에 따른 수입 변동을 추계하면서, 요율 변동에 따른 관광객 수(방문 수요)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방문객 수에 변경 요율을 단순 적용하는 정태적 추계만을 실시
  - 환경보전기여금과 같이 방문 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담금의 경우, 가격탄력성의 고려가 특히 중요
- 둘째, 기존 기여금 수입의 기준선과 조례안 시행 후 수입의 차이(순증 또는 순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음

○ 개선 방향

- 첫째, 수입 추계 시 기본적으로 정태적 추계를 실시하되, 요율 변동의 규모가 크거나 수요탄력성이 높은 항목의 경우 동태적 추계(dynamic estimation)를 병행하거나, 최소한 추계의 한계로서 예를 들어 “정태적 추계에 기초한 것으로, 행동 반응 고려 시 실제 수입 변동은 상이할 수 있음”을 명시할 필요
- 둘째, 기준선(현행 요율 유지 시 수입 전망)과 조례안 시행 시 수입 전망을 병기하여 순증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다. 종합 검토

❑ 기준선의 명확한 설정

○ 기존 예산(사업)과 조례안 시행 후 소요비용의 차이인 순증 비용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비용추계의 핵심이나, 기준선 없이 총비용만을 나열하여 순증 재정영향의 파악이 곤란한 사례가 있었음

○ 이의 개선을 위해 “현행 예산/ 조례안 시행 후 소요/ 순증분”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항목을 비용추계서의 서식에 표준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추계 근거의 명확성

○ 추계 근거의 구체성과 투명성에 따른 비용추계의 신뢰성을 결정

○ 비용항목별로 단가의 산출 근거(유사사업 실적, 예규 기준단가, 인구통계 자료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우수 사례는 추계의 검증 가능성이 높았으나, 총액만을 제시하고 산출 내역이 부재한 사례는 추계의 적정성 검증이 곤란

❑ 물가·인건비 상승의 반영 문제

- ㅇ 5년 이상의 추계기간에 걸쳐 물가·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경상가격 기준의 과소추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할 필요

❑ 미첨부 사유의 엄격한 관리

- ㅇ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합리적 가정하에 추계가 가능한 경우에도 미첨부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음
- ㅇ 미첨부의 경우에도 추계 범위(range estimation)의 제시를 권고 또는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미대상 판단 기준의 명확화

- ㅇ 소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조례안이 미대상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으나, 재정소요의 유무를 기준으로 비용추계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이 적용될 필요

❑ 수입 추계의 방법론적 정교화

- ㅇ 지방세 감면, 세외수입(사용료·부담금) 조정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의 경우, 정태적 추계를 기본으로 하되 추계의 한계를 명시하고, 행동 반응의 고려 가능성이나 시나리오별 분석의 병행이 바람직함
- ㅇ 특히 일몰 연장형 세제 조례의 경우 “일몰 종료 시”와 “연장 시”의 세수 전망을 병기하는 기준선 설정이 필요

Ⅴ. 조례안 비용추계 발전 방안 검토

1. 지방자치 환경 변화와 제도 개선의 당위성

1) 지방의회 입법 패러다임의 전환과 역할 확대

❑ 정책 주도 기구로의 격상

○ 지방자치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의회는 단순한 조례 의결 기구에서 지역 사회의 자원 배분과 정책 결정을 전략적으로 주도하는 핵심 입법 기구로 변화함

○ 재정 수반 조례의 비약적 증가: 복지, 돌봄, 안전, 환경 등 주민의 삶과 밀착된 다양한 분야에서 조례가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의안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 입법 수요의 양적 팽창

○ 조례 제·개정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의원 발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입법 활동의 재정적 책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

2) 재정 문지기 기능 강화의 필요성

❑ 지방재정 건전성 수호

○ 예산 뒷받침 없는 선심성 입법이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포퓰리즘적 조례 남발을 사전 차단하는 안전장치로서 비용추계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됨

❑ 입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 조례안 발의 시 구체적인 비용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게 함으로써 입법권 행사에 따르는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

❑ 증거 기반 의사결정 지원

○ 막연한 정성적 필요성이 아닌, 과학적 기법으로 산출된 계량적 수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입법 심사와 정책 우선순위 조정을 가능하게 함

3)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지체 현상 진단

❑ 입법 수요와 제도적 역량의 불균형

○ 폭증하는 조례 발의 속도를 현재의 비용추계 절차, 데이터 인프라, 전담 인력 및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지체가 누적되고 있음.

❑ 형식적 운영 및 실효성 저하

○ 비용추계서 첨부율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기술적 추계 곤란이나 소액 경비 등을 이유로 한 미첨부 사유서 제출이 관행화되어 제도의 본질이 형해화됨

❑ 정보의 파편화와 데이터 부재

○ 지자체별로 추계 기준과 포맷이 상이하여 전국 단위의 통계 확보나 교차 분석이 불가능하며, 이는 정책 환류 및 AI 기반 고도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됨

4) 제도 개선을 위한 논리적 근거

❑ 입법 비용의 외부화

○ 특정 집단에 혜택이 집중되는 조례의 비용은 전체 납세자에게 분산되므로, 입법자가 재정 부담을 과소평가하거나 회피하려는 정치적 유인 구조가 존재함

❑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

○ 조례안 자체의 추상성과 정밀한 지역 통계 부족으로 인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우며, 예산 정보를 독점하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정보 격차가 심각함

[표 34]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추계 제도 개선의 당위성 요약

구분	과거 (단순 의결 단계)	현재 및 미래 (정책 성숙 단계)	개선목표
의회역할	조례의 승인 및 의결	자원 배분 및 정책 결정 주도	전략적 입법 지원 체계 구축
입법특성	집행부 주도, 선언적 규정 위주	의원 발의 급증, 재정 수반 사업 확대	재정 책임성 및 건전성 확보
정보관리	아날로그 방식, 지자체별 산재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요구	전국 단위 표준 DB 구축
추계기능	요건 충족을 위한 형식적 절차	실질적 정책 시뮬레이션 및 리스크 관리	AI 기반 스마트 추계 도입

2. 제도적 책무성 강화 및 추계 품질 제고 방안

1) 수정가결 조례안의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및 버전 관리

❑ 비용 정보의 불일치 해소

- ㅇ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이 대폭 수정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거나 보조율이 변경되는 경우, 최초 발의 시의 추계 정보와 최종 의결안 사이의 괴리가 발생함
- ㅇ 재정 부담의 변동을 수반하는 수정안의 경우,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수정안에 대한 재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명문화해야 함

❑ 전주기적 버전 관리 시스템 구축

- ㅇ 의안정보시스템 내에서 최초 발의안, 위원회 수정안, 최종 가결안에 따른 비용 정보를 버전별로 관리하여 예산 편성 시 혼란을 방지함
- ㅇ 최종 확정된 비용 정보를 별도로 표시하여 입법의 실제 재정적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남발 방지 및 면제 기준 합리화

❑ 면제 조항의 엄격한 해석 및 가이드라인 마련

- ㅇ 기술적 추계 곤란 조항이 데이터 수집 기피나 추계 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해석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대체 추계 절차(범위 추정, 시나리오 등)를 우선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면제를 허용함

❑ 최소 정보 공시 의무화

○ 정밀한 수치 산출이 어렵더라도 비용 발생 경로, 유사 사업 단가, 잠재적 수혜 대상 규모 등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미첨부 사유서에 포함하도록 강제함

❑ 사후 점검 체계 강화

○ 선언적·권고적 조례라는 이유로 추계를 면제받은 안건들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을 유발하는지 정기적으로 추적 및 검증함

3) 추계 기술 원칙의 엄격성 확보 및 시나리오 기법 도입

❑ 기술적 일반 원칙의 표준화

○ 경상가격원칙: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산출을 기본값으로 설정하여 미래 재정 부담의 과소평가를 방지함

○ 5년 추계 원칙: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최소 5년간의 연도별 소요액을 제시하도록 고정함

❑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범위 추정 도입

○ 정책 설계의 가변성이 크거나 외부 변수에 민감한 사업은 단일 수치 대신 상·중·하 시나리오별 재정 영향을 병기함

○ 입법자에게 발생 가능한 최대 재정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시킴으로써 더욱 신중한 입법을 유도함

3. 데이터 기반의 비용추계 표준화 및 정보 체계 고도화

1) 전국 단위 통합 비용추계 데이터베이스(DB) 및 표준 코딩 체계 구축

❑ 정보 파편화 해소를 위한 통합 인프라 마련

○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운영되는 추계 기준과 양식으로 인해 특정 조례안의 재

정적 영향을 교차 분석하거나 벤치마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전국 광역지방의회의 재정 부담 조례안을 전수 수집하여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구조로 통합 DB를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함

❑ 정형화된 표준 코딩 체계 도입

○ 조례안의 발의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기 위해 고유 식별자 및 속성별 코드를 부여함

○ DB화된 데이터는 향후 AI 기반 자동 추계 시스템의 필수 학습 자원으로 활용됨

[표 35] 비용추계 표준 코딩 체계 구성(안)

대분류	세부 항목	데이터 성격 및 관리 목표
식별코드	지역-대수-의안번호	전국 단위 고유 식별자 부여 및 이력 관리
발의특성	발의 주체, 공동발의자 수	입법 주체별 재정 책임성 및 정치적 유인 분석
재정구조	수입/지출구분, 회계·기금유형	지방재정 수지에 미치는 직접 영향 파악
비용요인	인건비, 운영비, 보조금, 감세등	재정 수반 요인별 구조적 특성화
추계방법	Q×P 산식, 회귀분석, 시나리오	추계 기법의 표준화 및 검증 가능성 확보
처리결과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입법 단계별 재정 변동 및 최종 소요액 확정

2) 정책 수단 중심의 유형화

❑ 분류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 기존의 목적이나 대상 중심의 분류는 사회 문제의 복잡성과 조례안의 고도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 기법 등을 활용해 비용 발생의 핵심 경로인 '정책 수단'별로 조례안을 유형화해야 함

❑ 유형별 표준 추계 모델 적용

○ 위원회 설치, 실태 조사, 지원 사업(보조금, 바우처) 등 수단별로 최적화된 추계 모델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함

○ 예를 들어, 실태 조사 유형은 조사 주기, 대상 수, 단가 등의 변수를 표준화하여 분석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함

3) 입력 정보의 구조화 및 표준 서식 정립

❑ 입안 단계에서의 정보 요구 강화

○ 의뢰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입안 단계에서부터 추계 가능한 정보를 구조적으로 입력받아야 함

○ 비용추계요구서에 정책 수단 선택 체크박스, 핵심 키워드(4~5개), 정책 규모(대상자·단가) 명시를 의무화함

❑ 기술적 원칙이 고정된 표준 양식 도입

○ 담당자 교체나 의회별 차이에 관계없이 일관된 산출물이 나오도록 기술적 원칙을 서식 항목으로 고정함

○ 5년 추계 원칙: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최소 5년간의 비용 제시를 표준화함

○ 경상가격 원칙: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경상가격 산출을 기본값으로 설정하여 장기 재정 부담의 왜곡을 방지함

○ 순증가분 추계: '기 추진사업' 제외 시 현행 대비 추가 발생하는 비용만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고하는 표준 양식을 도입함

4. 전문 조직 역량 강화 및 국회-지방의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

1) 의회 독립형 비용추계 전담 조직의 설치 의무화

❑ 조직의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

○ 집행부 의존형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편향(비용 축소 또는 과다 추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내 독립적인 비용추계 전담 조직 설치를 법제화함

○ 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모형 설계와 재정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함

❑ 전문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 순환보직 중심의 일반직 공무원 체계에서 벗어나 재정·경제학적 분석 역량을 갖춘 박사급 전문 분석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함.

○ 고난도 추계 안건(대규모 민자 사업, 복합 복지 모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인적 자원 기반을 공고히 함.

❑ 법적 데이터 접근권 보장

○ 실효성 있는 비용 분석을 위해 추계 담당자가 집행부에 관련 기초 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의회 규정을 개정하여 자료 제출 협조 의무를 명문화함

2) 국회예산정책처(NABO)와의 ‘Cloud Intelligence’ 플랫폼 구축

❑ 중앙-지방 간 지식 자산 공유 체계 마련

○ 개별 지방의회의 제한된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유한 방대한 비용추계 노하우와 기준정보를 공유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함

○ 비용추계 기준정보 클라우드 개방: 인건비 단가, 표준 공사비,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 국회의 기초 데이터를 디지털 라이브러리 형태로 공유함

❑ 실측치 기반의 데이터 연계 강화

○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에 대한 실제 집행 비용 데이터를 API 형태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측 오류를 최소화함

❑ 전문가 핫라인 및 교차 검증 운영

○ 고난도 또는 쟁점 안건에 대해 국회 분석관들이 자문을 제공하거나 추계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상시 협력 채널을 운영함

3) 입법 생애주기 관리와 환류 체계 정착

❑ 재정소요점검 제도 도입

○ 입법 단계의 일회적 추계에 그치지 않고, 조례 가결 이후 1~2년 주기로 실제 재정 집행 현황을 분석하여 당초 추계치와 비교·검증함

❑ 데이터 기반의 가이드라인 최신화

○ 점검 결과 나타난 추계 오차 원인(수혜 대상자 규모 오류, 단가 변동 등)을 정밀 분석하여 차기 비용추계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 반영함

❑ 정책 일몰제와의 연계

○ 재정 부담이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조례의 경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입법 전 주기에 걸쳐 재정 건전성을 관리함

5.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의 스마트 비용추계 시스템 구축

1) DB 기반 LLM 에이전트 활용형 비용추계 지원체계

❑ 도입 필요성 및 정당화

○ 표준 DB 구축의 효과를 실제 업무 효율·품질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검색–근거정리–초안–검증” 워크플로우 자동화 필요함

○ 전국 광역의회 조례안 비용추계 DB는 조례안·비용추계서·검토보고서·회의록·첨부자료 등 분산 정보를 표준 스키마로 정규화하여 축적한 기반 데이터로 기능함

○ 비용추계 실무는 유사사례·단가·가정·근거문서가 파편화되어 반복 탐색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이며, DB 기반 재사용 체계가 구축되면 추계 품질이 개인 역량이 아니라 데이터·표준·검증 체계에 의해 안정화될 수 있음

○ 따라서 LLM 에이전트는 비용추계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DB 기반 정보를 업무 흐름으로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보조 도구”로 위치시키는 것이 타당함

❑ 기능 범위

○ LLM 에이전트는 최종 의사결정을 수행하지 않고, 근거 기반 추천·정리·점검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함(human-in-the-loop 전제)

○ (유사사례 매칭) 신규 조례안 입력 시 DB 내 유사 조례안/유사 재정수반요인/유사 추계방식 사례를 검색하여 산식·단가·가정 후보를 제시함(추천 수준)

○ (근거 문서 패키징) 검토보고서·회의록·첨부파일을 연결하여 근거 목록을 구성하고 요약함(근거 URL/출처 병기)

○ (서식 초안 작성) 표준 비용추계서 템플릿 항목(재정수반요인, 추계 전제, 산식, 재원 협의 필요사항 등)을 DB 근거 기반으로 초안 작성함(확정은 담당자 수행)

○ (품질 점검/경고) 필수 항목 누락, 단위 불일치, 추계기간 미기재, 근거자료 미

제시 등 오류 가능성을 탐지·경고함

❑ 국회·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 본 체계는 특정 지역 전용이 아니라 “공통 코어 + 지역 확장” 구조로 확산 설계 가능함

○ DB 스키마는 전국 광역의회의 공통 속성과 의회별 추가 속성을 포괄하도록 구성되어 타 지자체/지방의회로의 이식 및 확장에 유리한 구조임

○ 국회는 표준 스키마, 기준정보(단가/파라미터), 교육·컨설팅 체계를 제공하고, 지방의회/지자체는 로컬 데이터 연계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분업형 거버넌스 모델 적용 가능함

○ 이를 통해 지방의회 간 비용추계 역량 편차 완화, 유사사례 재사용 촉진, 근거 기반 검증 상시화 효과 기대 가능함

❑ 운영 통제 원칙

○ 생성형 AI 적용 시 오류 및 책임성 이슈를 사전에 통제하는 운영원칙 명시 필요함

○ DB 근거 기반 응답(grounded) 원칙 적용(근거 없는 생성 최소화)

○ 출력물에 근거 링크/출처 동시 제시(역추적 가능성 확보)

○ 최종 검토·확정은 담당자 수행(human-in-the-loop)

○ 로그/버전관리/감사 추적 가능 구조로 운영(사후 검증 및 책임성 확보)

2) AI 보조 추계 시스템 도입 및 업무 자동화

❑ 재정 수반 요인 및 정책 수단 자동 식별

○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여 조례안 법문 내 인건비, 보조금, 시설비 등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문구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정책 수단별로 분류함

❑ 지능형 자동 시뮬레이션 수행

○ 분석가가 대상 인구수, 지원 단가 등 핵심 변수만 입력하면 DB에 축적된 유사사례 산식과 거시 경제 지표를 결합하여 향후 5년 치 재정 소요를 실시간으로 산출함.

❑ 재정 리스크 사전 경고

○ 인구 구조 변화나 물가 변동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한 사업의 경우 발생 가능한 잠재적 재정 위기 요인을 사전에 탐지하여 분석가에게 알림.

❑ 비용추계서 초안 자동 생성

○ 분석 결과를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디지털 문서로 자동 작성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 부하를 줄이고 추계서의 일관성을 확보함

3) 유사 조례 매칭 및 파라미터 라이브러리 고도화

❑ 유사 조례 자동 추천 시스템

○ 신규 조례안 발의 시 전국 단위 통합 DB에서 내용이 유사한 과거 조례안과 해당 비용추계 데이터를 자동으로 매칭하여 참조 자료로 제시함.

❑ 추계 파라미터 공유 인프라

○ 정책 분야별 표준 단가, 보조율, 산출 공식 등을 라이브러리화하여 공유함으로써 추계 과정에서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정확도를 제고함.

❑ 실측치 기반 학습 데이터 환류

○ 가결된 조례의 실제 예산 집행 데이터를 AI가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추계 모형의 정밀도를 상향 평준화함.

4) 정보 공개 플랫폼 혁신 및 주민 접근성 제고

❑ 시각화 기반 조례 재정지도 구축

○ 단순 첨부파일 형태의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분야별 재정 투입 규모와 지역별 집중도를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하여 공개함

❑ 재정 투명성 및 알 권리 충족

○ 주민들이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세금 투입 규모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입법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함

❑ 비공식적 통제 기제 활용

○ 정보 공개 혁신을 통해 입법자가 주민의 시선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함

5) 시스템 연계 및 디지털 거버넌스 확립

❑ 의안-예산-재정 통합 플랫폼 연동

○ 의안정보시스템과 예산 편성 시스템을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연결하여 조례 발의 단계부터 집행까지 데이터가 단절 없이 흐르는 체계를 마련함

❑ 중앙-지방 간 Cloud Intelligence 협력

○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준정보 DB를 클라우드 형태로 지방의회에 개방하고 지방의 실제 집행 데이터를 국회가 환류받는 통합 지능형 네트워크를 운영함

[표 36] 스마트 비용추계 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구분	도입 전 (아날로그/수기 방식)	도입 후 (AI/디지털 기반)	기대 효과
요인 분석	담당자의 수기 검토 및 식별	LLM 기반 자동 추출 및 분류	분석 시간 단축 및 누락 방지
소요 산출	엑셀 등을 활용한 개별 계산	표준 모형 기반 자동 시뮬레이션	추계의 일관성 및 정밀도 제고
사례 참조	개별 지자체 자료 수동 검색	유사 조례 자동 매칭 및 추천	추계 오류 및 자의성 최소화
정보 공개	조례안 별첨 문서(PDF/HWP)	시각화 대시보드(재정지도)	주민 접근성 및 입법 책임성 강화

6. 단계별 발전 로드맵

1) 데이터 기반의 책임 있는 입법 체계 확립

❑ 패러다임의 대전환

○ 조례안 비용추계 제도는 단순한 서류상 요건을 넘어 정책의 미래를 비추는 투명한 거울로 기능해야 함

❑ 통합 패키지 전략

○ 통합 DB 구축, 수정안 재추계 의무화, 독립 전담 조직 설치, 중앙-지방 협력 강화는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하는 필수 패키지 전략임

❑ 지능형 거버넌스로의 진화

○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라는 고질적 난제를 AI 및 디지털 전환 기술을 통해 극복하고, 중앙-지방 간 지능형 협력 모델로 완전히 전환해야 함

2) 단계별 발전 로드맵

❑ 비용추계 제도의 고도화는 표준화 → 확산 및 연계 → 지능화의 3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표 37] 조례안 비용추계 발전 단계별 핵심 과제 및 로드맵

단계	추진 기간	핵심 목표	세부 추진 과제
1단계: 인프라 표준화	단기 (1년 내)	표준 운영 지침 및 기술 기반 마련	• 표준 서식(5년·경상가격·증분추계) 제정 • 표준 코딩 체계(식별/프로세스/비용) 도입 • 수정가결 재추계 및 버전 관리 규정 명문화 • 비용추계 요구서 정보 구조화(체크박스·키워드)
2단계: 시스템 확산 및 연계	중기 (1~3년)	전국적 확산 및 입법 전주기 관리	• 전국 지방의회 표준화 확산 및 의무화 • 의안정보시스템 연계 및 주민 공개 강화 • 가결 후 예산 반영 추적 등 생애주기 관리 시작 • 의회 독립형 전담 조직 확충 및 교육 상시화
3단계: 지능형 고도화	장기 (3~5년)	실측치 기반AI 자동 추계 정착	• 클라우드 기반 기준 단가 및 파라미터 공유 • 유사 조례 매칭 및 리스크 경고AI 도입 • 실제 집행 자료(실측치) 기반 추계 모형 고도화 • 정책 분야별 표준 모형 및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Ⅵ. 결론

❑ 연구의 전략적 함의: 재정 문지기 기능 복원 및 데이터 기반 입법 지원

○ 지방의회 역할의 진화 반영

- 지방자치의 성숙에 따라 단순 의결 기구에서 자원 배분과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핵심 입법 기구로의 격상 확인

○ 재정적 책임성 강화

- 복지·안전 등 직접적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 급증에 대응하여 무분별한 포퓰리즘 입법을 차단하는 재정 문지기 기제로서의 제도 가치 재정립

○ 증거 기반 의사결정 토대 마련

- 정성적 필요성이 아닌 계량적 수치와 과학적 기법에 기반한 합리적 입법 심사 체계의 당위성 입증

❑ 연구의 성과 및 기술적 기반 조성

○ 표준 메타데이터 체계 수립

- 전국 17개 광역지방의회의 상이한 의안정보시스템을 전수 분석하여 발의부터 의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표준 스키마 설계 완료

○ 데이터 정규화 및 자산화

- 수집된 자료를 조례안 단위 레코드로 정규화하여 JSONL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향후 통합 비용추계 파이프라인 운용을 위한 핵심 기술 자산 확보

❑ 연구의 성과 및 향후 활용방안

○ 표준화된 데이터 자산화 기반 마련

- JSON 기반 표준 데이터 구조 및 처리 파이프라인 설계: 17개 광역의회의 방대한 비정형 의안 및 첨부파일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적

의 데이터 변환 체계 구축

- 행정 데이터의 시스템적 자산화: 산재한 의정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선제적으로 마련

○ 수요 맞춤형 플랫폼 구축의 전략적 청사진 제시

- 단계적·선택적 파싱 아키텍처 도출: 고비용이 소요되는 전수 파싱 방식에서 탈피, 각 의회의 예산 및 실무 수요에 따라 파싱 범위와 우선순위를 유연하게 설정 가능
- 지자체별 최적화된 도입 경로 제공: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맞춤형 플랫폼 구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실무 적용성 제고 및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 플랫폼 개발의 핵심 자산 확보: 본 연구의 파싱 최적화 전략(변환 자동화, 캐싱 기술 등)을 실제 비용추계 시스템 개발 시 즉시 투입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활용
- 중복 투자 및 시행착오 최소화: 표준화된 아키텍처 적용을 통해 지자체별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낭비 방지

❑ 다차원적 실행 방안 및 로드맵

○ 제도적 책무성 강화

- 재정 부담 변동 시 '수정안 재추계' 의무화 및 전주기적 버전 관리 시스템 도입 제안

○ 독립적 전담 조직 및 협력 거버넌스

- 의회사무처 내 독립 전문 조직 설치를 법제화하고, 국회예산정책처(NABO)와의 Cloud Intelligence 플랫폼을 통해 표준 단가 및 추계 노하우 공유

○ 단계별 발전 전략 추진

- [단기/1년 내] 인프라 표준화: 표준 서식 제정 및 표준 코딩 체계 도입
- [중기/1~3년] 시스템 확산: 전국 지방의회 의무화 및 재정소요점검 제도

도입

- [장기/3~5년] 지능형 고도화: 실측치 기반 AI 자동 추계 및 리스크 경고 시스템 안착

❑ 맺음말

○ 비용추계제도의 고도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증거에 기반한 진정한 정책 주도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관문임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데이터 표준화 모델과 중앙-지방 협력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실행될 때, 지방의원의 입법 자율성과 재정적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 입법 환경이 조성될 것임

참고문헌

국회사무처. (2015). 국회규칙 제192호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2015.7.24. 일부개정)

국회사무처. (2022). 국회법 제18192호(2021.5.18., 일부개정)

국회예산정책처. (2012).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 지출편」.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2).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4).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류철. (2021). 법안비용추계와 탑다운식 예산안 심의과정. 「2021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 137-156.

박재용. (2017). 지방자치단체 비용추계제도 운영의 한계 및 개선방안: 비용추계 금액과 예산편성 금액 차이를 통해. *예산정책연구*,*6*(1), 152-174.

윤주철. (2024). 조례안 비용추계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34*(4), 63-89.

이정은, 신헌태, & 하연섭. (2024). 의안비용추계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입법비용의 외부화와 정보의 불완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58*(4), 141-167.

임동완·류도암·윤성일. (2012). 「법안비용추계제도에 대한 국회의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전영한·이경희. (2007). 정책수단연구: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행정논총」. 48(2): 91-118.

하연섭·류철·장유미. (2021). 「비용추계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학회.

현지우, 신헌태, & 임동완. (2024).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석을 통한 유형화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학보*,*58*(3), 89-120.